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 학 진 흥 기 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2026.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신 문 근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재환	5188
	국제교육기획관	이선화	5189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김재환	5188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김재환 조지숙	5188 5185
	대학지원관	이선화	5189
	평생직업교육지원관	노의현	5193
	의대교육지원관	조지숙	518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김광호 박성원	5186 5184
	학교지원관	김광호 노의현	5186 5193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박병규 조지숙	5192 5185
학생지원국		김광호 박성원 박병규	5186
영유아정책국		김영철	5187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박성원	5184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소속기관(국립특수교육원)		이선화 김광호	5189 5186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총 괄 ---- 1

가. 세입·세출 결산 ---- 1
나. 기금 결산 ---- 3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 5

2. 세입·세출 결산 ---- 7

가. 일반회계 ---- 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17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9

3. 기금 결산 ---- 23

가. 사학진흥기금 ---- 23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0

4. 재무 결산 ---- 38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38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40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42

5. 2025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43

6.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45

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 45
나.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45
다.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 45

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48

Ⅱ. 검토의견 ---- 51

1. 기획조정실 ---- 52

【세 입】

1) 징계부가금 ···· 53

(1) 징계부가금의 적극적인 징수 및 합리적인 세입 추계 필요 ···· 54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제고 필요 ···· 58

【일반회계】

1) 정책연구개발사업 ···· 61

(1)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62

(2) 예산편성의 구체성 제고 및 정책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 ·· 64

2)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68

: 사업 참여 제고 및 운영 과정 내실화 필요 ···· 71

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80

: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82

4)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92

2. 고등평생정책실 ---- 96

【일반회계】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97

: 바우처 미사용자의 미집행 금액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이용상의 제약요인 점검 필요 ···· 99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106

: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결손 방지 ···· 108

3)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11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16

(1)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 119

(2) 등록률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126

2) 인문사회기초연구(R&D) ···· 130

: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133

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138
: 글로컬랩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 141
4) 한국장학재단 출연 ····· 14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이자면제 사업의 수요 추산 정확성 제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47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152
(1)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참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154
(2)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 개선 필요 ····· 160
6) 국립대학육성사업 ····· 164
: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 필요 ····· 166
7)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172
: 사업 관리 철저 및 집행 수요를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 174
8) 국립대학 시설확충 ····· 178
(1) 사업 추진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 필요 ····· 180
(2)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184
(3)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액의 이자수입 용도 제한 필요 ····· 187
9) 국립대병원 지원 ····· 191
(1) 국립대병원 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의 집행부진 관리 강화 필요 ···· 193
(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1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 ····· 206
: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계획액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208
2) 기타경비 ····· 214
: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16
3. 학교정책실 ---------- 222
【일반회계】
1)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23
: 민간위탁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225
2) 인성교육진흥사업 ····· 230
: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23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3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 ····· 242
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249
(1)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특별교부금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252
(2)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58
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261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263
6)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271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고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72
(2) 성과평가의 실효성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필요 ····· 277
7)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279
(1) 국립부설학교의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리 필요 ····· 281
(2) 국립부설학교 시설물 안전강화 필요 ····· 286
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 291
: 진로전담교사 연수를 위한 면밀한 사전 준비 필요 ····· 293
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298
: 사업 참여 인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 조정 필요 ····· 300
10)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307
(1) 예산 편성 시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을 통한 미지급분 발생 방지 309
(2) 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315
11)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정보화) ····· 318
: 위탁사업 계약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3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326
(1) 사전의결 원칙 위배: 수요포럼 운영 ····· 329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 ····· 333
(3)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또는 계획 변경 절차 준수 필요 ····· 3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 340
: 사업초기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34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정보시스템구축사업 ····· 347
: 대규모 자체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 348
2)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 352
: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의 정책수요 반영 및 재원운용 적정성 제고 필요 · 353
3) 연금급여 ····· 359
: 사학연금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폐교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 360

4. 인공지능인재지원국 ---------- 365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366
(1) 성과조사의 응답률 제고와 권역별 성과관리 강화 등 ····· 367
(2) AI 코스웨어의 확산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필요 ····· 373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378
: 사업수익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필요 ····· 379
3)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38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386
(1) 취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387
(2) 부트캠프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간 연계성 강화 필요 ····· 390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394
: 교육성과 중심의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95

5. 학생지원국 ---------- 402

【일반회계】
1) 교육기부활성화사업 ····· 403
: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면밀히 검토 필요 ····· 405
2) 교육급여 ····· 409
: 교육급여 수급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12

3)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 416
(1) 성과 운영비 제도의 추진 일정 및 평가 지표 개선 필요 ····· 419
(2) 체험학습비 집행 기준의 검정고시 학습 연계성 명확화 필요 ····· 422

6. 영유아정책국 ---------- 428

【일반회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429
(1)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 관리 강화 필요 ···· 431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 435
(3)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반기 전액 교부 지양 필요 ····· 440
2) 시간제보육 지원 ····· 442
(1) 수요자 중심의 제공기관 별 확충 및 통합반 이용률 제고 필요 ···· 445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 450
(3)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 453
3)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456
: 사업 수행 및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458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465
(1)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468
(2) 대체교사 확충 및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필요 ····· 473
(3) 특수 대체교사 확충 및 교사 간 대체교사 지원 격차 해소 필요 ····· 479
(4)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집행률 제고 및 지역별 신청 편차 해소 필요 ····· 483
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486
(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전용 지양 필요 ····· 488
(2) 가정양육수당 부정수급 및 오지급액 환수 철저 ·····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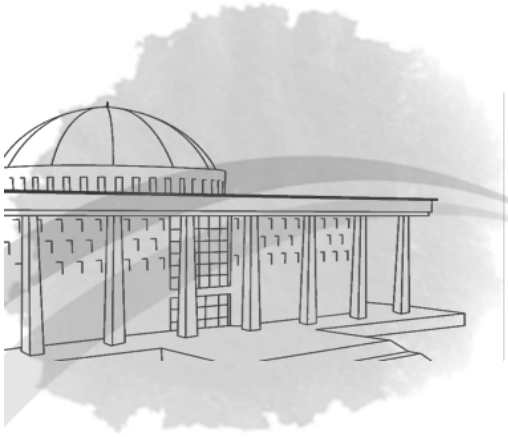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어린이집 확충 ····· 497
: 어린이집 확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499

7. 소속기관 ---------- 508
가. 국립국제교육원 ····· 510
【일반회계】
1) 학생교육 교류 지원 ····· 510
(1) 선발과정 보완 등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513
(2)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필요 ····· 517

나. 국립특수교육원 ····· 523
【일반회계】
1)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523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개선 사업에 대한 적정 비목 편성·집행 필요 ····· 525

Ⅰ. 결 산 개 요



1. 총 괄

가. 세입·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조 7,856억 2,500만원이며, 19조 7,759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19조 7,403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355억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1,737	371,737	371,737	210,024	174,627	35,365	31	83.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32	5,032	5,032	1,074	962	112	0	89.6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3,102,013	3,257,757	3,257,757	0	0	10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16,663,592	16,306,843	16,306,843	16,307,086	16,307,015	70	0	100.0
합계	20,142,374	19,785,625	19,785,625	19,775,941	19,740,362	35,547	31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7조 1,350억 5,8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116조 8,452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808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89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9,322,129	97,078,363	97,800,572	97,666,292	18,675	115,605	99.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25,595	325,595	325,595	314,147	0	11,448	96.5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3,230,865	3,230,865	0	0	10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16,127,278	15,770,529	15,778,027	15,633,923	62,165	81,939	99.1
합계	118,877,015	116,276,500	117,135,058	116,845,227	80,840	208,992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14조 2,783억 1,200만원이며, 12조 5,114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12조 4,355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732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6억 2,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3,713,273	11,872,864	11,838,360	31,940	2,564	99.7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565,039	638,578	597,196	41,325	56	93.5
합계	14,278,312	14,278,312	14,278,312	12,511,442	12,435,556	73,265	2,620	99.4

자료: 교육부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4조 2,783억 1,200만원이며, 이 중 87.1%인 12조 4,355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602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3,713,273	11,838,360	0	118,437	86.3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565,039	597,196	0	41,853	105.7
합계	14,278,312	14,278,312	14,278,312	12,435,556	0	160,290	87.1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368억 9,400만원(△12.9%)이 감소한 6조 9,75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057억 2,000만원(6.2%)이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61,173	492,265	492,265	407,269	△84,996	△153,904
기금	6,008,696	7,520,218	7,520,218	6,568,320	△951,898	559,624
합계	6,569,869	8,012,483	8,012,483	6,975,589	△1,036,894	405,720

주1: 총수입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수입
주2: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294억 1,600만원(0.4%)이 증가한 103조 2,76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조 4,202억 900만원(11.2%)이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B)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6,389,770	98,089,605	95,845,839	96,394,543	548,704	10,004,773
기금	6,492,254	6,778,798	7,001,008	6,881,719	△119,289	389,465
합계	92,856,054	104,868,403	102,846,847	103,276,263	429,416	10,420,209

주1: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주2: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교육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17억 3,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100억 2,400만원임. 실제 수납액은 1,746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3.1%임. 불납결손액은 3,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6,5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합 계	371,737	371,737	371,737	210,024	174,627	35,365	31	83.1
재산수입 (토지, 건물대여료 등)	21,818	21,818	21,818	14,798	10,740	4,059	-	72.6
경상이전수입 (벌금, 과태료 등)	285,360	285,360	285,360	120,737	89,404	31,302	31	74.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등)	183	183	183	81	77	4	-	95.1
수입대체경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	11,775	11,775	11,775	24,034	24,034	-	-	100.0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2,648	2,648	2,648	476	476	-	-	1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 (전대차관원금회수)	56	56	56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금전입금)	49,897	49,897	49,897	49,897	49,897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이 수납됨.

주요 수납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89,082백만원
- 기타재산이자수입	10,439백만원
-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16,737백만원

❑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임. 미수납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납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임.

주요 미수납 내역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1,302백만원
- 기타재산이자수입	3,908백만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023년 2,77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3,717억 3,700만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수납액은 6,327억 4,100만원에서 2025년 1,746억 2,7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2023년)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고등·평생교육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세입이 감소한 데 기인하며,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의 추가 이관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2023 ~ 2025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3년	277,050	634,922	632,741	2,171	9	99.7
2024년	342,903	498,192	495,619	2,572	-	99.5
2025년	371,737	210,024	174,627	35,365	31	83.1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교육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계기준 97조 783억 6,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7,222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조 8,005억 7,200만원임. 이 중 99.9%인 97조 6,662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6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56억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계기준[1])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99,322,129	97,078,363	722,209	97,800,572	97,666,292	18,675	115,605
영유아및초중등교육	81,010,325	79,123,308	710,334	79,833,642	79,811,124	14,375	8,143
고등교육	17,475,830	17,119,081	-	17,119,081	17,023,036	-	96,045
평생·직업교육	520,680	520,680	10,365	531,044	522,442	973	7,630
교육일반	150,123	150,123	1,510	151,633	144,541	3,326	3,765
기초생활보장	165,171	165,171	-	165,171	165,149	-	2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1)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함.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바, 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수입, 총지출이 함께 활용됨.

가) 이체、이용、전용액

❑ 교육부 2025회계연도 이용액은 10억 8,200만원이며, 국립대학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1억 7,6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 4,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2억 6,40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전용액은 79억 9,2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국립학교 기본경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과 국립학교 인건비 예산을 전용한 경우 등이 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5년도	-	± 1,082	± 7,992

자료: 교육부

주요 이용 내역

- 국립학교 인건비 1,082백만원

주요 전용 내역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6,751백만원
- 기타 등 1,241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86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5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학교정책과)	70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정책연구비(260-02) : 70백만원	사고이월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교육콘텐츠정책과)	27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12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15백만원	사고이월
인성교육진흥사업 (민주시민교육과)	44	o (민간이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민간위탁비(320-02) : 44백만원	사고이월
보육사업관리 (영유아정책총괄과)	847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847백만원	사고이월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교육시설담당관)	13,387	o (건설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92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459백만원 - 공사비(420-03) : 11,457백만원 - 감리비(420-04) : 1,225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2백만원 o (유형자산)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자산취득비(430-01) : 153백만원	사고이월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담당관)	618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정책연구비(260-02) : 618백만원	사고이월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국제교육정책담당관)	30	o (국제부담금) 미지급금 이월 - 국제부담금(340-02) : 30백만원	사고이월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국립국제교육원)	151	o (운영비 등) 경상경비 이월 등: 151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학생교육 교류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104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104백만원	사고이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국립국제교육원)	15	o (운영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정책연구비(260-02) : 15백만원	사고이월
한국어능력시험개선 (국립국제교육원)	55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55백만원	사고이월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디지털인프라담당관)	626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120백만원 o (유형자산)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자산취득비(430-01) : 3백만원 o (민간이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민간위탁비(320-02) : 503백만원	사고이월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디지털인프라담당관)	123	o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일반연구비(260-01) : 120백만원 o (유형자산)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자산취득비(430-01) : 3백만원	사고이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정보화) (디지털인프라담당관)	503	o (민간이전)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 - 민간위탁비(320-02) : 503백만원	사고이월
본부·소속기관 기본경비 (본부, 소속기관)	2,700	o (운영비 등) 경상경비 이월 등: 2,700백만원	사고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1,156억 500만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953억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65억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국고분, 교육세 지원분)	95,30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6,500백만원
- 인건비 등 기타	13,800백만원

라) 세출결산 증감 현황

❑ 2025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2024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2023년 대비 10.9% 증가하였음.

❑ 불용액은 2024년보다 4조 3,098억 5,400만원 감소한 1,156억 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4년 대비 66억 6,200만원 증가한 186억 7,500만원임.

< 최근 3년(2023 ~ 202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비율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96,915,833	96,926,556	86,243,138	89.0	16,637	10,666,780
2024년	90,968,627	92,247,113	87,809,641	95.2	12,013	4,425,459
2025년	99,322,129	97,800,572	97,666,292	99.9	18,675	115,605

자료: 교육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50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89.6%에 해당하는 9억 6,200만원이 수납됨.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억 1,200만원임.

< 2025 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합 계	5,032	5,032	1,074	962	-	112	89.6
재산수입	925	925	17	11	-	6	64.7
경상이전수입	4,107	4,107	1,057	951	-	106	90.1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255억 9,500만원으로, 이 중 96.5%인 3,141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4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325,595	325,595	-	325,595	314,147	-	11,448
영유아및초중등교육	323,875	323,875	-	323,875	312,427	-	11,448
고등교육	1,720	1,720	-	1,720	1,720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 2025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조 1,020억 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2,577억 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인 3조 2,577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음.

< 2025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합 계	3,102,013	3,102,013	3,257,757	3,257,757	-	-	100.0
재산수입	-	-	5,273	5,273	-	-	100.0
경상이전수입	-	-	21,795	21,795	-	-	100.0
세계잉여금	24,641	24,641	24,424	24,424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77,372	3,077,372	3,206,265	3,206,265	-	-	100.0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주2: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세입예산 수납액-세출예산 집행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공제하여 산출하며,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편성됨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308억 6,500만원으로, 이 중 100.0%인 3조 2,308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3,102,013	3,102,013	-	3,230,865	3,230,865	-	-
영유아및초중등교육	3,102,013	3,102,013	-	3,230,865	3,230,865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6조 3,068억 4,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6조 3,070억 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6조 3,070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합 계	16,663,592	16,306,843	16,307,086	16,307,015	-	70	100.0
재산수입	9,348	9,348	60,422	60,422	-	-	100.0
경상이전수입	150,000	150,000	183,358	183,288	-	70	100.0
수입대체경비수입	6,045	6,045	10,799	10,799	-	-	100.0
전년도이월금	-	-	3,530	3,530	-	-	100.0
세계잉여금	120,942	120,942	123,738	123,738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377,257	16,020,508	15,925,238	15,925,238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 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조 7,780억 2,700만원으로, 이 중 99.1%인 15조 6,339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21억 6,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19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전용액은 24억 3,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글로컬대학의 증·개축 및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목 변경과 국립대학 공공요금분 충당 등임.

❑ 불용액은 819억 3,900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16,127,278	15,770,529	7,498	15,778,027	15,633,923	62,165	81,939
고등교육	15,545,698	15,188,949	7,498	15,196,447	15,052,343	62,165	81,939
평생·직업교육	581,580	581,580	-	581,580	581,580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가) 이체、이용、전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5년도	-	-	±2,430

자료: 교육부

주요 전용 내역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130백만원
- 국립대학 기본경비 공공요금 부족 등 1,300백만원

나) 다음연도 이월액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621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없음.

< 2025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교육국제화담당관)	30	o (민간이전) 미지급금 이월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백만원	사고이월
국립대학 시설확충 (교육시설담당관)	240	o (운영비) 미지급금 이월 - 일반용역비(210-14) : 240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명(주관부서)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혁신지원과)	61,895	o (일반출연금) 병원 건축공사 등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출연금(350-02) : 61,895백만원	사고이월

자료: 교육부

다) 불용액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의 불용액은 819억 3,900만원으로 국립대학 인건비 356억 4,2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127억 8,500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5억 3,100만원 등임.

주요 불용 내역	
- 국립대학 인건비	35,642백만원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12,785백만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531백만원
- 기타	25,981백만원

3. 기금 결산

가. 사학진흥기금

1) 재무상태

❑ 2025년도 말 기준 사학진흥기금 총 자산은 1조 7,420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4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산 1조 7,225억 1,800만원, 유무형자산 194억 6,800만원, 기타자산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부채총액은 1조 1,33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차입부채 1조 1,307억 4,300만원, 충당부채 29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기말 순자산 금액은 6,082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0억 4,400만원 증가함.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자산	**금 융 자 산**	**1,722,518**	**1,544,522**	**177,996**
	(1) 현금및현금등가물	94,123	104,648	△10,525
	(2) 단기금융상품	2,700	2,200	500
	(3) 단기대여금 등	1,625,695	1,437,674	188,021
	유무형자산	**19,468**	**20,007**	**△539**
	(1) 일반유형자산	18,332	18,869	△537
	(2) 무형자산	1,136	1,138	△2
	기 타 자 산	**29**	**58**	**△29**
	계	**1,742,015**	**1,564,587**	**177,428**
부채및자본	**< 부 채 >**	**1,133,720**	**1,068,336**	**65,384**
	(1) 차입부채	1,130,743	1,065,528	65,215
	(2) 충당부채	2,977	2,808	169
	(3)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	**608,295**	**496,251**	**112,044**
	(1) 기본순자산	195,832	195,832	-
	(2) 적립금 및 잉여금	410,521	298,466	112,055
	(3) 순자산조정	1,942	1,953	△11
	계	**1,742,015**	**1,564,587**	**177,428**

자료: 교육부

2) 손익상황

❑ 사학진흥기금의 2025년도 프로그램 총원가는 전년 대비 88억 8,400만원 증가한 425억 500만원임. 프로그램순수익은 전년 대비 34억 8,900만원 감소한 341억 5,000만원임.

❑ 공통비용인 관리운영비는 전년보다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비용은 전년보다 7억 3,800만원 감소함.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된 비배분수익이 4억 8,000만원 감소하여 재정운영순원가는 95억 1,000만원임.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5년(A)	2024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42,505	33,621	8,884	
1. 대학자율역량강화	2,182	2,919	△737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40,159	30,702	9,457	
3.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63	-	163	
Ⅱ. 프로그램순수익	34,150	37,639	△3,489	
1. 대학자율역량강화	1,208	1,324	△116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32,941	36,315	△3,374	
3.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	-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8,355	△4,018	12,373	
1. 대학자율역량강화	973	1,595	△622	
2.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융자)	7,218	△5,613	12,831	
3.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63	-	163	
Ⅳ. 관리운영비	3,544	3,557	△13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1,279	2,017	△738	법인세 등
Ⅵ. 비배분수익	3,668	4,149	△480	여유자금 운용 등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9,510	△2,593	12,103	
Ⅷ. 비교환수익등	1,564	-	1,564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7,946	△2,593	10,539	

자료: 교육부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사학진흥기금의 2025년도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5,650억 3,900만원보다 321억 5,700만원(5.7%) 증가한 5,971억 9,600만원임.

< 2025년 사학진흥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감	
			(B-A)	%
계	565,039	597,196	32,157	5.7
ㅇ 자체수입	176,255	201,195	24,940	14.2
ㅇ 정부내부수입	357,264	289,068	△68,196	△19.1
ㅇ 여유자금회수	31,520	106,933	75,413	239.3

자료: 교육부

❑ 자체수입은 계획현액 1,762억 5,500만원 대비 249억 4,000만원 증가한 2,011억 9,500만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차입금 감소로 계획현액 3,572억 6,400만원 대비 681억 9,600만원 감소한 2,890억 6,800만원임. 여유자금회수는 계획현액 315억 2,000만원 대비 75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69억 3,300만원임.

나) 지출결산

❑ 2025년도 지출결산의 경우 계획현액 5,650억 3,900만원 대비 5,97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당초 계획을 상회함에 따라 관련 자금 운용 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함.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의 경우 계획현액 3,691억 4,900만원 중 3,690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104억 2,500만원 중 9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9,100만원을 불용함.

정부내부지출은 계획현액 1,625억 6,800만원 중 1,21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410억 100만원을 불용함.

여유자금운용은 969억 700만원임.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현액(A)	실적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565,039	597,196	105.7	-	41,853
<사업비>	369,149	369,088	100.0	-	61
[2302]학교경영지원사업	1,099	1,089	99.1	-	10
[450]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099	1,089	99.1	-	10
[2861]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48,000	247,999	100.0	-	1
[300]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218,063	218,063	100.0	-	0
[301]행복기숙사 지원사업	29,737	29,737	100.0	-	0
[305]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200	199	99.5	-	1
[4333]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120,050	120,000	100.0		50
[353]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120,050	120,000	100.0		50
<기금운영비>	10,425	9,634	92.4	-	791
[2976]기금운영비	9,729	8,974	92.2	-	755
[100]인건비	6,197	5,500	88.8	-	697
[200]기타경비	3,502	3,444	98.3	-	58
[206]대학재정분석	30	30	100.0	-	0
[2978]정보화경비	696	660	94.8	-	36
[250]정보시스템운영	696	660	94.8	-	36
<정부내부지출>	162,568	121,567	74.8	-	41,001
[9110]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123,454	84,504	68.4	-	38,950
[841]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23,454	84,504	68.4	-	38,950
[9111]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7,846	17,846	100.0	-	0
[840]주택도시기금예수원금상환	17,846	17,846	100.0	-	0
[920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8,768	7,310	83.4	-	1,458
[841]공자기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8,768	7,310	83.4	-	1,458
[9202]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2,500	11,907	95.3	-	593
[840]주택도시기금예수이자상환	12,500	11,907	95.3	-	593
<여유자금운용>	22,897	96,907	423.2	-	0
[9701]여유자금운용	22,897	96,907	423.2	-	0
[971]통화금융기관예치금	22,897	96,907	423.2	-	0

자료: 교육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재무상태

❑ 2025년도 말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총자산은 32조 4,280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807억 6,400만원(12.8%)이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내역은 투자증권 및 대여금 등 금융자산이 31조 9,978억 4,000만원(98.7%), 유 · 무형자산이 3,983억 5,900만원(1.2%), 선급법인세 및 선급비용등 기타자산이 318억 1,500만원(0.1%)임.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5년(A)	2024년(B)	증감(A-B)
자산	금 융 자 산	31,997,840	28,312,592	3,685,24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55,273	391,709	△36,436
	(2) 금융상품	24,000	32,000	△8,000
	(3) 투자증권	29,306,252	25,435,032	3,871,220
	(4) 정부출자금	212,610	212,610	-
	(5) 대여금	2,011,803	2,173,480	△161,677
	(6) 미수채권	81,776	61,613	20,163
	(7) 기타금융자산	6,126	6,148	△22
	유·무형자산	398,359	403,146	△4,787
	기타자산	31,815	31,512	303
	합 계	32,428,014	28,747,250	3,680,764

과 목		금 액		
		2025년(A)	2024년(B)	증감(A-B)
부채및자본	< 부 채 >	658,936	642,203	16,733
	(1) 차입부채	450,768	497,111	△46,343
	(2) 충당부채	-	294	△294
	(3) 기타부채	208,168	144,797	63,371
	< 순 자 산 >	31,769,078	28,105,047	3,664,031
	(1) 적립금 및 잉여금	24,584,132	23,986,611	597,521
	(2) 순자산조정	7,184,946	4,118,436	3,066,510
	합 계	32,428,014	28,747,250	3,680,764

자료: 교육부

- 금융자산은 31조 9,978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85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자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이 3조 8,712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364억 3,6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유 · 무형자산은 3,98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00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타자산은 318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원 증가하였음

❑ 당기말 부채총액은 6,58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3,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 내역은 국고위탁금 등 차입부채 4,507억 6,800만원, 기타부채 2,081억 6,800만원임.

❑ 당기말 순자산은 31조 7,690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640억 3,1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적립금 및 잉여금은 전년 대비 5,97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의 조정(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전년 대비 3조 66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음.

2) 손익상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2025년도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9,158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0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비교환수익은 4조 6,536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6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1,385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 5,300만원 증가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14억 7,000만원 감소하였고, 비배분비용은 260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5,150억 5,200만원 증가하였음.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4,285억 6,400만원 증가한 5,975억 2,100만원(이익)임.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25년(A)	2024년(B)	증감(A-B)	
Ⅰ. 프로그램총원가	5,915,821	5,688,798	227,023	
1. 연금급여 등 지급	5,889,027	5,661,452	227,575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26,794	27,346	△552	대여,회관임대
Ⅱ. 프로그램수익	138,574	119,221	19,353	
1. 연금급여 등 지급	13,722	10,702	3,020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124,852	108,519	16,333	대여,회관임대
Ⅲ. 프로그램순원가(Ⅰ-Ⅱ)	5,777,247	5,569,577	207,670	
1. 연금급여 등 지급	5,875,305	5,650,750	224,555	연금사업
2. 융자 및 회관사업	△98,058	△81,173	△16,885	대여,회관임대
Ⅳ. 관리운영비	14,137	15,607	△1,470	공통비용
Ⅴ. 비배분비용	58,084	84,124	△26,040	자금운용

구 분	금 액			비 고
	2025년(A)	2024년(B)	증감(A-B)	
Ⅵ. 비배분수익	1,793,375	1,278,323	515,052	자금운용
Ⅶ. 재정운영순원가 (Ⅲ+Ⅳ+Ⅴ-Ⅵ)	4,056,093	4,390,985	△334,892	
Ⅷ. 비교환수익 등	4,653,614	4,559,942	93,672	
Ⅸ. 재정운영결과 (Ⅶ-Ⅷ)	△597,521	△168,957	△428,564	당기순이익

자료: 교육부

❑ 프로그램총원가는 5조 9,158억 2,100만원인데, 연금급여 등이 5조 8,890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회관사업은 5억 5,200만원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수익은 1,385억 7,400만원인데, 융자 및 회관사업등 수익이 1,248억 5,200만원으로 163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연금급여 등 사업은 수익이 13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비교환수익(사회보험수익)은 4조 6,536억 1,400만원인데, 전년 대비 936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 자금운용비용인 비배분비용이 58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조 7,933억 7,500만원으로 5,150억 5,200만원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결과는 5,97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5억 6,400만원 증가하였음.

3) 운용실적

가) 수입결산

❑ 기금 수입실적은 계획현액 13조 7,132억 7,300만원보다 1조 8,749억 1,200만원이 감소한 11조 8,383억 6,100만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86.3% 수납하였음. 자체수입이 6조 3,671억 2,600만원으로 계획대비 13.3.% 감소하였고, 여유자금 회수는 4조 5,019억 2,900만원으로 계획대비 16.6%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증 감	
			(B-A)	%
계	13,713,273	11,838,361	△1,874,912	△13.7
ㅇ 자체수입	7,343,963	6,367,126	△976,837	△13.3
ㅇ 정부내부수입	969,306	969,306	-	-
- 일반회계전입금	969,306	969,306	-	-
ㅇ 여유자금회수	5,400,004	4,501,929	△898,075	△16.6

자료: 교육부

나) 지출결산

❑ 2025년도 기금 지출실적은 계획현액 13조 7,132억 7,300만원보다 1조 8,749억 1,300만원이 감소한 11조 8,383억 6,000만원을 지출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은 계획현액 6,020억 200만원 대비 99.8%인 6,009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은 계획현액 5조 9,878억 4,100만원 중 98.1%인 5조 8,72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1,152억 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기금운영비는 계획현액 315억 9,100만원 중 93.0%인 293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대여학자금반환은 계획현액 498억 9,700만원으로 100.0% 지출하고, 여유자금운용은 계획현액 7조 419억 4,200만원 중 75.1%인 5조 2,854억 6,600만원을 지출함.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실적(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계	13,713,273	11,838,360	86.3	-	1,874,913
6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602,002	600,971	99.8	-	1,031
회관운영사업(6033-302)	17,109	16,441	96.1	-	668
정보시스템구축(6034-300)	5,845	5,557	95.1	-	288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50,503	50,503	100.0	-	-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524,594	524,551	99.9	-	44
고객지원(6038-300)	2,601	2,576	99.0	-	25
자금운용사업비(6040-300)	1,350	1,344	99.6	-	6
6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5,987,841	5,872,639	98.1	-	115,202
연금급여(6131-400)	5,124,829	5,083,601	99.2	-	41,228
재해보상급여(6132-401)	55,183	51,349	93.1	-	3,834
퇴직수당급여(6133-402)	807,829	737,689	91.3	-	70,140
6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영비	31,591	29,387	93.0	-	2,204
인건비(6376-100)	22,374	20,606	92.1	-	1,768
기타경비(6376-200)	9,217	8,781	95.3	-	436
8800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반환)	49,897	49,897	100.0	-	-
국고대여학자금반환(8810-885)	49,897	49,897	100.0	-	-
9700 여유자금운용	7,041,942	5,285,466	75.1	-	1,756,476
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1)	451,101	379,273	84.1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2)	2,422,903	500,000	20.6	-	-
국채매입(9703-974)	436,502	398,182	91.2	-	-
국채외채권매입(9703-975)	516,586	1,390,450	269.2	-	-
주식매입(9703-976)	2,031,139	1,783,255	87.8	-	-
기타유가증권매입(9703-977)	1,183,711	834,307	70.5	-	-

자료: 교육부

4.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재정상태표)

❑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의 자산은 67조 1,362억 8,600만원, 부채는 2조 4,028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64조 7,334억 3,500만원임.

❑ 자산은 투자증권 29조 3,063억 3,600만원, 대여금 3조 6,257억 3,400만원, 일반유형자산 32조 4,066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조 5,162억 1,000만원(7.2%) 증가함. 이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투자증권이 전년 대비 3조 8,711억 6,3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함.

❑ 부채는 차입금 1조 1,235억 8,000만원, 기타차입부채 1조 2,524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424억 3,000만원(16.6%) 증가함. 이는 전년 대비 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증가에 따라 차입금이 657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증가 등에 따라 기타차입부채가 2,718억 4,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67,136,286	62,620,076	4,516,210	7.2
Ⅰ. 금융자산	33,943,392	30,062,254	3,881,138	12.9
Ⅱ. 유·무형자산	32,492,459	31,883,668	608,791	1.9
Ⅲ. 기타자산	700,435	674,154	26,281	3.9
부 채	2,402,850	2,060,420	342,430	16.6
Ⅰ. 차입부채	2,376,054	2,038,500	337,554	16.6
Ⅱ. 충당부채	2,977	3,102	(125)	△4.0
Ⅲ. 기타부채	23,819	18,818	5,001	26.6
순 자 산	64,733,435	60,559,656	4,173,779	6.9
Ⅰ. 기본순자산	19,566,441	19,566,441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2,810,175	21,795,278	1,014,897	4.7
Ⅲ. 순자산 조정	22,356,820	19,197,937	3,158,883	16.5

자료: 교육부

나. 재정운영 분석(재정운영표)

❑ 교육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96조 9,360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2조 8,159억 7,100만원, 관리운영비 1,778억 6,800만원, 비배분비용 1,145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962억 1,200만원, 비배분수익 2조 327억 5,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3조 7,434억 2,200만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0조 328억 4,000만원(11.1%) 증가한 100조 6,794억 4,4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10조 3,358억 5,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총 2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으로 70조 2,812억 1,600만원임.

❑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54억원 및 운영비 23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462억원 및 운영비 62억원 등으로 구성됨.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9,578억원, 이자수익 3,768억원 등으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2,419,759	92,083,904	10,335,855	11.2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2,815,971	92,342,673	10,473,298	11.3
나. 프로그램 수익	396,212	258,769	137,443	53.1
Ⅱ. 관리운영비	177,868	181,688	△3,820	△2.1
Ⅲ. 비배분비용	114,571	131,289	△16,718	12.7
Ⅳ. 비배분수익	2,032,758	1,750,284	282,474	16.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00,679,440	90,646,596	10,032,844	11.1
Ⅵ. 비교환수익 등	3,743,422	3,638,882	104,540	2.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96,936,018	87,007,714	9,928,304	11.4

자료: 교육부

다. 순자산변동 분석(순자산변동표)

❑ 교육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0조 5,596억 5,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4조 7,334억 3,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조 1,737억 7,900만원(6.9%) 증가하였음.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9조 9,283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10조 1,144억 4,4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이 1조 7,058억 9,6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의 증가규모가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17조 5,446억 6,600만원에서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9조 5,937억 5,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조 677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60,559,656	58,277,912	2,281,744	3.9
Ⅱ. 재정운영결과	96,936,018	87,007,714	9,928,304	11.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7,950,915	87,836,471	10,114,444	11.5
Ⅳ. 조정항목	3,158,883	1,452,987	1,705,896	117.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4,733,435	60,559,656	4,173,779	6.9

자료: 교육부

5. 2025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교육부 소관 2025회계연도 신규사업은 지역인재육성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등 5개 세부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3,734억 6,1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신규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일반회계	사학진흥기금 전출	○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	121,787	121,0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인재육성지원	○ 지역 RISE 계획과 연계한 고교-대학 연계 및 지역인재전형 지원을 통한 우수지역인재 육성	1,720	1,7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	128,85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지원	○ 교원양성기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1,877	1,877
사학연금기금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120,050	120,000
계			245,434	373,461

자료: 교육부

❑ 교육부 소관 사업 중 2025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3조 4,313억 7,6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종료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회계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	750	750
	교육기부활성화사업	○ 교육기부 자원 발굴·연계 및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3,250	3,250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회정책협력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총액대상)	8	4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사회정책협력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총액비대상)	415	16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대상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1,353,296	1,482,14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교육세 지원분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전출	1,702,175	1,702,175
	사학진흥기금 전출	○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	121,787	121,01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교원양성기관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1,877	1,877
사학진흥기금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사립대학 부속병원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120,050	120,000
계			3,303,608	3,431,376

자료: 교육부

6.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8	6	76	-	90

나.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시정완료	시정중	시정 미이행	
74	16	-	90

다.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6.7.31.)
□ 결산		
(1)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집행 점검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준수 노력 필요	주의	조치완료
(3)소속기관 경비의 본부 전용 문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의 안전인증 완료 필요	주의	조치중
(5)사업의 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6)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예산 배분방식 개선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시정	조치완료
(8)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조속한 설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9)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제고 방안 마련 및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인재양성 목적에 맞는 사업 예산 활용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11)평가인증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2)한국학진흥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3)인프라고도화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한국연구재단 위탁연구개발비 목적을 고려하여 집행	제도개선	조치완료
(16)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운영비에 대한 적정예산 교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6.7.31.)
(17)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의 신뢰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8)세부사업 목적에 따라 별도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9)추계방식 개선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 홍보 등 사업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0)멘토링 사업 예산 산출방식 현실화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	제도개선	조치완료
(21)국가장학금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22)K-MOOC강의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보완	제도개선	조치완료
(23)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제도개선	조치완료
(24)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의 규모 산정 합리화 및 사업관리 강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25)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사업 진행을 고려한 예산 교부	주의	조치완료
(26)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7)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8)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학생수 기준 고려 필요	시정	조치완료
(29)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시정	조치완료
(30)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1)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과 용도 일탈 점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2)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범위 및 규모 적정 수준 조정 필요 등	시정	조치완료
(33)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4)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관리 강화 및 정비 필요	시정	조치완료
(35)유보통합 관련'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6)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7)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8)시간제보육 통합반 확충에 따른 이용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9)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0)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1)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편성 방안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2)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3)유보통합 재원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4)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소재 한국교육원의 교육기능 효율적 수행 방안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5)재외한국학교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6)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7)실증 지원 성과 조사의 응답률 제고 및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8)에듀테크 정보 제공·활용의 지역격차 최소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9)교원연수 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개선 필요	주의	조치완료
(50)디지털 튜터 배치·운영의 적정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1)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2)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3)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진단 및 조치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현황 ('26.7.31.)
(54)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현황 점검 및 근거 마련 필요	시정	조치중
(55)교과용도서 검정 체계 정비 및 부실 검정 시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6)국가영재교육연구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방안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57)학사관리시스템(HS크레딧)의 기능 개선 및 사설업체 의존 최소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58)동북아역사재단의 결원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59)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시정	조치완료
(60)교직원 정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1)유사 내역사업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2)교원 양성기관 개선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3)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4)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주의	조치완료
(65)교육급여 실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6)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	제도개선	조치중
(67)연례적인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8)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신속 추진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69)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관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0)R-GKS 장학생 취업·정주 연계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1)HURIK 유지보수 계약 예산 비목 변경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2)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 개선 필요	시정	조치완료
(7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4)학생정신건강 지원강화 사업 사업방식 변경 및 성과관리 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75)고교 무상교육의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76)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7)근로장학금 사업 수요 산출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78)사업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지방비 매칭 실적 강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79)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 기준 공시 독려 및 등록금 연계 방식 재검토	제도개선	조치중
(80)퇴직수당급여 부담금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1)수입대체경비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연례적 반복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중
(82)학부모지원센터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증액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3)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고교무상교육 재투자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84)공무직 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 지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5)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86)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7)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8)연금급여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 반복 부적절	제도개선	조치중
□ 예비비		
(1)영유아보육료 편성 대비 과다 집행에 따른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 1,034억 6,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676억 8,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 및 유아 단계적무상교육 보육 실현 각각 1,288억 5,200만원 등 총 8,288억 4,5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함.

❑ 주요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1,034억 6,000만원을 배정받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추가 소요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4,676억 8,200만원을 배정받음.

-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금 1,288억 5,200만원을 배정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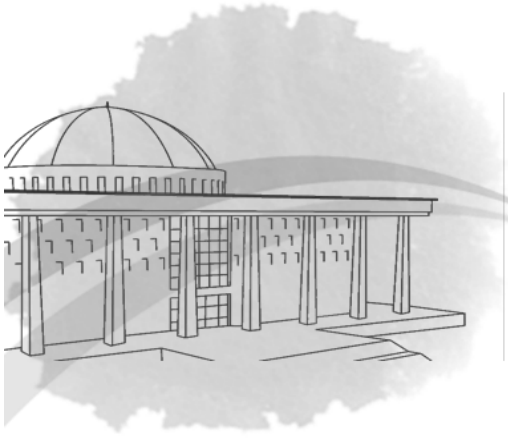
-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위하여 유아 단계적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에 1,288억 5,200만원을 배정받음.

< 2025년도 예비비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배정 사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03,460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
고등학교 무상교육	467,682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추가 소요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	128,852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 소요
유아 단계적무상교육 보육 실현	128,852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추가 소요
계	828,845	

Ⅱ. 검 토 의 견



1. 기획조정실

<세입>

1) 징계부가금(56-564)[2)]

○ 징계부가금의 미수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고 수납률이 낮은 만큼, 개별 미납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학교별 징계부가금 부과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부과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징계부가금(56-564)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국가가 수납할 징계 관련 부가금으로서, 공무원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부과하는 것임.[3)]

---

2) 문의: 02-6788-5188

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사. (생 략)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6,600만원으로, 이 중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2.1%임.

< 2025년도 징계부가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D)	미수납액	수납률 (B/A)
□ 징계부가금	66	-	66	22	8	14	12.1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징계부가금의 적극적인 징수 및 합리적인 세입 추계 필요

❑ 징계부가금(56-564)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최근 4년간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낮은 수준이며 수납률도 최대 27.4%에 그치고 있음.

<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2	49	146	40	81.6	27.4	106
2023	55	107	-	-	-	107
2024	66	122	12	18.1	9.8	110
2025	66	22	8	12.1	36.4	14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2025년도 징계부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징계부가금의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별 금액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결산 평균액인 6,600만원을 반영하였음.[4)]

❑ 그러나 현재(2026년 5월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액은 총 15억 8,500만원이며, 이 중 6억 8,689만원이 수납되고 8억 9,815만원이 미납 상태에 있음.

이 가운데 일부는 재산 부재 등으로 단기간 내 징수가 어려운 사안도 있으나, 분할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사례 등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2024년 5월)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4) 2026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교육부는 최근 5년간 결산 평균액인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징계부가금의 미납현황(2026.6월말 기준) >

(단위: 천원, '26.5월말 기준)

구분	처분 년도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배수	부과 금액	납부 금액	미납액	미납사유 및 조치계획
국립 경국대 (안동대)	2012	감봉	공금 횡령	1	10,700	-	10,700	[세무서 징수 위탁] • 안동세무서 징수 위탁('12.8.7, '20.6.1, '25.3.5, '26.2.6.)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회수 위탁('16.10, '25.6.)을 지속하였으나, '무자산'으로 압류 가능 재산이 없어 징수수탁 반려 • '18.3.3. 채권 소멸시효가 소멸되어 징계부가금 청구 사건 소송('20.5.26. 판결선고)을 통해 소멸시효를 '30.7.22.까지 연장 • '26.2.6. 안동세무서에 징수 위탁 의뢰한 상황이며, '26.하반기 중 독촉장 발송 예정
전북대	2018	정직	사기	3	51,000 →1,000	1,000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 납부완료]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18.5.28.) 이후 1백만원을 납부하고 변제계획서 제출('18.7.20.) •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조치되어 '18.7.26.자 의원면직 및 출국 • 북전주세무서에 징수위탁('19.1.29.)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보유재산 부재로 국세체납처분 준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징수 의뢰 반려('19.7.2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5항에 의거, 납부금 1백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감면 의결('26.1.8.)
	2021	정직	공금 횡령	1	200,818	-	200,818	[세무서 징수 위탁]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수령('21.11.12.) 이후 징계부가금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며, 기각 확정('24.7.8.) • 소송종료에 따른 징계부가금 재부과 요청(교육부, '24.7.23.)에 따라 납입고지서 전달을 위해 자택을 방문('24.8.22.)했으나 폐문부재로 내용증명 발송 • 폐문부재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진행('24.10.21.~11.5.) • 공시송달 이후 관할 세무서에 징수위탁하려 했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23.2.8. 의원면직) 행방이 묘연하여 절차 중단 • 기관의 추가 고발 및 타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25.11.28.)되어 현재 수감중이며, 북부산 세무서에 징수 위탁('26.2.6.)
충남대	2019	해임	업무상 횡령	1	15,500	-	15,500	[세무서 징수 위탁] • 북대전세무서에 징수 위탁('21.6.29.)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진행('22.1.~)으로 채권 시효 중단('22.1.7.) 상태 ※ 세무서 진행 상황: 징계부가금을 초과한 부동산(약 5천만원 상당)으로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압류 가능 재산 지속 확인중
국립 순천대	2019	파면	금품 수수	3	98,727	-	98,727	[감면 검토중] • '19.3.26. 징계부가금 처분 이후, 동일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20.5.14.)되어 벌금 및

구분	처분 년도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배수	부과 금액	납부 금액	미납액	미납사유 및 조치계획
								추징금이 부과·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3년 6개월간 복역하여 연락두절 * 판결: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천8백만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산정 대상 금액과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징계부가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국립 한밭대	2020	정직	사기	1	32,815	28,300	4,515	[분할납부] • 분할납부(매월 1,000천원) 중이며, '26년 2분기(4~6월분) 분할 납부액 선납 확인 완료 • 분할납부 지속 요청하여 '26년 내 납부완료 예정
경북대	2021	해임	사기, 배임	1	215,262	1,200	214,062	[분할납부] • '25.4월까지 납부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25.6.11. 남대구세무서에 징수 위탁 • 관할 세무서 절차에 따라 '26.2월부터 매월 300천원씩 분할납부 중(현재까지 1,200천원 납부)
부산대	2021	파면	배임, 사기, 횡령	1	86,478	-	86,478	[세무서 징수 위탁(예정)] • '21년부터 '23년까지 지속 납부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파산 등으로 연락두절 상태임 • 공무원연금 압류 및 금정세무서 징수 절차 의뢰 후, 징수 위탁 진행 예정('26.7월 중)
국립 군산대	2022	정직	학생 인건비 회수	1	359,613	359,613	-	• '26.6.1. 납부 완료
	2024	해임	학생 인건비 회수	2	54,204	-	54,204	[세무서 징수 위탁] • 납부 안내 및 독촉(6회, '24.02.06, '24.05.31, '24.06.13, '24.07.09, '24.11.15, '25.03.12.)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우편물(내용증명) 반송 등의 사유로 군산세무서 징수 위탁('26.5.12.)
강원대	2024	정직	사기	3	80,937	60,702	20,235	[분할납부] • 행정소송 1심판결 확정('25.8.6.)에 따라 징계부가금 납부를 안내했으며, 현재 분할납부 중(9회차, 60,702천원 납부, '26.8.30. 납부완료 예정)
	2024	해임	사기	2	385,830	192,915	192,915	[분할납부] • 행정소송 2심판결 확정('25.11.17.)에 따라 징계부가금 납부를 안내했으며, 현재 분할납부 중(6회차, 192,915천원 납부, '26.11.17. 납부완료 예정)
	2024	정직	공금 횡령	2	43,168	43,168	-	• '25.10.10. 납부 완료
총계('26.5월말 기준, A)					1,585,052	686,898	898,154	
총계('25.12월말 기준, B)					1,635,052	23,300	1,611,752	
증감(A-B)					△50,000	663,598	△713,598	

자료 : 교육부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평균 실적만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기보다는 개별 미납채권의 징수 진행상황과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미납채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와 징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징계부가금은 발생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개별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의뢰하거나 납부를 독려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제고 필요

❑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대학별로 부과배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의 경우 배임·사기·횡령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이득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반면, 전북대학교에서는 사기 행위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재산상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강원대학교에서는 사기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3배,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2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가되고 있음.

또한, 동일하게 사기 행위로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임에도 전북대학

교는 3배, 한밭대학교는 1배를 부과하는 등 유사한 사안 간에도 부과 수준에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

❑ 물론 「국가공무원법」은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비위의 유형·정도, 고의·과실, 직급, 근무경력, 공적 및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별로 부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5)]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예산 및 기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의6]에 비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음.

❑ 다만, 동일한 법령과 부과기준을 적용함에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학별 부과 수준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과 고려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학별 적용 결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을 점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회계>

1) 정책연구개발사업[6)]

○ 교육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과제의 선정과 추진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연구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에 한계가 있고, 2024년 수행된 정책연구도 58.8%만 공개되는 등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수준도 낮으므로, 예산안의 구체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등 예산심의의 실효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책연구개발사업(4033-300)은 교육분야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새로운 정책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사업임.

6) 문의: 02-6788-5188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11억 3,2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7.3%임.

< 2025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정책연구개발사업	1,132	113	1,245	589	618	37	47.3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2022년 66.5%에서 2023년 91.7%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4년에는 84.6%로 다시 하락하였음. 특히 2025년 집행률은 전년 대비 37.3%p 감소한 47.3%에 그쳐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최근 4년간 정책연구개발사업 결산내역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C)	집행률 (A/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1,168	1,168	61	1,229	818	66.5	387	23
2023	1,110	1,110	387	1,497	1,374	91.7	93	59
2024	999	999	93	1,092	924	84.6	113	56
2025	1,132	1,132	113	1,245	589	47.3	618	37
2026.7월말	1,060	-	618	1,678	643	38.3%	-	-

자료 : 교육부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5년에 정책연구과제 35개(정기과제 28개, 수시과제 7개)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2개 과제만 완료하였고 나머지 23개 과제를 2026년으로 이월함에 따라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 국정과제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수요 증가로 하반기에 과제 선정(9월) 및 계약 체결(10월)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과제가 연내 착수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연구과제의 선정과 추진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예산편성의 구체성 제고 및 정책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교육부는 정책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거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연구비 총액만을 편성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과제나 과제별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식에서는 국회가 개별 연구과제의 필요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기존 연구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 예산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정책연구의 특성상 모든 연구과제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주요 연구분야, 예상 연구과제 또는 연구유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안과 함께 제시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한 상당수의 정책연구과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비공개로 등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 외

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은 연구결과를 확인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25년 수행된 정책연구과제 35건 중 2026년 6월 현재 공개된 과제는 11건(31.4%)에 불과하며, 진행 중인 과제를 제외하더라도 공개율은 37.9%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2022년 수행된 과제의 경우에도 전체 36건 중 14건(38.9%)이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과제의 공개현황 >

(단위 : 건, %)

연도	수행건수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진행중	공개율
2022	36	22	14	0	61.1
2023	30	21	9	0	70.0
2024	34	20	14	0	58.8
2025	35	11	18	6	31.4

자료 : 교육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으로 비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구 종료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과제까지 상당수가 계속 비공개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동 사업이 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 사업으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정책연구 관리체계에 따라 별도의 점검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연구결과의 공개 수준 또한 제한적인 현행 운영방식은 국회의 예산심의와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회의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는 비공개 사유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연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8]

○ 교육부는 CAMPUS Asia-AIMS 사업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학생 교류 수요 저조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학생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인원 증가가 어려운 경우 사업비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4333-302)은 UNESCO, OECD, APEC, ASEM, ADEA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안목을 배양하고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UNESCO 교육협력지원 등 총 1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CAMPUS Asia'[9] 내역사업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대학 간 교류 기반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 및 ASEAN 국가의 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사업으로 동아시아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

8) 문의: 02-6788-5189
9)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하기 위한 ‘CAMPUS Asia-한일중’ 사업과 한-아세안 쌍방 인적교류로 상호 이해도를 증진하고 권역 내 고등교육 분야 이동성을 강화하여 유학생 유치 촉진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CAMPUS Asia-AIMS’[10] 사업 등이 있음.

10) AIMS: 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95억 1,200만원으로, 194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8%임.

< 2025년도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19,398	114	19,512	19,479	30	3	99.8
○ UNESCO 교육협력지원	1,608	-	1,608	1,608	-	-	100.0
○ 아태국제이해교육원지원	3,903	-	3,903	3,903	-	-	100.0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180	-	180	178	-	2	98.9
○ OECD 교육연구협력	789	114	903	873	30	-	96.7
○ APEC 교육협력 지원	2,254	-	2,254	2,254	-	-	100.0
○ ASEM 교육협력사업	710	-	710	710	-	-	100.0
○ ASEAN 교육협력사업	501	-	501	501	-	-	100.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500	-	3,500	3,500	-	-	100.0
○ 한-EU 교육협력사업	200	-	200	200	-	-	100.0
○ CAMPUS Asia 사업	4,449	-	4,449	4,449	-	-	100.0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94	-	94	93	-	1	98.9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67	-	67	67	-	-	100.0
○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561	-	561	561	-	-	100.0
○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582	-	582	582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 참여 제고 및 운영 과정 내실화 필요

❑ CAMPUS Asia 사업은 CAMPUS Asia-한일중과 CAMPUS Asia-AIMS 등 2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분되며,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수행됨.

2025년 예산은 CAMPUS Asia-한일중 사업 29억 9,500만원, CAMPUS Asia-AIMS 사업 14억 5,400만원으로 총 4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내역은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사업단(대학 등) 지원을 위한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평가·운영비로 구성됨.

< 2025년 CAMPUS Asia 사업 개요 >

구분	CAMPUS Asia-한일중	CAMPUS Asia-AIMS
사업 목적	• 동아시아 3국과 아세안 대학 간 상호 학생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 한-아세안 쌍방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도 증진과 권역 내 고등교육 분야 이동성 강화를 통한 유학생 유치 촉진 등 협력 기반 조성
사업 내용	•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국가 대학 간 석·박사 공동·복수학위, 1학기 이상 교환교류, 1학기 미만 단기교류	• 한-아세안 대학 간 학부생 1학기(최대 2학기) 교환교류
교류 분야	• 전 분야 : 과학기술, 인문학, 경제, 경영, 법학 등	• 10개 학문분야 : 관광·요식, 농업, 어학·문화, 국제통상, 식품과학, 공학, 경제학, 환경 관리·과학, 생물다양성, 해양과학 * 2026년에는 '환경 관리·과학, 생물다양성, 해양과학'을 '지속가능발전과학'으로 통합
참여 국가	• 한국, 일본, 중국 + 아세안 국가 5개국 * 5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 AIMS 프로그램 회원국 10개국 * 10개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사업 수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민간경상보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민간경상보조)

구분	CAMPUS Asia-한일중	CAMPUS Asia-AIMS
예산	• 총 2,995백만원 - 학생교류비(파견학생): 1,216백만원 (20개 사업단×8명×8개월×0.95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1,566백만원 (20개 사업단×78.3백만원) - 사업평가・운영비: 213백만원	• 총 1,454백만원 - 학생교류비(파견학생): 680백만원 (12개 사업단×9명×9개월×0.7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650백만원 (12개 사업단×54.2백만원) - 사업평가・운영비: 124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CAMPUS Asia 사업의 실제 수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여사업단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국가 간 학생교류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2021년에는 실집행률이 42.3%로 저조하였으나 2022년에는 79.8%, 2023년에는 90.2%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소폭 하락한 87.5%, 88.9%로 각각 나타남.

< 2021~2025년 CAMPUS Asia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학생교류비				프로그램운영비				합계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960	931	44	**4.7**	1,872	1,901	1,154	**60.7**	2,832	2,832	1,198	**42.3**
2022	1,012	963	589	**61.2**	2,965	3,014	2,585	**85.8**	3,977	3,977	3,174	**79.8**
2023	1,375	1,256	1,023	**81.5**	2,628	2,747	2,586	**94.1**	4,003	4,003	3,609	**90.2**
2024	1,462	1,372	1,083	**79.0**	2,649	2,739	2,514	**91.8**	4,112	4,112	3,597	**87.5**
2025	1,488	1,410	1,179	**83.6**	2,624	2,702	2,476	**91.6**	4,112	4,112	3,655	**88.9**

주: 조정액은 각 사업단별로 교부된 예산액 총액 범위 내에서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간 조정한 금액
(각 사업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간 조정하여 집행 가능)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집행현황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CAMPUS Asia-한일중 사업의 합계 기준 실집행률은 2021년에 49.2%였으나, 2022년에는 81.2%로 상승하였고, 2023년부터 90%대를 유지하여 2025년에는 93.5%를 나타냄.

< 2021~2025년 CAMPUS Asia-한일중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학생교류비				프로그램운영비				합계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260	260	20	7.8	1,200	1,200	698	58.2	1,460	1,460	719	49.2
2022	572	572	332	58.0	2,005	2,005	1,760	87.8	2,577	2,577	2,091	81.2
2023	695	702	675	96.3	1,978	1,972	1,828	92.7	2,673	2,673	2,504	93.7
2024	782	783	730	93.1	1,999	1,998	1,807	90.4	2,782	2,782	2,537	91.2
2025	808	830	802	96.7	1,974	1,952	1,798	92.1	2,782	2,782	2,601	93.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CAMPUS Asia-AIMS 사업의 합계 기준 실집행률은 2021년에 35.0%였고, 2022년 77.3%, 2023년 83.1%로 상승하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79.8%, 79.2% 수준으로, CAMPUS Asia-한일중 사업 보다 저조하게 나타남. 특히 학생교류비의 실집행률은 2021년에 3.5%였고 2022년 이후에도 60%대에 머무르고 있음.

< 2021~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학생교류비				프로그램운영비				합계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700	671	24	3.5	672	701	456	65.0	1,372	1,372	480	35.0
2022	440	391	257	65.7	960	1,009	825	81.8	1,400	1,400	1,082	77.3
2023	680	554	348	62.8	650	776	758	97.7	1,330	1,330	1,106	83.1
2024	680	589	354	60.1	650	741	707	95.4	1,330	1,330	1,061	79.8
2025	680	580	377	64.9	650	750	677	90.3	1,330	1,330	1,054	79.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CAMPUS Asia-AIMS 사업의 2025년 합계 기준 실집행률을 사업단별로 살펴보면, 학생교류비와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실적이 모두 저조한 전남대가 가장 낮은 32.3%로 나타났고, 학생교류비 집행실적이 낮은 숙명여대와 한국해양대가 각각 67.1%, 71.8%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실적이 낮은 우송대가 62.7%로 나타났음.

특히, CAMPUS Asia 사업의 참여사업단 사업비는 사업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하여[11] 학생교류비 수요가 적을 경우 이를 프로그램운영비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류비의 실집행률은 17.0%, 27.6%, 34.5% 등 매우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예산 사업단별 실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학생교류비				프로그램운영비				합계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교부액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조정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강원대	56,666	46,366	33,430	72.1	51,666	61,966	61,544	99.3	108,332	94,974	87.7
경상국립대	56,666	52,787	52,787	100.0	53,166	57,045	57,045	100.0	109,832	109,832	100.0
계명대	56,666	46,333	45,085	97.3	51,666	61,999	59,717	96.3	108,332	104,802	96.7
동국대(WISE캠)	56,666	46,333	26,514	57.2	51,666	61,999	60,448	97.5	108,332	86,962	80.3
부경대	56,666	46,866	39,410	84.1	61,666	71,466	65,659	91.9	118,332	105,069	88.8
부산외대	56,666	46,066	31,300	67.9	53,166	63,766	63,336	99.3	109,832	94,636	86.2
숙명여대	56,666	47,233	13,047	27.6	47,166	56,599	56,591	100.0	103,832	69,637	67.1
연세대(미래캠)	56,666	44,333	25,118	56.7	61,666	73,999	71,618	96.8	118,332	96,736	81.7
우송대	56,666	56,666	45,911	81.0	51,666	51,666	22,032	42.6	108,332	67,943	62.7
전남대	56,666	56,666	9,625	17.0	51,666	51,666	25,405	49.2	108,332	35,030	32.3
한국해양대	56,666	46,333	16,000	34.5	51,666	61,999	61,760	99.6	108,332	77,760	71.8
한남대	56,666	44,033	38,300	87.0	63,166	75,799	72,163	95.2	119,832	110,463	92.2
합계	**679,992**	**580,014**	**376,525**	**64.9**	**649,992**	**749,970**	**677,319**	**90.3**	**1,329,984**	**1,053,845**	**79.2**

주: 1. 교부액 합계와 조정액 합계가 동일하여, 사업비 합계에서 교부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2. 사업단의 정식명칭은 '참고: 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참여사업단 현황' 표 참조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학생지원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간 예산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 사업계획 프로그램 운영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교협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집행 가능(「2025년도 CAMPUS Asia-AIMS 사업 예산집행 지침」, p.3.)

❑ 학생교류비는 교류학생 기준으로 지원되는 비용이므로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학생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합계 실집행률인 64.9%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에서 적은 수의 인원이 교류되었고, 실집행률이 높더라도 파견 또는 초청이 편중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상 학생교류는 파견 10명, 초청 10명 등 총 20명 규모로 국가 간 균형교류가 권장되고 있으나,[12] 강원대는 초청인원 부족, 숙명여대 및 연세대는 파견인원 부족, 동국대, 전남대, 한국해양대는 초청인원 및 파견인원 부족으로 총 규모인 20명에 미달하였고, 강원대, 부경대, 숙명여대, 전남대는 파견 또는 초청에 편중되어 균형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사업단별 학생교류 실적 >

(단위: %, 명)

구분	학생교류비 실집행률	초청	파견	합계	비고
강원대	72.1	6	11	17	• 총규모 미달 / 파견 편중
경상국립대	100.0	16	16	32	
계명대	97.3	18	13	31	
동국대(WISE캠)	57.2	7	8	15	• 총규모 미달
부경대	84.1	7	13	20	• 파견 편중
부산외대	67.9	11	10	21	
숙명여대	27.6	10	4	14	• 총규모 미달 / 초청 편중
연세대(미래캠)	56.7	11	8	19	• 총규모 미달
우송대	81.0	9(118)	14	23(118)	
전남대	17.0	6	2	8	• 총규모 미달 / 초청 편중
한국해양대	34.5	4	5	9	• 총규모 미달
한남대	87.0	12	13	25	
합계	**64.9**	117(118)	117	234(118)	

주: 괄호 안은 온라인 교류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2025년도 CAMPUS Asia-AIMS 사업 세부시행계획(안)」(2025.3.), p.7

❑ CAMPUS Asia-AIMS 사업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의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증진하고 유학생 유치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학문 분야에서 학부생이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교류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 간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생의 여행 및 체제비 등 학생교류비와 학교의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2025년 사업 수행 결과 초청 또는 파견으로 참여하는 학생 수가 당초 계획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국가 내에 친한·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우리나라 학생과 아세안 국가 학생이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진로 또는 취업의 탐색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학생교류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2023년 코로나-19 종식 후 안정기까지 아세안 국가로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파견인원 뿐만 아니라 초청인원이 적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파견 수요가 적은 경우 해당 사업비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분야 재검토 등을 통해 학생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참여인원 증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비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CAMPUS Asia-AIMS 사업에서는 거점사업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해당 거점사업단은 사업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업단과 학생 간 유기적 연대를 제고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 비교과 분야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25년 거점사업단에는 부경대, 연세대(미래캠), 한남대가 선정되어 체험, 견학, 특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음.

그러나 거점사업단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CAMPUS Asia-AIMS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사업단 중 부산외대, 부경대, 연세대(미래캠), 전남대, 한남대 등 5개 사업단만 참여하여 공동참여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동교육과정은 지역별 비교과 특색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세안 학생이 한국의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10개 학문분야의 학생이 교류하는 CAMPUS Asia-AIMS 사업의 내용과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다양한 사업단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학문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거점사업단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거점사업단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역 >

<table>
<tr><th>거점</th><th>공동참여</th><th colspan="2">운영 내용</th></tr>
<tr><td rowspan="2">부경대</td><td rowspan="2">부산외대,
연세대
(미래캠)
한남대</td><td colspan="2">• BUSAN CAMP "BUSAN_ASEAN A to Z“</td></tr>
<tr><td>[1박 2일, 32명]
- 부경대 박물관 관람
- 아세안 문화원 특강 및 전시 관람
-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견학
- 부산 아쿠아리움 견학
- 감천문화마을 관광</td><td>[1박 2일, 64명]
- 천연염색 체험
- 아세안 문화원 관람
- 요트 승선 체험
- 광안리 바다 플로깅
- UN 평화 기념관 관람</td></tr>
<tr><td rowspan="2">연세대
(미래캠)</td><td rowspan="2">부경대,
전남대</td><td colspan="2">• 원주 사회적 경제 캠프 & 아세안 전문가 특강 시리즈 'ASEAN Expert Lecture Series'</td></tr>
<tr><td>[1박 2일, 18명]
- 한지 테마파크 한지 문화 축제 체험
- 강원감영 전문가 해설 및 관람
- 뮤지엄산 관람</td><td>[1박 2일, 30명]
- 품앗이굿 배우기
- 떡메치기, 농악복 체험
- 국악 공연 관람
- 뮤지엄산 관람</td></tr>
<tr><td rowspan="2">한남대</td><td rowspan="2">부경대,
부산외대,
연세대
(미래캠)</td><td colspan="2">• 2025 HNU Insight Track: Culture&Industry Immersion Program</td></tr>
<tr><td colspan="2">[1박 2일, 42명]
- 대덕연구단지 기업탐방(항공우주연구원)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방문
- 대전 빵축제 관람</td></tr>
</table>

자료: 교육부

< 참고: 2025년 CAMPUS Asia-AIMS 사업 참여사업단 현황 >

구분	프로그램 주제	교류 분야	비고
강원대학교	다국간 문화와 융합하는 글로벌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농업, 경제학, 국제통상, 어학・문화	'21.5. 선정
경상국립대학교	아열대 농업생명과학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농업, 생물다양성	'19.3. 선정
계명대학교	아세안 3P 공동체 현지 언어・문화 기반 해외 주재 통상인력 양성 프로그램	어학・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21.5. 선정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4R 3S+(authentic Stay, Slow food, Smart tourism) 글로벌 호텔관광 특화교육	관광・요식	'19.3. 선정
부경대학교	한-아세안 언어・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한 관광-통상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국제통상, 어학・문화, 관광・요식, 농업	'19.3. 선정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인니 탄뎀형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어학・문화, 국제통상, 경제학	'19.3. 선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인재의 글로벌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 개발학	국제통상, 관광・요식	'19.3. 선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아세안경제공동체 사회적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MY VIP-WELCOME 프로그램	국제통상, 어학・문화	'19.3. 선정
우송대학교	파트너십 아시아 매니지먼트 스쿨	경제학, 관광・요식, 국제통상	'21.5. 선정
전남대학교	ASEAN 자원개발과 산업화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학, 농업, 국제통상	'21.5. 선정
한국해양대학교	ASEAN 해양물류・콜드체인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국제통상, 생물다양성, 해양과학	'21.5. 선정
한남대학교	JUUMP ABC 아시아 비즈니스 창의인력 양성프로그램	국제통상, 어학・문화	'21.5. 선정

자료: 교육부

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13)]

○ 교육부는 2025년에 신규 편성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사업단에 사업비를 추가 배분하고,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는 사업비를 추가 배분하지 않았으나,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은 단년도로 종료된 바 있으므로, 체계적 계획 없이 일회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단에 대해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4333-303)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등 총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을 연계하여 현지 대학의 수요 맞춤형 학과 개설·개편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13)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289억 6,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0%임.

< 2025년도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28,964	-	28,964	28,964	-	-	100.0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360	-	360	360	-	-	100.0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1,647	-	1,647	1,647	-	-	100.0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2,055	-	2,055	2,055	-	-	100.0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14,426	-	14,426	14,426	-	-	100.0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	4,141	-	4,141	4,141	-	-	100.0
○ UNESCO UNITWIN 지원 사업	2,797	-	2,797	2,797	-	-	100.0
○ 브릿지 2단계 사업	1,865	-	1,865	1,865	-	-	100.0
○ 유엔사회개발 연구소 지원	673	-	673	673	-	-	100.0
○ IFFEd	1,000	-	1,000	1,000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개도국 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으로 수행됨.

2025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학과 등의 구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필수과제'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택과제'가 수행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해외 경험 청년을 협력대학에 파견하거나 국내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청년인턴 활용', 협력대학 인재를 선발하여 사전 교육 후 국내 교육과정 및 산업체 실습 등을 지원하는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이 수행되었음.

2025년 예산은 총 144억 2,600만원으로, 필수과제 및 선택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단 지원 4억원, 기존 사업단 계속지원 133억 2,800만원(청년인턴 활용 비용 포함),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3억 1,800만원, 사업평가・관리비 3억 8,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목적	• 국내 대학과 개도국 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사업내용	• 과제수행(계속) - 필수과제: 협력 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학부, 단과 대학 포함) 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선택과제: 수원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청년인턴 활용(2025년 신규): 해외 경험 청년을 청년인턴 등의 형태로 수원국 협력대학에 파견하거나 국내 사업단의 교육개발협력 업무 지원에 활용 •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2025년 신규): 협력대학 인재를 선발하여 현지 사전 한국어 교육 실시 후 국내 사업단에 초청하여 국내 교육과정 경험 및 기업탐방, 산업체 실습 등 지원
참여규모	• 38개 사업단(국내 주관대학 및 협력국 협력대학으로 구성)
사업수행	• 한국연구재단(출연)
예산	• 총 14,426백만원 - 신규 사업단 지원: 400백만원(4개교×100백만원) - 기존 사업단 계속지원: 13,328백만원 (34개교x392백만원) * 청년인턴 활용 비용 포함 -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318백만원 (60명×5.3백만원) - 사업관리비 : 380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의 지원기간은 유형에 따라 5년, 6년, 7년으로 구분되며, 선정된 사업단은 지원기간 내 단계별 단계평가, 지원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지원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경과시 사후평가를 받게 됨.

평가 후에는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단계평가의 경우 미흡(C) 이하 등급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차등 분배함.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지원 및 평가 개요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대학</th><th>전문대학</th></tr>
<tr><td rowspan="2">지원유형</td><td rowspan="2">신규</td><td colspan="2">확산</td><td rowspan="2">신규</td></tr>
<tr><td>수원국
변경 시</td><td>수원국 협력대학
변경 시</td></tr>
<tr><td>지원기간</td><td colspan="2">7년
(3+2+2)</td><td>6년
(2+2+2)</td><td>5년
(2+2+1)</td></tr>
<tr><td>지원예산</td><td colspan="2">1차년도 1억원 이내,
그 후 연 4억원 내외</td><td>연 4억원 내외</td><td>1차년도 1억원 이내,
그 후 연 4억원 내외</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지원기간 7년
(3+2+2)</th><th>지원기간 6년
(2+2+2)</th><th>지원기간 5년
(2+2+1)</th><th>후속 조치</th></tr>
<tr><td>단계
평가</td><td>4차/6차년도
진입 전</td><td>3차/5차년도
진입 전</td><td>3차/5차년도
진입 전</td><td rowspan="2">• 미흡(C) 등급, 불량(D) 등급 사업단의 사업비를 각각 10%, 20% 이내 삭감 조정하여,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차등 분배
• 불량(D) 등급 사업단은 다음 단계 사업 추진 제한 검토
* 2023년 및 2024년 평가결과 사업비 삭감 대상인 미흡(C) 등급 이하 사업단이 없었으나,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사업비 추가 지급</td></tr>
<tr><td colspan="3">•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
<table>
<tr><th>최우수
(S)</th><th>우수
(A)</th><th>보통
(B)</th><th>미흡
(C)</th><th>불량
(D)</th></tr>
<tr><td>90점 이상</td><td>90점미만
~80점이상</td><td>80점미만
~70점이상</td><td>70점미만
~60점이상</td><td>60점
미만</td></tr>
</table></td></tr>
<tr><td>최종
평가</td><td>7차년도 종료 후</td><td>6차년도 종료 후</td><td>5차년도 종료 후</td><td>• 평가결과 환류 조치(최종보고서 수정・보완)
• 불량(D) 등급 사업단의 경우, 별도 제한조치 검토</td></tr>
<tr><td colspan="3">•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
<table>
<tr><th>최우수
(S)</th><th>우수
(A)</th><th>보통
(B)</th><th>미흡
(C)</th><th>불량
(D)</th></tr>
<tr><td>90점 이상</td><td>90점미만
~80점이상</td><td>80점미만
~70점이상</td><td>70점미만
~60점이상</td><td>60점
미만</td></tr>
</table></td></tr>
<tr><td>사후
평가</td><td colspan="3">•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약 2년~4년)이 경과된 종료 사업 중 국가와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
<table>
<tr><th>평가 기준</th><th>점수</th></tr>
<tr><td>매우 성공적</td><td>18점 이상</td></tr>
<tr><td>성공적</td><td>14점 이상~18점 미만</td></tr>
<tr><td>부분 성공적</td><td>10점 이상~14점 미만</td></tr>
<tr><td>미흡</td><td>10점 미만</td></tr>
</table></td><td>• 평가결과와 성공 및 한계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 사항, 후속 사업 등 제안</td></tr>
</tabl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에는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이 있었으나(최우수(S) 등급 2개, 우수(A) 등급 9개) 해당 사업단에 사업비가 추가 배분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5년에 사업단 당 지원 사업비가 삭

감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단계평가 결과 미흡(C) 등급 이하 사업단이 없어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사업비를 추가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과 비교할 때, 2025년 기존 사업단 계속지원 사업비는 각 사업단 기준으로 감소(4억 200만원 → 3억 9,200만원)하였으나, 신규로 편성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예산 3억 1,800만원이 포함된 계속지원 사업비 총액은 증가(104억 3,800만원 → 136억 4,600만원)하였음.

< 2023~2025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구분		2023	2024	2025
전체		9,038백만원	11,688백만원	14,426백만원
사업지원	신규	• 신규 지원(일반) 800백만원 - 1개 사업단×400백만원 - 4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 지원(전문대) : 200백만원 - 2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지원(일반) 600백만원 - 6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지원(전문대) 200백만원 - 2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지원(일반) 300백만원 - 3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지원(전문대) 100백만원 - 1개 사업단×100백만원
	계속 및 후속	• 계속지원 7,638백만원 - 19개 사업단×402백만원 • 후속지원 100백만원 - 1개 사업단×100백만원	• 계속지원 **10,438백만원** - 26개 사업단×**402백만원** • 후속지원 100백만원 - 1개 사업단×100백만원	• 계속지원 **13,646백만원** - 34개 사업단×**392백만원** (청년인턴 활용 포함) - 60명×5.3백만원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 사업관리 300백만원	• 사업관리 350백만원	• 사업관리 380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단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및 2024년에 미흡(C) 등급 이하 사업단이 없었으나,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사업비가 추가 배분되었는데, 이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지급하여 사업 수행에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단계평가 결과 및 추가 지급 내역 >

(단위: 개, 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사업단 수	추가 배분액	사업단 수	추가 배분액	사업단 수	추가 배분액
S등급	0	0	0	0	2	0
A등급	1	900	1	1,150	9	0
	2	830	1	1,100		
	1	765	1	1,075		
B등급	3	0	4	0	4	0
C등급 이하	0	0	0	0	0	0
합계	**7**	**3,325**	**7**	**3,325**	**15**	**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2025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계속지원 사업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사업단에 대해 추가 배분되었고, 우수(A) 등급 이상 사업단에 대해서는 추가 배분되지 않았음.

< 2025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예산 사업단별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선정 연도	협력 국가명	국내 주관대학명	평가 결과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본	취업	합계	기본		취업	합계		
								과제	인턴				
계속	2020	스리랑카	성균관대	우수(A)	392.0	0.0	392.0	392.0	0.0	0.0	392.0	0.0	0.0
		캄보디아	덕성여대	우수(A)	392.0	0.0	392.0	387.3	0.0	0.0	387.3	4.7	0.0
		페루	서울과학기술대	우수(A)	392.0	0.0	392.0	363.3	0.0	0.0	363.3	28.7	0.0
		라오스	인제대	우수(A)	392.0	0.0	392.0	358.8	0.0	0.0	358.8	33.2	0.0
		탄자니아	한양대	우수(A)	392.0	0.0	392.0	370.1	0.0	0.0	370.1	21.9	0.0
		몽골	공주대	우수(A)	392.0	0.0	392.0	349.8	7.2	0.0	357.0	35.0	0.0
	2021	네팔	창원대	우수(A)	392.0	0.0	392.0	392.0	0.0	0.0	392.0	0.0	0.0
		우즈베키스탄	충남대	-	392.0	0.0	392.0	321.5	0.0	0.0	321.5	70.5	0.0
		캄보디아	서울시립대	-	392.0	48.5	440.5	380.9	0.0	48.5	429.4	11.1	0.0
		베트남	대구한의대	-	392.0	0.0	392.0	324.2	24.0	0.0	348.2	43.8	0.0
	2022	우즈베키스탄	고려대	-	392.0	27.5	419.5	389.2	2.8	27.5	419.5	0.0	0.0
		이집트	한국기술교육대	-	392.0	0.0	392.0	156.6	12.0	0.0	168.6	39.2	184.2
		방글라데시	공주대	우수(A)	392.0	0.0	392.0	352.1	0.0	0.0	352.1	39.9	0.0
		네팔	선문대	보통(B)	392.0	0.0	392.0	326.1	0.0	0.0	326.1	56.6	9.4
		우즈베키스탄	한국교통대	보통(B)	392.0	0.0	392.0	377.0	14.6	0.0	391.6	0.4	0.0
		스리랑카	한국해양대	보통(B)	392.0	0.0	392.0	378.4	13.3	0.0	391.7	0.3	0.0
		키르기스스탄	경희대	최우수(S)	392.0	0.0	392.0	277.0	3.9	0.0	280.9	111.1	0.0
		인도네시아	대구보건대	-	392.0	0.0	392.0	365.6	19.8	0.0	385.4	6.6	0.0
		라오스	군장대	-	392.0	0.0	392.0	291.4	0.0	0.0	291.4	39.2	61.4
	2023	인도네시아	서강대	최우수(S)	392.0	0.0	392.0	249.5	0.0	0.0	249.5	142.5	0.0
		인도네시아	경상국립대	-	392.0	48.5	440.5	344.1	21.2	48.5	413.8	26.7	0.0
		베트남	전북대	-	392.0	0.0	392.0	365.8	15.2	0.0	381.0	11.0	0.0
		라오스	서울대	-	392.0	0.0	392.0	383.5	8.4	0.0	391.9	0.0	0.1
		카자흐스탄	서울과학기술대	-	392.0	48.0	440.0	270.6	18.0	48.0	336.6	103.4	0.0
		필리핀	명지전문대	우수(A)	392.0	48.5	440.5	390.7	0.0	48.5	439.2	1.3	0.0
		키르기스스탄	인하공업전문대	보통(B)	392.0	48.5	440.5	303.0	24.0	48.5	375.5	65.0	0.0
	2024	베트남	전남대	-	392.0	48.5	440.5	133.1	26.9	48.5	208.5	232.0	0.0
		스리랑카	성균관대	-	392.0	0.0	392.0	194.2	19.5	0.0	213.7	178.3	0.0
		키르기스스탄	계명대	-	392.0	0.0	392.0	321.4	0.0	0.0	321.4	70.6	0.0
		네팔	인하대	-	392.0	0.0	392.0	246.5	13.3	0.0	259.8	132.2	0.0
		우즈베키스탄	한경국립대	-	392.0	0.0	392.0	312.1	0.0	0.0	312.1	79.9	0.0
		캄보디아	덕성여대	-	392.0	0.0	392.0	340.1	36.0	0.0	376.1	15.9	0.0
		라오스	한국농수산대	-	392.0	0.0	392.0	355.1	24.8	0.0	380.0	12.0	0.0
		우즈베키스탄	계명문화대	-	392.0	0.0	392.0	353.7	17.1	0.0	370.8	21.2	0.0
신규	2025	에티오피아	국립순천대	-	100.0	0.0	100.0	50.2	0.0	0.0	50.2	49.8	0.0
		몽골	을지대	-	100.0	0.0	100.0	94.6	0.0	0.0	94.6	5.4	0.0
		페루	인하대	-	100.0	0.0	100.0	99.7	0.0	0.0	99.7	0.3	0.0
		베트남	울산과학대	-	100.0	0.0	100.0	100.0	0.0	0.0	100.0	0.0	0.0
합계					13,728.0	318.0	14,046.0	11,461.2	322.0	318.0	12,101.2	1,689.7	255.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사업비 추가 배분과 관련하여 신규로 추진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동 사업은 ODA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ODA 사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취·창업 및 지역 정주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협력국에서 선발된 인원이 총 3~4개월 동안, 협력대학에서 사전 언어교육 및 기본교육을 받고, 국내 주관대학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후 국내 관련 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 및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2025년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추진배경	• 수원국 학생의 직무교육 및 실습 기회 부족과 국내 풍부한 인프라의 적극 활용 미흡 개선
추진내용	• 수원국 학생의 현지 한국어교육 및 국내 현장실습 지원 - 수원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 대학 인재를 선발한 후, 현지 사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사업단에 초청하여 국내 교육과정 경험 및 기업탐방, 산업체 실습 등 지원
예산	• 318백만원(60명×5.3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5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안)」(2025.2.), 관계부처 합동, 「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추진방안」(2024.8.7.), 관계부처 합동,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2024.8.7.)을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것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사업은 사전 언어교육, 기본교육, 현장실습교육 및 체험

등 별도의 과정 구성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단 34개 중 20.6%인 7개 사업단만 선발되어 총 75명에 대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또한 2026년에는 사업단 당 지원 사업비가 삭감(3억 9,200만원 → 3억 7,400만원)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음.

< 2025년 사업단별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수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명)

선정 연도	협력 국가명	국내 주관대학명	집행액	선발 인원	운영기간		언어교육 및 기본교육	국내 실습
2021	캄보디아	서울시립대	48.5	10	4개월	1.사전 언어교육(3개월) 2.현지기본교육(4일) 3.국내기본교육(5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11일)	프놈펜 왕립대학교	8개소
2022	우즈베키스탄	고려대	27.5	6	3개월	1.사전 언어교육(2개월) 2.현지기본교육(2주) 3.국내기본교육(4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2주)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교	3개소
2023	인도네시아	경상국립대	48.5	11	3개월	1.사전 언어교육(2개월) 2.현지기본교육(2일) 3.국내기본교육(1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3주)	보고르 농업대학교	5개소
	카자흐스탄	서울과학기술대	48.0	10	3.5개월	1.사전 언어교육(2개월) 2.현지기본교육(15일) 3.국내기본교육(15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15일)	크즐오르다 주립대학교	1개소
	필리핀	명지전문대	48.5	10	4개월	1.사전 언어교육(약 3개월) 3.국내기본교육(2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2주)	바타안 페닌슐라 주립대학교	8개소
	키르기스스탄	인하공업전문대	48.5	15	4개월	1.사전 언어교육(2개월) 2.현지기본교육(1개월) 3.국내기본교육(1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2주)	키르기즈 한국대학교	4개소
2024	베트남	전남대	48.5	13	3개월	1.사전 언어교육(1.6개월) 2.현지기본교육(1주) 3.국내기본교육(2.5주) 4.현장실습교육및산업체방문(1.5주)	베트남국립 농업대학교	4개소
합계			318.0	7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개도국 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에 따라 5년, 6년, 7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 단계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받은 사업단의 주관대학인 서강대학교는 다수의 대학과 사업을 추진 중인 단계에서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 지원을 제안한 바 있고,[14] 우수(A) 등급을 받은 사업단의 주관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주대학교에서는 계속지원 사업비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유사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15]

예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도입하고 중단하는 것보다,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단에 대해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예

14) 서강대학교, 「2025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인도네시아 자바 및 북부발리지역의 화학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역사회 공헌 -」(2026.3.), p.36 참조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일 동안 교수 2명, 학생 3명을 초청하여 협력 활동 및 현장 실습교육 실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페루 국립공과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및 지역 사회 교육 -」(2026.3.), pp.47~50 참조),
공주대학교: 4주 동안 학생 3명을 초청하여 학교 및 현장에서 현장 실습 수행 (국립공주대학교, 「2025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몽골보존과학전공교육협력사업 -」(2026.3.), p.20 참조)

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존 사업에서 수행된 초청프로그램은 수원국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대학 교수·학생의 학술교류에 집중하는 반면, 신규로 편성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은 산업체 실습을 통한 '국내 정주 및 취업'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외국인 인재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국가적 핵심 과제를 반영하여 초청연수를 취업 연계로 확장한 것으로,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독립된 예산으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약 4개월 동안의 취업연계초청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연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예산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추진되어 단년도로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독립된 사업인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4)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16)]

> ○ 교육부는 최근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하락(2023년 72.9% → 2024년 58.7% → 2025년 42.8%)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실적과 향후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7011-253)은 교육부 정책기획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임.[1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46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억 7,800만원과 이·전용 등 △26억 3,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억 300만원으로, 이 중 19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2.8%임.

---

16) 문의: 02-6788-5188

17)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 총액대상 기본경비(7011-203)와 그 외의 운영경비인 총액비대상 기본경비(7011-253)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액대상이 되는 기본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으로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일부경비를 말하며, 총액비대상이 되는 기본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건설비, 유형자산을 말함.

< 2025년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4,660	278	Δ2,635	2,303	1,996	245	61	42.8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최저 42.8%에서 최고 85.7% 수준으로 나타나 기본경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음.

특히 동 사업의 예산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전년 대비 25.6%, 44.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집행률은 각각 58.7%, 42.8%로 하락함.

< 최근 4년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2,512	2,117	531	△297	2,351	1,815	85.7	77.2	524	13
2023	2,561	2,561	524	△809	2,276	1,868	72.9	82	228	180
2024	3,224	3,224	228	△1,254	2,198	1,893	58.7	86.1	278	27
2025	4,660	4,660	278	△2,635	2,303	1,996	42.8	86.7	10.6	61

자료 : 교육부

❑ 일반적으로 기본경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적·반복적 경비로서 집행 수요를 비교적 예측하기 용이한 예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년 증액 편성과 함께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8)]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전체 업무를 총괄·조정·지원하는 부서로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현안이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에 개별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기본경비를 정책기획관에 통합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 예산액 기준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이·전용에 있는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이 다른 국의 기본경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4년간 이·전용 규모가 2022년 2억 9,700만원, 2023년 8억 900만원, 2024년 12억 5,400만원, 2025년 26억 3,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정책기획관에 편성한 후 연도 중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방식이 지속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다른 국의 실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음.

---

18)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예산은 2026년도에도 전년에 비해 증액(9,600만원)되었음.

❑ 또한, 다른 국으로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이·전용 수요를 반영하더라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이 최근 4년간 77.2%에서 86.7%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기본경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고등평생정책실

<일반회계>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9)]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비율이 19.6%이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의 미사용률이 28.1%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조기 모니터링, 사용 독려, 미사용 지원금 회수·재배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상의 제약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일반인 등의 역량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1인당 35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하는 사업으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9) 문의: 02-6788-5193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285억 6,100만원으로, 284억 8,000만원을 집행(지방자치단체 교부액)하고 8,2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9.7%임.

< 2025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8,561	-	28,561	28,480	-	81	99.7%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0,948	-	21,042	20,895	-	53	99.3%
○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764		1,764	1,760		4	99.8%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3,001	-	3,001	3,001	-	-	100%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646	-	2,646	2,646	-	-	100%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202	-	202	178	-	24	88.1%

나) 검토의견: 바우처 미집행 금액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이용의 제약요인 점검 필요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성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3년까지 출연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024년부터 출연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 총 253억 5,8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로 편성되었음.

❑ 25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신청자가 실제 사용한 내역을 보면, 내역사업인 ‘일반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실집행률이 80%로 나타나고 있어 2024년 회계연도에 비해 실집행률이 10.9%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72.5%,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67.6%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0,595	20,032	97.2	26,219	23,090	88.1	28,561	22,978	80.4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7,830	17,627	98.8	21,042	19,130	90.9	20,948	16,764	80.0
· 사업출연금 (350-02)	17,830	17,627	98.8	17,955	17,500	97.5	-	-	-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	-	-	3,087	1,630	52.8	20,948	16,764	80.0
-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	-	-	-	-	1,764	1,279	72.5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1,650	1,639	99.3	2,992	2,953	68.7	3,001	2,967	98.8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915	566	61.9	1,985	813	40.9	2,646	1,789	67.6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	200	200	100.0	200	193	96.5	202	178	88.1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이 예산의 실제 집행[20]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율이 19.6%로 나타나는 등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기인함.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계획대비 참여 인원의 경우 2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용권 소진율 90%를 반영하여 일반·디지털 평생교육바우처는 총 9만 5,000명, 노인 평생교육바우처는 8,000명, 장애인 평생

20)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원인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에 실집행금액은 지원인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바우처를 지급 받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교부액이 아님.

교육바우처는 1만 2,000명을 예정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①일반·디지털은 8만 7,281명, ②노인 평생바우처는 7,230명, ③장애인의 경우는 1만 68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편성인원 및 지원인원>

구분	예산편성 기준인원	실제 지원인원	계획 대비 감소인원	계획 대비 지원률
일반 · 디지털	95,000명	87,281명	7,719명	91.9%
노인	8,000명	7,230명	770명	90.4%
장애인	12,000명	10,687명	1,313명	89.1%
계	115,000명	105,198명	9,802명	91.4%

자료: 교육부

❑ 2025년의 경우,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디지털 및 노인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된 첫해였다는 점에서 수요예측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실제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실제 지원 인원의 계획 대비 지원률이 91.4%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지급받은 바우처를 실제 사용한 경우)은 이 보다 더 낮은 80%로 이용권 배정 이후의 실사용 여부에 대한 집행관리가 충분하

지 못함을 알 수 있음.

이를 각 바우처별로 보면, 일반·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미사용률이 18.3%, 노인 평생교육바우처는 23.4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는 28.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이 더욱 저조한 상황임.

<내역사업별 바우처 금액 미사용 비율>

구분	지원인원(A)(명)	미사용자(B)(명)	비율(B/A)(%)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87,281	15,959	18.3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7,230	1,695	23.4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10,687	3,001	28.1
계	105,198	20,655	19.6

자료: 교육부

❑ 한편, 지역별 미사용률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일반·디지털 이용권은 세종 13.1%에서 제주 25.4%까지 차이가 발생하였고, 노인 이용권은 전북 13.4%에서 전남 31.8%까지, 장애인 이용권은 세종 9.8%에서 전남 42.3%까지 큰 격차가 나타났음. 이는 미사용 문제가 이용자 개인의 학습 의지에만 기인한다기보다 지역별 사용기관 및 적합한 강좌의 부족, 교통·이동상의 제약, 온라인 신청·결제의 어려움 등 이용 여건의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5년 평생교육이용권 시도별 내역사업별 집행내역[21)]>

(단위: 백만원, 명, %)

내역사업	지역	교부액(국비)	국비		지원현황		
			실집행액	실집행률	지원인원(A)	미사용자(B)	비율(B/A)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디지털* 포함)	서울	3,924	3,233	(82.4)	16,004	2,263	(14.1)
	부산	1,363	1,158	(85.0)	5,998	1,068	(17.8)
	대구	969	806	(83.1)	4,224	761	(18.0)
	인천	1,227	1,118	(91.0)	5,597	890	(15.9)
	광주	566	495	(87.5)	2,542	440	(17.3)
	대전	585	477	(81.5)	2,449	440	(18.0)
	울산	442	323	(73.0)	1,887	477	(25.3)
	세종	90	82	(90.7)	397	52	(13.1)
	경기	5,498	4,039	(73.5)	20,823	3,670	(17.6)
	강원	630	479	(76.0	2,675	600	(22.4)
	충북	650	497	(76.4)	2,677	534	(19.9)
	충남	866	777	(89.7)	4,078	793	(19.4)
	전북	716	703	(98.2)	3,409	492	(14.4)
	전남	739	501	(67.8)	2,799	645	(23.0)
	경북	1,052	716	(68.1)	3,967	925	(23.3)
	경남	1,312	1,102	(84.1)	6,253	1,528	(24.4)
	제주	266	258	(97.0)	1,502	381	(25.4)
합계		20,895	16,764	(80.2)	87,281	15,959	(18.3)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노인)	서울	330	239	(72.4)	1,348	324	(24.0)
	부산	115	84	(73.0)	477	111	(23.3)
	대구	82	59	(72.0)	308	45	(14.6)
	인천	103	95	(92.2)	468	68	(14.5)
	광주	48	44	(91.7)	215	30	(14.0)
	대전	49	36	(73.5)	202	48	(23.8)
	울산	37	31	(83.8)	157	23	(14.6)
	세종	7	6	(85.7)	31	6	(19.4)
	경기	463	300	(64.8)	1,745	440	(25.2)
	강원	53	31	(58.5)	214	66	(30.8)
	충북	55	38	(69.1)	235	62	(26.4)
	충남	73	49	(67.1)	301	88	(29.2)
	전북	61	60	(98.4)	284	38	(13.4)
	전남	62	36	(58.1)	242	77	(31.8)
	경북	88	50	(56.8)	309	91	(29.4)
	경남	111	96	(86.5)	554	135	(24.4)
	제주	23	22	(95.7)	140	43	(30.7)
합계		1,760	1,276	(72.5)	7,230	1,695	(23.4)

21) 해당 집행내역은 `26.7. 사업완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금	서울	391	309	79.0	1,596	259	(16.2)
	부산	176	102	58.1	707	265	(37.5)
	대구	131	93	71.2	534	122	(22.8)
	인천	152	103	67.9	588	158	(26.9)
	광주	69	68	98.8	315	30	(9.5)
	대전	71	60	84.3	396	137	(34.6)
	울산	51	25	49.8	208	78	(37.5)
	세종	13	11	88.1	51	5	(9.8)
	경기	583	391	67.0	2,210	548	(24.8)
	강원	102	55	53.6	422	171	(40.5)
	충북	97	62	63.9	430	158	(36.7)
	충남	135	91	67.5	619	241	(38.9)
	전북	132	98	74.1	450	50	(11.1)
	전남	138	67	48.7	485	205	(42.3)
	경북	180	104	57.8	718	281	(39.1)
	경남	189	124	65.5	778	242	(31.1)
	제주	36	26	72.1	180	51	(28.3)
합계		37,866	33,528	67.6	10,687	3,001	(28.1)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미사용자에 대하여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정 기간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의 미사용 지원금을 회수하여 추가 대상자에게 재배분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집행관리 방안 >

① 선정포기 접수	→	② 사용 촉진·독려 추진	→	(신규) ③ 미사용 지원금 회수 ▸ 추가 지원 추진
이용권 선정 후 미희망자 선정 포기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 조정		미사용자 대상 모니터링 및 문자·사용 독려 전화 등을 통한 사용 독려		미사용 지원금 회수 후 추가 대상자 재선정 및 지원 실시

※ '26.8월 중 미사용 지원금 사용 중지 및 회수 재원 활용 추가 지원 예정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시 미사용자 회수 사전 안내

❑ 다만, 8월부터 미사용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자가 강좌를 탐색하고 수강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배분된 지원금이 다시 미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자·전화 등을 통한 사용 독려만으로는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한 미사용 원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용권 배정 후 조기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대상자 명부를 사전에 마련하여 추가 선정·재배분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초 사용률, 미사용률, 지원금 소진율, 강좌 이수율 및 회수 재원의 재배분 실적 등을 별도의 집행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미사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모니터링, 사용 독려, 미사용 지원금 회수·재배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이용상의 제약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자체수입과 전기이월금을 현실성 있게 추계하도록 관리하여 이월결손금과 불필요한 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의 통합 지원 및 구축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52억 9,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나, 자체수입이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된 172억 5,200만원에서 139억 1,000만원으로 33억 4,2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	5,298	5,298	-	-	100
○ 인건비	6,978	-	6,978	6,978	-	-	100
○ 경상비	3,645		3,645	3,552		93	97.4
○ 사업비	11,927	-	11,927	10,904	-	1,023	91.4
○ 자체수입	△17,252	-	△17,252	△13,910	-	△3,342	-

나) 검토의견 :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결손 방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2]은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수지차 보전기관[23]으로 기관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만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자체수입의 정확한 추계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진흥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을 172억 5,2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자체수입은 139억 1,000만원에 그쳐 약 33억 4,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특히, 자체수입에 포함되는 전기이월 결산잉여금[24]을 전년도와 동일한 35억 9,600만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제 전기이월 결산잉여금은 5억 6,200만원으로 30억 3,4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

22) 교육부 소관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3) 공공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구분	기관수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	37	36	-	-	15	21	1
보조	25	21	-	1	2	18	4
합계	62	57	-	1	17	39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4) 전기이월 결산잉여금이란 전년도(N-1) 결산 결과,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차년도(N)에 이월해주어야 하는 금액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예산(A)	2025결산(B) 실집행액	집행잔액 (A-B)	실집행률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5,298	0	100
○ 인건비	6,978	6,978	0	100
○ 경상비	3,645	3,552	93	97.4
○ 사업비	11,927	10,904	1,023	91.4
○ 자체수입	△17,252	△13,910	△3,342	-
-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12,568	125	-
-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496	81	-
- 이월결산잉여금	△3,596	△562	3,034	-
- 기타수입	△386	△284	102	-

자료 : 교육부

❑ 이에 진흥원은 자체수입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발생한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한도대출의 형식으로 총 35억원의 한도 중 7억 2,700만원을 차입하였음.

비록 진흥원의 실제 한도대출 사용액은 7억 2,700만원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결산잉여금의 규모는 총 △22억 2,600만원으로, 결손이 발생함..

- 참고로, 결산잉여금 △22억 2,600만원은 2025년 결산 결과 실제 지출액인 총 214억 3,400만원(인건비+경상비+사업비)과 실제 수입액(출연금+자체수입)인 총 192억 800만원의 차이임.

<결산잉여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실제 지출액(A)		실제 수입액(B)		결산잉여금(B-A)
인건비	6,978	출연금	5,298	△2,226
경상비	3,552	자체수입	13,910	
		학점은행제 수수료	12,568	
		독학학위제 수수료	496	
사업비	10,904	이월결산잉여금	562	
		기타수입	284	
계	21,434(A)	계	19,208(B)	

자료: 교육부

❑ 진흥원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결산잉여금이 부족해져 차년도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차입이나 다음연도 예산의 활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이월금을 현실화화여 반영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부의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봄.

<2024~2026년 자체수입 예산 및 전기이월금 산정 방식>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자체수입 예산	산출 방식
2024년도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 '23년 예산(12,035백만원) +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5.46%, 658백만원)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기타수입	386	- 최근 5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전기이월금	3,596	- **최근 3개년 결산잉여금 평균액**(2,859백만원) + 전전기이월금(737백만원)
합계		17,252	
2025년도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 전년동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 전년동
	기타수입	386	- 전년동
	전기이월금	3,596	- 전년동
합계		17,252	
2026년도	학점은행제 수수료	12,169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독학학위제 수험료	533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기타수입	382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전기이월금	1,367	- **최근 3개년 결산잉여금 평균액 반영**
합계		14,451	

자료: 교육부

3)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25]

○ 교육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실제 기본경비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반복적인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도 중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7011-267)은 인재정책기획관 소관사업 및 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7억 7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000만원과 이·전용 등 6억 7,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9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7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5.5%임.

25) 문의: 02-6788-5188

< 2025년도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	707	40	673	1,419	929	142	347	65.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2022년 131.7%, 2023년 148.2%, 2024년 166.4%, 2025년 131.4%로 최근 4년간 모두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는 최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연도 중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324	324	27	96	447	427	131.7	95.5	19	-
2023	422	422	19	262	703	625	148.2	88.9	76	2
2024	658	658	76	401	1,135	1,095	166.4	96.4	40	-
2025	707	707	40	673	1,419	929	131.4	65.5	142	347

자료 : 교육부

❑ 실제 최근 4년간 이·전용 규모는 2022년 9,600만원, 2023년 2억 6,200만원, 2024년 4억 100만원, 2025년 6억 7,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의 실제 집행 수요가 당초 편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복적인 이·전용에 의존하는 예산 운용은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 인재양성 관련 회의체 운영, 2024년과 2025년에는 교육부 조직개편[26]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추가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를 이·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에는 이·전용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예산현액이 14억 1,900만원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액은 9억 2,900만원에 그쳐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65.5%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월액 1억 4,200만원과 불용액 3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음.[27]

이는 실제 집행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이·

26) '24.1.1. 대학규제혁신국 폐지 → 인재정책기획관으로 업무 이관 / '25.1.1. 의대교육지원관 신설 →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에서 의대교육지원관 기본경비를 같이 사용

27) 교육부는 2025년에는 의대교육지원관이 신설되었으나, 별도 기본경비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에서 의대교육지원관 기본경비도 지출하였는데, 의정갈등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사전에 예측한 소요가 변동되어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입장임.

전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도 중 예산 조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실제 기본경비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반복적인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연도 중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8]

○ 의대교육혁신 지원 세부내역사업은 의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전략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는 내역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수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서 등록률,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바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결과가 저조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 사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28) 문의: 02-6788-5189

형,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등 총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조 9,410억 5,000만원으로, 1조 9,335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75억 3,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6%임.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001,000	1,941,000	50	1,941,050	1,933,519	-	7,531	99.6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1,704,651	1,644,651	130	1,644,781	1,637,250	-	7,531	99.5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01	201,001	△30	200,971	200,971	-	-	100.0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00	21,000	△50	20,950	20,950	-	-	100.0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00	14,000	-	14,000	14,000	-	-	10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00	25,800	-	25,800	25,800	-	-	100.0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5,998	5,998	-	5,998	5,998	-	-	100.0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14,200	14,200	-	14,200	14,200	-	-	100.0
○ 마이스터대 지원	4,750	4,750	-	4,750	4,750	-	-	100.0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9,600	9,600	-	9,600	9,600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필요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사업에 편성된 9개의 내역사업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은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사업,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라 함)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되었고,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등 8개 내역사업은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집행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관리기관에 예산을 교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참여 대학 지원비, 사업관리·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예산현액 1조 9,410억 5,000만원 중 1조 9,335억 1,900만원을 교부하였고, 사업시행주체는 2025년도말 기준으로 교부액의 32.4%인 6,26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2026년 2월말 기준으로는[29] 교부액의 72.7%인 1조 4,065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2025년 예산 집행실적은 사업별로 편차가 있는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 중 의대교육혁신 지원(지자체) 사업과 의대교육혁신 지원(민간)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6년 2월말 기준으로도 각각 9.3%, 35.7%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교부액 (A)	2025.12.31. 기준		2026.2.28. 기준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941,050	1,933,519	627,552	32.4	1,406,957	72.7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644,781	1,637,250	463,349	28.3	1,141,295	69.7
- 앵커		1,201,320	368,150	30.6	872,708	72.6
- 글로컬대학		376,870	92,232	24.5	259,214	68.8
- 의대교육혁신 지원(지자체)		52,800	713	1.4	4,893	9.3
- 의대교육혁신 지원(민간)		1,130	219	19.4	403	35.7
- 연구재단		5,130	2,035	39.7	4,077	79.5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0,971	200,971	110,517	55.0	183,581	91.4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0,950	20,950	15,525	74.1	20,907	99.8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14,000	14,000	3,655	26.1	5,943	42.5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00	25,800	13,902	53.9	23,542	91.2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5,998	5,998	3,773	62.9	5,739	95.7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14,200	14,200	7,104	50.0	12,604	88.8
○ 마이스터대 지원	4,750	4,750	2,652	55.8	4,749	100.0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9,600	9,600	7,077	73.7	8,597	89.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된 후 복귀 학생에 대한 차질없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의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5년 6월부터 의대교육혁신 사업에 착수하였고,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 평가(2025년 7~8월)를 거쳐 각 지자체로 지원액이 통보(2025년 9월)되었으며,

  2차례에 나누어 교부(2025년 10월 50%, 2026년 4월 50%)된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2025년 6월~2026년 8월) 각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집행 중이나, 지역 의료기관 실습, 강의실·실습실 리모델링, 기자재 도입 등이 포함되어 방학 기간(2026년 6~8월)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의대 학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 또한 수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2025년 4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 후[30] 의대생 복귀 등이 이루어진 후에,[31]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25년 9월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수행된 내용은, 동 사업이 편성된 내역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

30) 교육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2025.4.17.)
31) 의협신문, 「복귀 선언 의대생, 그때도 지금도 "교육 제대로 받겠다"」(2025.7.14.)

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대교육혁신 지원(민간) 사업은, 의학교육의 ① 교육과정, ② 학습지원, ② 평가 등의 분야에서 개선을 위해 '① 통합 6년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 공유 교육과정 플랫폼 구축·운영, ③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평가지원, 포트폴리오 평가방식 개발·시범운영' 등을 수행하는 것임.

< 의대교육혁신 지원(민간) 사업 주요내용 >

구분	내용
① 교육과정	• 통합 6년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추진목적)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역량 등 미래지향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혁신 필요 - (추진내용) 통합 6년제 교육과정에서 학생 진로 탐색 등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② 학습지원	• 공유 교육과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추진목적) 전국 의과대학이 공동 활용하는 공유 교육과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여, 의대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 구축 - (추진내용) 의과대학 간 교육격차 해소와 콘텐츠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임상·인문사회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③ 평가	•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및 평가지원
	- (추진목적) 대학별 우수 평가문항 및 기 출제된 기초의학종합평가·임상의학종합평가 문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축적하는 문제은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확대 - (추진내용) 대학 및 의대협회 보유 문항을 축적, 표준화한 문제은행 시범 구축을 통해, 학생의 학습성과 분석 지원 등 평가부담 완화(연차별 기능 고도화 추진)
	• 포트폴리오 평가방식 개발·시범운영
	- (추진목적) 의과대학 졸업 포트폴리오의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임상실습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도구를 시범 구축·적용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질 향상 및 학습자 중심 평가체계 강화 도모 - (추진내용) 임상실습 포트폴리오를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졸업 포트폴리오 프레임워크를 개발·설계

자료: 의대협회,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2025.9.) 참고

- 또한 의대교육혁신 지원(지자체) 사업은 이를 수행하는 대학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크게 '① 의학교육 혁신 계획, ②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으로 구분됨.

이 중 ① 의학교육 혁신 계획은 ①-1. 의학교육 혁신 계획과 ①-2. 지역연계 등 거버넌스 구축으로 구분되는데, ①-1. 의학교육 혁신 계획은 주로 의대교육혁신 지원(민간) 사업을 수행하는 의대협회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①-2. 지역연계 등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네트워크 구축, 의료서비스 운영,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것임.

그리고 ②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복귀 학생이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의대교육혁신 지원(지자체) 사업 주요내용 >

구분	내용
① 의학교육 혁신 계획	①-1. 의학교육 혁신 계획(KAMC 추진 과제 공동 수행)
	- 6년제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진로 코칭 전략 수립 - 공유 교육과정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문제은행 기반 AI 맞춤형 평가·학습 통합체계 구축 - 졸업 포트폴리오 활용 연구 - 의과대학 입학 전형 전략 연구 및 학생 선발 담당자 역량 강화
	①-2. 지역연계 등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서비스 운영 - 지역인재 선발 등 지역균형 의료를 위한 인재 양성 - 지역사회 연계 실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구분	내용
②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	• 의학교육(또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 : 학생 학업 상담 및 학사지도 강화,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교수, 학생,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학사운영 유연화 실시 - 복귀 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지원 : 학습지원 자료 공유 및 임상술기 연습 공간 제공, 의과대학 교육학습 환경개선 추진

자료: 각 대학,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2025.9.) 참고

❑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이 포함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대학 육성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육부에서 2025년 4월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에서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음.[32)]

❑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휴학 및 복귀 등 의대 정상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후,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2)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2025. 4.), p.15
* 지자체와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교육혁신 계획서를 작성·제출

수행한 부분(지자체 ①-2. 지역연계 등 거버넌스 구축)도 있으나,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지자체 ② 의학교육 정상화 노력) 의대교육을 개선하는(민간 ① 교육과정, ② 학습지원, ② 평가, 지자체 ①-1. 의학교육 혁신 계획) 등 의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 내역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에 따라 24·25학번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의과대학의 다소 폐쇄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평가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개방하는 과제를 포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예산은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취지와 상이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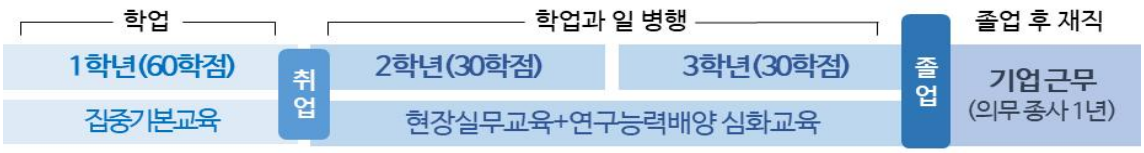
(2) 등록률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내역사업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학과에 선발된 학생은 1학년 과정에서 기업맞춤형 전공 과정으로 집중기본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계한 현장실무교육과 연구능력을 기르기 위한 심화교육을 받으며, 이후 1년 동안 해당 기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함.

이를 통해 학생은 진학과 동시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고, 중소·중견기업은 맞춤형 과정으로 양성된 인력을 공급받아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예시) >



주: 4년 학사학위 과정을 3년에 이수하고 조기 졸업(전문대학은 6개월 단축 운영 가능)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4년간(2022~2025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175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후 2023년 262억 2,200만원, 2024년 336억 3,000만원, 2025년 337억 2,500만원 등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원) 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선정연도	지원기간	권역	학교명	2022	2023	2024	2025
일반	2018	'18~'23	전남	국립목포대	1,170	1,150	-	-
	2018 2024	'18~'23 '24~'27	경기	한국공학대	1,205	1,300	1,140	1,185
			경기	한양대에리카	1,305	1,200	1,140	1,140
			전남	전남대	1,235	1,200	1,140	1,140
			경북	경일대	1,270	1,150	1,140	1,185
	2020	'20~'25	부산	동의대	840	1,150	1,140	1,073
			경기	가천대	1,305	1,300	1,197	1,185
			충남	순천향대	1,270	1,150	1,083	1,073
	소계				9,600	9,600	7,980	7,981
전문대	2021	'21~'25	서울	명지전문대	1,210	1,210	1,254	1,220
			부산	동의과학대	1,170	1,210	1,140	1,140
			광주	동강대	1,075	1,070	1,026	1,140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1,075	1,070	1,140	1,140
			경북	구미대	1,170	1,140	1,140	1,100
	2022	'22~'26	부산	부산과학기술대	1,140	1,140	1,083	1,080
			충남	백석문화대	1,140	1,140	1,197	1,200
	2023	'23~'25	충남	혜전대	-	1,140	1,140	1,100
	소계				7,980	9,120	9,120	9,120
대학원	2023	'23~'25	부산	부산대	-	2,500	2,375	2,256
			대전	국립한밭대	-	2,500	2,434	2,375
			경북	경일대	-	2,500	2,316	2,494
	2024	'24~'26	서울	서울시립대	-	-	2,375	2,375
			경기	한양대에리카	-	-	2,375	2,256
			충남	국립공주대	-	-	2,375	2,494
			경기	가천대	-	-	2,280	2,375
	소계				0	7,500	16,530	16,625
합계					17,580	26,220	33,630	33,725

주: 구분 - 선정연도 - 지원기간 - 권역 - 학교명 순으로 정렬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에서 지원받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원)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의 비율(등록율)은 2022년 67.2%에서 2023년 및 2024년에 소폭 상승한 70.9%, 70.0%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64.9%로 하락함.

또한 학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학년 과정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2학년 과정으로 진입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해당 비율을 2022년 9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에 85.1% 수준에 이르는 등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중도이탈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원)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모집인원 (A)	등록인원 (B)	등록률 (B/A)	취업인원[1] (C)	취업률 (C/B)
2022	1,354	910	67.2	856	94.1
2023	1,658	1,175	70.9	1,076	91.6
2024	1,895	1,327	70.0	1,167	87.9
2025	2,195	1,424	64.9	1,212	85.1

주: 1) 취업인원: 해당연도 등록인원 중 1학년 과정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수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학생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등록 또는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이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이탈한 것에는 해당 과정 또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단일 내역사업으로 통합되어, 현행 조기 취업·인재 확보와 함께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등을 위한 목적의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개편·추진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등록률, 취업률 등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33]

○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2026년도부터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과제별로 최대 10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사업추진 초기부터 연구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연차별 성과목표와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한편, 연구성과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정책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문사회기초연구(R&D)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 학술·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역량 강화, 지식 창출, 학문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이 있음.

33) 문의: 02-6788-5185

< 인문사회기초연구(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내역사업	사업내용
학문후속세대지원	인문사회분야의 잠재력 있는 박사급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 및 공동연구자 기반의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창의적 연구기반 확대 및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일반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집단연구를 통한 연구자 육성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대학내·대학간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과 공유를 위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해외연구소 및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 및 융합연구 모델 개발, 유명 석학과의 교류 활동으로 국제연구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

(2) 결산개요

❑ 2025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 사업 예산현액은 2,569억 8,100만 원으로 전액 한국연구재단에 교부되었고[34], 한국연구재단은 2,525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5,400만 원은 불용하여 집행률은 98.3%임.

< 2025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시행주체(기관명)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 인문사회기초연구(R&D)	한국연구재단	256,981	256,981	256,981	-	256,981	252,527	-	4,454	98.3
○ 학문후속세대지원(360-05)	한국연구재단	105,570	105,570	105,570	-	105,570	103,807	-	1,763	98.3
○ 일반연구지원(360-05)	한국연구재단	52,290	52,290	52,290	-	52,290	52,212	-	78	99.9
○ 인문사회연구소지원(360-05)	한국연구재단	47,320	47,320	47,320	-	47,320	45,231	-	2,089	95.6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360-05)	한국연구재단	30,000	30,000	30,000	-	30,000	30,000	-	-	100.0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360-05)	한국연구재단	21,801	21,801	21,801	-	21,801	21,277	-	524	97.6

(자료 : 교육부)

34) 전액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출연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나) 검토의견 :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은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 및 융합연구 모델 개발, 유명 석학과의 교류 활동으로 국제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그룹 지원형(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과 연구소 지원형(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연구소 지원형 내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컨소시엄형’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

❑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이하 ‘컨소시엄형’)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소 협업을 통한 인문사회 기반의 대규모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5개 이내의 연구소(기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3+2년) 동안 연간 2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임.

❑ 2025년도에는 신규과제 1개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2026년도에는 계속과제 1개와 신규과제 2개를 포함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

해 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음.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연구소 간 벽을 허무는 협업을 통해 공동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컨소시엄형 사업 지원내용 >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 기간	연간 연구비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	컨소시엄형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5개 이내 연구소(기관) 컨소시엄	5년 (3+2년)	2,0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포함)

2025년도	2026년도
신규 1과제×2,000백만원×6/12 = 1,000백만원	신규 2과제×2,000백만원×6/12 = 2,000백만원 계속 1과제×2,000백만원×12/12 = 2,000백만원

※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비의 50%(6개월분) 산정(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차단계 진입 시 마지막 연차로 편성)

(자료 : 교육부)

❑ 2025년도 1차년도 컨소시엄형 지원 사업은 “AI 기반 신기술과 사회 변화”를 연구 아젠다로 지정하여 사업공모(2025. 6월)를 실시하였고, 사업계획서 접수(2025. 7월), 선정평가(2025. 8월)를 거쳐 최종 1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개시(2025. 9월)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원 중 실집행액은 5억 5,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5.7%임.

< 2025년도 컨소시엄형 선정 결과>

구분	내용
연구과제명	AI 시대, 모두를 위한 지식 플랫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운영체제로서의 도서관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참여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해외연구기관	Simmons University, George Mason University
연구분야	정보서비스(복합학/문헌정보학)

< 2025년도 컨소시엄형 예산집행 >

연구기관	연구분야	예산액 (A)	교부액 (연구재단)	집행액 (연구기관) (B)	실집행률 (B/A)
컨소시엄형(1개)	정보서비스 (복합학/문헌정보학)	1,000백만원	1,000백만원	557백만원	55.7%

(자료 : 교육부)

❑ 한편, 교육부는 컨소시엄 공동 연구성과 관리 방향으로 ① 글로벌 융복합 공동연구 활동 및 체계 구축(국제공동학술논문 게재, 컨소시엄 공동학술행사 개최, 컨소시엄 인력교류 등) ② 융합인력 양성 실적(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자 성장 로드맵 추진 등) ③ 정책 연계 및 사회적 성과 활용·확산 (정책 및 입법화 계획·추진 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음[35].

35)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컨소시엄형) 세부시행계획」 (2025.6)

❑ 그런데 2025년도에는 사업이 하반기에 개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컨소시엄 간 공동 업무협약 체결 외에는 연구성과 관리 방향과 관련하여 국제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선정절차 진행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으로, 향후 연구성과 세부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연구성과 세부목표 >

구분	연구성과명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1	국제학술논문	-	5건	5건	5건	6건	3건
2	국내학술논문	-	10건	10건	10건	12건	8건
3	국제 공동 학술행사 개최	-	1건	1건	1건	1건	1건
4	국내 공동 학술행사 개최	1건	2건	2건	2건	2건	2건
5	인력 교류	-	4건	4건	4건	4건	2건
6	융합인력 양성실적	-	1건	1건	1건	1건	1건
7	정책 연계 및 사회적 성과 활용 · 확산	-	2건	2건	2건	2건	2건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국내외 연구소 간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특히 단일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지원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은 최근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2026년도부터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과제별로 최대 10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사업 추진 초기부터 연구성과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공동연구 실적,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지속성,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융합인력 양성 성과, 정책 반영 실적 등 사업목적을 반영한 핵심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컨소시엄형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연차별 성과목표와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한편, 연구성과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정책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36]

○ ‘글로컬랩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연구소 중심의 장기(최대 9년) 연구지원사업이나 현재는 연구소별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자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교육부는 글로컬랩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전반에 적용할 성과지표와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논문·특허 등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기여도,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 연구생태계 구축 등 글로컬랩 사업의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정성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이 있음.

36) 문의처: 02-6788-5185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5 예산액
학문후속세대지원	학위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연수·연구 기회를 지원하여 연구단절 방지 및 연구역량 제고	156,032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의 특성화·전문화된 기초연구 거점 구축, 우수한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소속 제공	292,946
학술연구혁신지원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대학, 보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추진	144,070

(자료 : 교육부)

(2) 결산개요

❑ 2025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 예산현액은 5,930억 4,800만 원으로 전액 한국연구재단에 교부되었고[37], 한국연구재단은 5,746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84억 1,700만 원은 불용하여 집행률은 96.9%임.

37) 전액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출연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 2025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시행주체 (기관명)	교육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한국 연구재단	593,048	593,048	593,048		593,048	574,631	-	18,417	96.9
○ 학문후속세대 지원(360-05)	한국 연구재단	156,032	156,032	156,032	-	156,032	142,823	-	13,209	91.5
○ 대학연구기반 구축(360-05)	한국 연구재단	292,946	292,946	292,946	-	292,946	292,896	-	50	99.9
○ 학술연구혁신 지원(360-05)	한국 연구재단	144,070	144,070	144,070	-	144,070	138,911	-	5,159	96.4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글로컬랩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은 대학의 체계적인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R&D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 내역 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국가연구소 사업이 있고,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내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글로컬랩’ 사업을 신설하였음.

❑ 글로컬랩 사업은 대학 연구소를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공 분야 대학부설 단일연구소(거점형) 또는 연구소 간 컨소시엄(컨소시엄형)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최대 9년(3+3+3년) 동안 거점형은 연 15억원, 컨소시엄형은 연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글로컬랩 사업 개요 >

구분	거점형	컨소시엄형
연구기간	9년 (3+3+3년)	
지원대상	KCI에 등록된 대학부설연구소	
	단일 연구소	타 기관 소속 연구소 3개 내외로 구성된 연구소 연합체
지원항목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소별 자율프로그램	
지원단가	연 1,500백만원 내외	연 2,400백만원 내외
2025 과제 수	신규 11개	신규 3개
2025 사업예산	11,850백만원	

2025년도에는 11개 거점형과 3개 컨소시엄형 등 총 14개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액 118억 5,0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85억 2,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72%임.

< 2025년도 글로컬랩 예산집행 >

(단위:백만원, %)

연구기관	연구분야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대학) (B)	실집행률 (B/A)
o 거점형(11개교)		8,250	8,250	6,165	74.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자동화계측	750	750	643	85.7
-강원대학교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750	750	535	71.3
-부산대학교	환경	750	750	648	86.4
-경희대학교	유전자발현	750	750	605	80.7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소자	750	750	241	32.1
-한국과학기술원	설계생산	750	750	427	56.9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바이오소재	750	750	722	96.3
-숙명여자대학교	기초생명약학	750	750	624	83.2
-전남대학교	전기/전자 기반 융합	750	750	578	77.0
-국립창원대학교	재료가공	750	750	590	78.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의료기기	750	750	552	73.6
o 컨소시엄형(3개교)		3,600	3,600	2,364	65.7
-국민대학교(주관) [강원대, 고려대(세종)]	정보보안	1,200	1,200	915	76.3
-충남대학교(주관) [서울대, 카이스트]	약품화학 및 천연물	1,200	1,200	799	66.6
-인하대학교(주관) [인천대, 한국공학대]	고분자공학	1,200	1,200	650	54.2
합계		11,850	11,850	8,529	72.0

※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비의 50%(6개월분) 편성 (거점형 15억원×6/12=7억 5,000만원, 컨소시엄형 24억원×6/12=12억원)

(자료 : 교육부)

❑ 한편, ‘글로컬랩 사업 추진계획’[38]에 따르면 성과관리는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확산,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 연구생태계 구축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성과지표와 연구소별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연구소별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성과포럼 및 워크숍과 연계한 연차점검을 실시하며, 사업 추진성과와 연구비 집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3차년도와 6차년도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성과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연구소 중심의 장기 연구지원사업으로서 지역혁신,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지역 연구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연구소별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자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연구소 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거나 사업 전체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글로컬랩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38) 「글로컬랩 사업 추진계획」 (2025.4, 교육부)

개발 연구」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활용할 평가항목, 공통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글로컬랩 사업은 최대 9년간 지원되는 장기 연구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정책목표와 연계된 공통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글로컬랩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전반에 적용할 성과지표와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논문·특허 등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기여도, 학문후속세대 양성, 국내외 공동연구, 지역 연구생태계 구축 등 글로컬랩 사업의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정성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마련된 성과지표를 연구소별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향후 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우수성과의 확산과 연구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한국장학재단 출연

○ 교육부는 202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81.7%로 2024년 대비 33%p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26년 신규 대상(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08-300)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과 재단 고유사업비 및 재단운영비로 구성됨.

❑ 재단의 주요사업인 학자금대출 관련 사업은 ①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②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③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군이자면제, ④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⑤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⑥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등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4,079억 1,3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장학재단출연	407,913	-	-	407,913	407,913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185,491	-	△1,372	185,491	185,491	-	-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37,870	-	-	37,870	37,870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 면제	1,283	-	522	1,283	1,283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10,780	-	287	10,780	10,780	-	-	100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45,771	-	△729	45,771	45,771	-	-	100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27,315	-	-	27,315	27,315	-	-	100
○ 고유사업비	43,146	-	1,292	43,146	43,146	-	-	100
○ 재단운영금	56,257	-		56,257	56,257	-	-	100

나) 검토의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39]) 이자면제 사업의 수요 추산 정확성 제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이하 “이자면제 사업”이라 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자면제 사업의 지원범위와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90억 700만원 증액된 37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 이자면제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①내내역사업인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의 실집행률(실제 학생들에게 지원된 이자 면제액)은 81.7%, ②신설된 상환유예자 이자면제 사업의 실집행률은 63.7%로 다소 저조하였음.

< 최근 3년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8,625	5,903	68.4	18,863	15,668	83.1	37,870	30,648	80.9
- 군이자면제	1,665	1,050	63.1	992	806	81.3	529	455	86.0
- 기초차상위계층 이자면제	2,642	583	22.1	2,593	1,985	76.6	4,928	4,572	92.8
- 다자녀 이자면제	4,318	4,269	98.9	7,064	8,880	125.7	17,731	14,491	81.7
-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	-	-	8,214	3,997	48.7	9,844	8,046	81.7
- 상환유예자 이자면제	-	-	-	-	-	-	4,838	3,084	63.7

39) ICL(Income Contingent Loan)

-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내내역사업인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의 계획된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중위소득(5구간) 이하인 대상은 총 193,272명이나, 실제 지원인원은 157,970명으로 당초 계획된 지원인원보다 △18.27% 적게 나타났으며, ‘상환유예자 이자면제’ 사업의 지원인원은 당초 계획된 인원인 54,124명에 △36.25% 미달되는 34,502명으로 나타남.

❑ 참고로, 중위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은 202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시행 초기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지원인원과 이자면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워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음. 이후 사업 홍보와 운영경험 축적 등에 따라 2025년 실집행률은 2024년 48.7%에서 81.7%로 33.0%p 상승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

❑ 다만, 전년 대비 실집행률이 개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집행실적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지원인원도 2025년 예산편성 당시 추산한 인원에 미달하고 있음. 이는 지원대상자 수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보유 여부, 평균 대출잔액, 실제 이자 발생액 등 예산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추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유형별 이자면제 계획 및 실집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예산)		집행(=결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법 제16조의2)	1항 (13.5.10.)	군 복무자		8,211	529	10,153	455
	2항 1~3호 (22.1.1.)	수급자/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44,005	2,340	40,826	2,171
			차상위계층	54,539	2,588	50,599	2,401
	2항 4호 (22.1.1.)	다자녀 가구		209,013	17,731	170,820	14,491
	3항 (24.7.1.)	중위소득(5구간) 이하자	1구간	43,373	2,305	35,451	1,884
			2구간	39,527	1,815	32,307	1,483
			3구간	39,659	1,780	32,415	1,455
			4구간	44,371	2,402	36,266	1,963
			5구간	26,342	1,542	21,531	1,260
	4항 (24.7.1.)	의무상환유예	실직	47,919	4,311	30,546	2,748
			폐업	1,801	159	1,148	101
			육아휴직	4,334	365	2,763	233
			재난지역 거주자	70	3	45	2
	소계			563,163	37,870	447,113	30,648
일반상환 (장학재단법 제24조의1이)	3항 (13.5.10.)	군 복무자		10,827	761	26,911	1,250
합계				573,990	38,631	466,984*	31,898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소득구간별 학자금대출자 수, 평균 대출잔액, 이자면제 적용기간 및 실제 이자 발생액 등 과거 집행자료를 토대로 지원인원과 소요액의 추계방식을 정교화하고, 예산편성 시 세부 산출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월별·분기별 집행실적과 당초 추계 간 차이를 점검하여 집행 부진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집행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부터 소득기준 이자면제 사업인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의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이하 대상자에 대한 이자면제 사업 예산이 2025년 98억 4,400만원에서 105억 1,800만원 증가(106.85%)한 20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로 확대되면서 신규 대상자가 77,896명 증가하여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과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던 2024년 사업 시행 시 기초자료 부족과 사업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던 만큼, 신규 대상자 확대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2026년 이자 면제 확대에 따른 대상 인원>

(단위: 명)

구분		현행 대상자	신규 대상자
이자면제 대상	1~5구간	189,489	138,459
	6구간	0	77,896
	합계	189,489	216,355

자료: 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새롭게 포함되는 소득구간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행 초기부터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계와 실제 수요 간 차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신규 이자면제 대상자에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현황[40]>

<table>
<tr><th></th><th colspan="2">기존대상</th><th></th><th>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일부개정안)</th></tr>
<tr><td rowspan="4">제16조의2
(이자의 면제)</td><td colspan="2">「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제1항)</td><td rowspan="3">→</td><td rowspan="3">좌동</td></tr>
<tr><td colspan="2">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제2항제1호,제2호)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의 채무자(제3호)
다자녀 가구의 자녀(제4호)</td></tr>
<tr><td colspan="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
(제5호)</td></tr>
<tr><td colspan="2"></td><td>→
신설</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인 채무자
(제3항)</td></tr>
<tr><td rowspan="3">제16조의2
제4항
(2024.7.1.
부터 시행)</td><td colspan="2">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td><td rowspan="3">→</td><td rowspan="3">좌동</td></tr>
<tr><td></td><td>제2호 ~ 제4호</td></tr>
<tr><td></td><td>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제5호)</td></tr>
</tabl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40) 개정 내용은 2026년 예산부터 반영되며,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이자면제 사업 예산 집행은 기존 대상을 기준으로 집행됨.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이 2024년 233개교에서 2025년 71개교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800억원 증액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 실집행률이 2025년 64.8%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은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출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①“국가장학금 지원”, ②“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③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대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④중소기업 취업과 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 ⑤“주거안정장학금 지원”으로 구성됨.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4조 9,807억 4,700만원으로, 전액집행하였음.

<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4,980,747	-	-	4,980,747	4,980,747	-	-	100
○ 국가장학금 지원	4,485,299	4,270,999	-	-	4,270,999	4,270,999	-	-	100
- 국가장학금 Ⅰ유형	3,029,187	2,967,387	-	-	2,967,387	2,967,387	-	-	100
- 국가장학금 Ⅱ유형[41]	340,000	210,000	-	-	210,000	210,000	-	-	100
• 대학자체노력형	260,000	130,000	-	-	130,000	130,000	-	-	100
• 지역인재장학금	80,000	80,000	-	-	80,000	80,000	-	-	100
- 다자녀장학금	1,113,776	1,091,276	-	-	1,091,276	1,091,276	-	-	100
- 사업운영비	2,336	2,336	-	-	2,336	2,336	-	-	100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627,442	527,442	-	-	527,442	527,442	-	-	10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27	57,827	-	-	57,827	57,827	-	-	100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97,963	97,963	-	-	97,963	97,963	-	-	100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34,435	24,435	-	-	24,435	24,435			100
○ 운영비(인건비)	2,081	2,081	-	-	2,081	2,081	-	-	100

41)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에는 대학 자체노력 연계 유형으로 편성된 1,300억원,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편성된 800억원이 포함되어 총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1)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참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로,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구분됨.

2025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본예산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총 3조 29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총 618억 감액되어 총 2조 9,67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총 3,4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대학자체노력형이 1,300억원 감액되어 총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예산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3,029,187	79,600	△141,400	2,967,387
국가장학금 Ⅱ유형		340,000		△130,000	210,000
	대학자체노력형	260,000		△130,000	130,000
	지역인재장학금	80,000			80,000

❑ 이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이 실시하는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장학금 지원 등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임.

이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참여하는 대학에 장학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비교>

구분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구조	국가가 학생의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	국가가 참여대학에 장학재원을 배분하고,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지원 대상	일정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대학생으로서 성적·이수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재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지원금액 결정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국가가 정한 지원단가 적용	대학별 배분예산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이 학생별 지원금액 결정
대학 참여요건	별도의 등록금 동결·인하 요건 없음	원칙적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교내장학금 규모 유지 등 자체노력 요건 충족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3,400억원에서 추경을 거쳐 총 1,300억원이 감액되어 2,10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2,042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2%임.

2025년 예산은 2024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에 비해 약 1,861억 8,000만원이 감액(△47.0%)되었음.

<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 집행 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				2025년				집행률 증감
	예산(A)	집행(B)	실집행률 (B/A)	불용액 (A-B)	예산(A')	집행(B')	실집행률 (B'/A')	불용액 (A'-B')	
Ⅰ유형 (다자녀)	3,577,500	3,564,258	99.6%	13,242	4,058,663	3,989,450	98.3%	69,213	△1.3%p
Ⅰ유형	2,619,851	2,612,027	99.7%	7,824	2,967,387	2,925,982	98.6%	41,405	△1.1%p
다자녀	957,649	952,230	99.4%	5,419	1,091,276	1,063,468	97.5%	27,808	△2.0%p
Ⅱ유형	396,180	389,865	98.4%	6,315	210,000	204,215	97.2%	5,785	△1.2%p
합계	3,973,680	3,954,123	99.5%	19,557	4,268,663	4,193,665	98.2%	74,998	△1.3%p

주1: 연중 예산 변동(전용, 교부금 반납 등)을 감안한 최종 교부금액 기준, 사업운영비(23억 원) 제외

주2: 본 집행액은 2025년 회계 결산 기준 집행액, 대학 반환금 반영 등에 따른 실질 지원금액과 상이

자료: 한국장학재단

❑ 이러한 예산 조정과 더불어,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참여대학의 수가 2024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수는 233개에서 71개로 약 △69.5% 감소(162개교)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5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84개교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결과>

구분	'24년			'25년			전년대비 증감		
	인원(명)	금액(억 원)	1인당 금액(만 원)	인원(명)	금액(억 원)	1인당 금액(만 원)	인원(명)	금액(억 원)	1인당 금액(만 원)
국가장학금 합계	1,014,200	38,916	384	1,186,030	41,745	352	171,830	2,829	△32
Ⅰ유형+다자녀	944,504	35,643	377	1,171,634	39,895	341	227,130	4,252	△36
Ⅱ유형	383,333	3,274	85	116,976	1,850	158	△266,357	△1,424	73
대학자체 노력 등	**370,845**	**2,572**	**69**	**105,117**	**1,144**	**109**	**△265,728**	**△1,428**	**40**
지역인재	12,488	702	562	11,859	706	595	△629	4	33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 노력연계) 참여대학 수>

(단위: 개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참여대학 수	260	247	233	71

자료: 교육부

<2025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증감률 구간별 대학 수>

(단위: 개교, %)

구분	인하 동결	인상					합계
		1%미만	1%이상	4%이상	5%이상	계	
대학수	31	28	19	31	106	184	215
비율	14.4	13.0	8.8	14.4	49.3	85.6	100.0

자료: 대학알리미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하여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이나,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충분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42]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던 정책수단이 약화되어 그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후속 사업을 마련할 때 기존 재원을 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중·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2025년 233개에서 71개로 162개교(△69.5%)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된 최종예산 2,100억원에 비해 800억원이 증액된 2,9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예산이 3,400억원이었으나, 사업 참여 대학 감소 등을 고려하여 1,300억원이 감액된 2,100억원이 최종편성되었음.

그러나, 2026년 예산은 추경 예산안에 비하여 오히려 800억원이 증액된 2,100억원이 편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참여 대학 수가

42) 교육부,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2025.12.16. 보도자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2025.12.12.)

감소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존속하는 경우,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본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예산액	예산액
국가장학금 II유형		340,000	-	△130,000	210,000	290,000
	대학자체노력형	260,000	-	△130,000	130,000	210,000
	지역인재장학금	80,000	-	-	80,000	80,000

(2)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총 344억 3,500만원[43]이 편성되었으나, 제2차 추경안 편성 시 총 100억원이 감액되어 244억 3,500만원이 총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 집행률을 살펴보면, 총 199억 1,000만원(사업비 189억 2,400만원, 운영비 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81.5%임.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예산액(A)	교부액(B)	예산액 대비 교부비율 (B/A)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34,435	-	△10,000	24,435	19,910	81.5%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교부 절차를 살펴보면,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재단은 기초·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학적·성적 및 원거리 통학요건 등을 심사하

43) 2025년 본예산으로 총 34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억원이 감액되어 최종 예산으로 24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여 장학생을 최초 선발함. 이후 대학이 재단의 선발 결과를 확인·정정하면 재단은 최종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사업비와 운영비를 산정・교부함.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교부하여 총 189억 2,4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장학금 지원 결과 대학은 15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총 7억 9,6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실제 지원 금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25년 예산(A)	교부액(B)	실집행액[44](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합계(A+B)	24,435	19,910	15,986	81.5%	65.4%
사업비(장학금)(A)	23,435	18,924	15,190	80.8%	64.8%
운영비(B)	1,000	985	796	98.5%	79.6%
대학운영비	700	686	497	98.0%	71.0%
사업운영비	300	299	299	99.6%	100%

자료: 교육부

❑ 다만, 대학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인원 수에 따라 장학금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별 사업비 실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44) 실집행액은 한국장학재단이 실제 학생들에게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학별 사업비 실집행 현황>

대학명	사업비		
	교부액	집행액	실집행률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256,000,000원	139,494,000원	54.5
거제대학교(본교)	3,200,000원	1,481,000원	46.3
경기과학기술대학교(본교)	10,400,000원	5,200,000원	50
경남정보대학교(본교)	40,800,000원	24,063,000원	58.9
경인여자대학교(본교)	3,200,000원	400,000원	12.5
국립목포해양대학교(본교)	47,200,000원	18,557,000원	39.3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	14,400,000원	8,536,000원	59.3
국제예술대학교	6,400,000원	3,748,000원	58.6
군장대학교(본교)	10,400,000원	5,562,000원	53.5
남서울대학교(본교)	205,600,000원	113,385,000원	55.1
두원공과대학교(본교)	3,200,000원	1,600,000원	50
배화여자대학교(본교)	14,400,000원	7,883,000원	54.7
백석대학교(본교)	323,200,000원	151,991,000원	47.0
백석문화대학교(본교)	70,400,000원	24,502,000원	34.8
서영대학교(본교)	46,400,000원	8,402,000원	18.1
송곡대학교(본교)	4,000,000원	2,169,000원	54.2
신안산대학교(본교)	4,800,000원	1,375,000원	28.6
영남신학대학교(본교)	3,200,000원	1,800,000원	56.2
예원예술대학교(본교)	24,800,000원	8,919,000원	35.9
전북과학대학교(본교)	16,000,000원	9,046,000원	56.5
조선간호대학교(본교)	10,400,000원	5,551,000원	53.3
창원문성대학교(본교)	1,600,000원	400,000원	25
호원대학교(본교)	120,800,000원	61,766,000원	51.1

주: 해당 대학은 사업비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대학만을 선별한 수치
자료:교육부

따라서, 각 대학별로 교부된 금액이 신청 인원에 따른 실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거안정지원 장학금’ 사업은 2025년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의 홍보 등이 미비하여 1학기 총 9,864명이 지원받았으나, 사업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하여 2학기 11,261명이 지원을 받았음.

<장학금 지급인원 및 청구 현황>

(단위: 명, 건, 원)

1학기(a)				2학기(b)			2025년 합계(a+b)	
지급 인원		9,864명			11,261명		21,125명	
청구월		청구건	지원금액	청구월		청구건	지원금액	청구건	지원금액
3월		9,846	1,969,200,000	9월		11,239	2,247,800,000	21,085	4,217,000,000
4월		8,769	1,666,131,830	10월		10,197	1,950,067,130	18,966	3,616,198,960
5월		8,548	1,623,553,800	11월		10,013	1,917,742,830	18,561	3,541,296,630
6월		8,423	1,606,100,370	12월		9,786	1,885,786,590	18,209	3,491,886,960
방학	7월	506	96,171,710	방학	1월	465	88,045,950	971	184,217,660
	8월	396	76,144,760		2월	335	63,342,910	731	139,487,670
소계		36,488	6,961,157,710	소계		42,035	8,089,442,500	77,792	15,050,600,210

자료: 교육부

주: 동 사업은 장학금 수혜 학생 1인당 1년 최대 12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건수와 지급 인원은 상이할 수 있음.

지급인원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인 1학기에 비하여 2학기 지급인원이 1,397명 증가(14.16%)하여 총 21,125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예산 편성 당시 추산하였던 지급인원인 42,169명보다 저조하여 실집행률이 64.8%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동 사업이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국립대학육성사업[45]

○ 교육부는 성과평가에서 일부 유형의 대학에만 적용 가능한 지표로 가산점을 적용하여 이를 적용받은 대학의 등급이 상향된 바 있으므로, 성과평가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45)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4,243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0%임.

< 2025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학육성사업	424,300	-	424,300	424,300	-	-	100.0
○ 사업출연금	424,300	-	424,300	424,300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 필요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37개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2023년 4,580억원, 2024년 5,722억원, 2025년 4,243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동 사업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량성과 사업비와 정성성과 사업비로 구분되는데, 정량성과 사업비는 대학별 등록금, 재학생 수,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수 등을 적용한 포뮬러에 따라 배분되고, 정성성과 사업비는 대학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됨.

사업비에서 정량성과와 정성성과 간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60:40으로 정량성과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40:60으로 정성성과의 비중이 높아져 사업비 배분에 성과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 2023~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내역 >

(단위: 억원, %)

구분		2023 예산액(비중)	2024 예산액(비중)	2025 예산액(비중)
사업비	정량성과[포뮬러]	2,741(60)	2,284(40)	1,692(40)
	정성성과[인센티브]	1,827(40)	3,426(60)	2,539(60)
	소계	4,568(100)	5,710(100)	4,231(100)
사업관리비		12	12	12
합계		4,580	5,722	4,24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업비 배분과 관련하여 정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성과평가 결과는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2023년과 2024년에 0.3점이었으나, 2025년에 0.5점으로 확대되어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이 확대됨.

또한 2024년부터 모집단계에서 전공자율선택제[46]로 혁신 성과가 있는 대학에 가산점이 부여되었는데, 가산점 상한은 2024년에 8점이었으나 2025년에는 전공자율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12점으로 확대됨.[47]

다만, 입학 당시부터 전공 분야를 특정하여 학업을 이수하는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에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해당 유형 대학의 성과평가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 2023~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등급 및 가산점 >

구분	등급				가산점
	S	A	B	C	
2023	1.3	1.0	0.7	0.0	-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미만	
2024	1.6	1.3	1.0	0.7	최대 8점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2025	2.0	1.5	1.0	0.5	최대 12점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6) 학생이 입학 당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진로 탐색을 거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47) 2026년에는 전용자율선택제의 양적 확대보다 현장 안착을 위한 질적 관리 및 제도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가산점 상한이 4점으로 축소됨

< 국립대학 유형별 현황 >

유형	대학명	비고
거점국립대 (9개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가산점 적용
국가중심대 (13개교)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경국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경국립대	
특수목적대 (4개교)	국립목포해양대, 국립한국해양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가산점 미적용
교원양성대 (11개교)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총계	37개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운영된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를 연도별·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 거점국립대는 2023년에 A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S, A, B등급의 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S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상향되었고,

- 국가중심대는 2023년 및 2024년에 A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S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상향되었음.

- 특수목적대는 2023년 및 2024년에 B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A등급과 B등급이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 교원양성대는 2023년에 A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B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하향되었음.

< 2023~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

(단위: 개교, %)

2023년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합계
S등급	0 (0.0)	0 (0.0)	0 (0.0)	0 (0.0)	0 (0.0)
A등급	5 **(55.6)**	11 **(84.6)**	0 (0.0)	8 **(72.7)**	24 (64.9)
B등급	4 (44.4)	2 (15.4)	4 **(100.0)**	3 (27.3)	13 (35.1)
C등급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9 (100.0)	13 (100.0)	4 (100.0)	11 (100.0)	37 (100.0)

2024년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합계
S등급	3 **(33.3)**	4 (30.8)	0 (0.0)	0 (0.0)	7 (18.9)
A등급	3 **(33.3)**	6 **(46.2)**	1 (25.0)	2 (18.2)	12 (32.4)
B등급	3 **(33.3)**	3 (23.1)	3 **(75.0)**	7 **(63.6)**	16 (43.2)
C등급	0 (0.0)	0 (0.0)	0 (0.0)	2 (18.2)	2 (5.4)
합계	9 (100.0)	13 (100.0)	4 (100.0)	11 (100.0)	37 (100.0)

2025년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합계
S등급	5 **(55.6)**	7 **(53.8)**	0 (0.0)	1 (9.1)	13 (35.1)
A등급	1 (11.1)	3 (23.1)	2 **(50.0)**	3 (27.3)	9 (24.3)
B등급	3 (33.3)	3 (23.1)	2 **(50.0)**	7 **(63.6)**	15 (40.5)
C등급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9 (100.0)	13 (100.0)	4 (100.0)	11 (100.0)	37 (100.0)

주: 2025년은 가산점이 적용되는 교육혁신 성과평가만 기재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성과평가는 각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및 혁신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평가점수에 따라 결과 등급이 부여되나, 최근 3년간 추이에서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의 결과 등급이 상향된 반면 교원양성대의 결과 등급이 하향된 것에는 2024년부터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에 한정하여 가산점이 적용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의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는 교육혁신 성과평가[48]에서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는 모두 가산점을 받았고, 거점국립대 2개교와 국가중심대 3개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가산점 적용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음.

<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혁신 성과평가 결과 >

(단위: 점, 등급)

구분	대학명	평가점수 (A)	등급적용시	가산점 (B)	합산점수 (A+B)	등급
거점 국립대	제주대학교	77.88	C	4.0	81.88	B
	경상국립대학교	81.04	B	8.0	89.04	B
	강원대학교	82.66	B	4.8	87.46	B
	부산대학교	85.12	B	10.0	95.12	S
	충남대학교	85.32	B	10.0	95.32	S
	전북대학교	86.08	B	4.0	90.08	A
	전남대학교	86.18	B	10.0	96.18	S
	경북대학교	88.78	B	12.0	100.78	S
	충북대학교	89.22	B	10.0	99.22	S
국가 중심대	국립한밭대학교	79.70	C	12.0	91.70	A
	국립강릉원주대학교	81.54	B	6.0	87.54	B
	한경국립대학교	81.56	B	8.0	89.56	B
	국립부경대학교	82.60	B	12.0	94.60	A
	국립한국교통대학교	82.74	B	4.0	86.74	B

48) 2025년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성과 점수(80%)+가산점, 자체 성과관리 점수(20%)로 구분되어, 각각 등급이 부여됨

구분	대학명	평가점수 (A)	등급적용시	가산점 (B)	합산점수 (A+B)	등급
	국립공주대학교	82.90	B	12.0	94.90	A
	국립목포대학교	83.28	B	12.0	95.28	S
	국립군산대학교	84.16	B	12.0	96.16	S
	국립금오공과대학교	84.40	B	12.0	96.40	S
	국립창원대학교	85.06	B	12.0	97.06	S
	국립경국대학교	86.56	B	12.0	98.56	S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8.44	B	12.0	100.44	S
	국립순천대학교	93.30	A	10.0	103.30	S

주: 1) 등급적용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한 것이며, 실제 성과평가에서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1. 각 대학 유형별 평가점수가 낮은 순서로 정렬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성평가 예산액은 대학 유형별로 배분된 후, 동일 유형 내에서 예산액이 배분되므로, 가산점 적용 여부에 따라 대학 유형별 배분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는 경우 정성성과 사업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C등급을 받는 경우 정성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차년도 정량성과 사업비 30%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활용되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유형의 대학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가산점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49)]

○ 교육부는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이 42.7%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동 사업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실제 집행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 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 연구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연구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실험 윤리기준에 적합한 동물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49)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2,156억 6,600만원으로, 2,135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21억 5,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0%임.

< 2025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95,666	215,666	-	215,666	213,512	-	2,154	99.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11,029	131,029	-	131,029	130,113	-	916	99.3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84,637	84,637	-	84,637	83,399	-	1,238	98.5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 관리 철저 및 집행 수요를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각 대학은 장비를 확충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025년 사업에서 교육부는 예산현액 2,156억 6,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대학에서는 68.8%인 1,48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특히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내역사업 중 동물실험실 구축 세부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42.7%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2025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결산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연구용 기자재 확충	84,521	73,740	87.2	10,265	516
	고가첨단기자재 확충	38,938	27,406	70.4	11,217	315
	의대 교육여건 개선	7,570	6,089	80.4	1,396	85
	소계	**131,029**	**107,235**	**81.8**	**22,878**	**916**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실험실 시설개선	6,050	4,171	68.9	1,843	36
	안전장비 확충	6,118	5,914	96.7	193	11
	동물실험실 구축	72,469	30,967	42.7	40,311	1,191
	소계	**84,637**	**41,052**	**48.5**	**42,347**	**1,238**
합계		**215,666**	**148,287**	**68.8**	**65,225**	**2,154**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은 대학 동물실험실의 시설과 사육·실험 방법 등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동물실험을 위한 기반구축과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 동안 9개 거점대에 동물실험실을 신축(충북대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부지 변경, 설계 및 공사 관련 절차 진행, 동절기 공사 중지, 총사업비 조정 등의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고 사업비도 이월하여 집행됨.

< 동물실험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기투자	향후 계획		비고
	당초	변경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93,454	153,334	26,493	13,627	
부산대	'21~'24	'21~'25	23,847	23,847	-	-	'25.9. 준공
전북대			22,821	22,821	-	-	'25.12. 준공
전남대			23,890	23,890	-	-	'25.7. 준공
경북대			24,208	24,208	-	-	'25.12. 준공
강원대	'22~'24	'22~'26	22,570	16,321	6,249	-	'26.4. 준공 (장비 구매 중)
제주대			23,058	16,639	6,419	-	'26.6. 준공 (장비 구매 중)
경상국립대	'23~'25	'23~'27	24,812	10,987	13,825	-	공사 중 ('26.11. 준공예정)
충북대		'23~'25	12,096	12,096	-	-	'26.4. 준공 (장비 구매 중)
충남대		'23~'28	16,152	2,525	-	13,627	설계 중

자료: 교육부

❑ 2025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473억 5,600만원과 해당 연도 예산액 724억 6,9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1,198억 2,500만원 중, 766억 8,7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64.0%로 저조하게 나타남.

각 대학의 실집행률을 사업시작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1년에 시작한 부산대 등 4개교는 7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2년에 시작한 강원대와 제주대는 각각 38.0%, 53.8%,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는 40% 미만이고,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충북대는 56.7%를 나타내어, 사업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실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동물실험실 구축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기간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부산대	'21~'24	'21~'25	9,389	9,159	18,548	15,955	86.0	2,593	0
전북대			10,247	7,584	17,831	13,596	76.2	4,235	0
전남대			8,157	9,009	17,166	12,975	75.6	3,017	1,174
경북대			7,881	9,376	17,257	12,719	73.7	4,523	15
강원대	'22~'24	'22~'26	3,797	9,596	13,393	5,087	38.0	8,306	0
제주대			4,635	9,914	14,549	7,831	53.8	6,718	0
경상국립대	'23~'25	'23~'27	1,000	9,462	10,462	3,423	32.7	7,037	2
충북대		'23~'25	1,747	6,369	8,116	4,598	56.7	3,518	0
충남대		'23~'28	503	2,000	2,503	503	20.1	2,000	0
합계			**47,356**	**72,469**	**119,825**	**76,687**	**64.0**	**41,947**	**1,19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및 2023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학의 경우 공사비 집행 등으로 향후 실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북대 동물실험실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강원대 등 4개 대학의 동물실험실 신축 사업은 당초 완료시점보다 2~3년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추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충남대의 경우 부지 변경과 당초 계획 수립 대비 증가한 공사비 등의 조정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5억 300만원만 집행되고 2025년에 교부된 예산 20억원은 전액 이월된 바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실제 집행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8) 국립대학 시설확충[50]

○ 교육부는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43.4%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추진경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6.5%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액의 이자수입을 해당 사업에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등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의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대학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충사업, 보수사업, 정책사업, BTL정부지급금, 의대여건개선 등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50)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조 1,185억 8,600만원으로, 1조 1,034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 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8.6%임.

<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115,224	3,362	1,118,586	1,103,437	240	14,909	98.6
○ 확충사업	354,200	354,200	134	354,334	346,917	-	7,417	97.9
○ 보수사업	379,650	536,165	3,167	539,332	537,514	240	1,578	99.7
○ 정책사업	93,493	93,493	61	93,554	92,543	-	1,011	98.9
○ BTL정부지급금	122,366	122,366	-	122,366	117,910	-	4,456	96.4
○ 의대여건개선	143,200	9,000	-	9,000	8,553	-	447	95.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업 추진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 필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교부하고, 각 대학은 필요한 시설 확충·보수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2025년 사업에서 교육부는 예산현액 1조 1,185억 8,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대학에서는 59.3%인 6,63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4,398억 3,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9억 900만원은 불용함.

실집행률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확충사업 43.4%, 보수사업 63.0%, 정책사업 51.7%, BTL정부지급금 95.4%, 의대여건개선 59.4%로, 확충사업의 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하며, 확충사업 중에서는 계속사업의 실집행률이 43.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확충 사업	신규	9,880	4,487	45.4	5,248	145
	계속	339,386	146,606	43.2	185,565	7,215
	비품	5,068	2,796	55.2	2,215	57
	소계	**354,334**	**153,889**	**43.4**	**193,028**	**7,417**
보수 사업	일반보수	536,014	336,634	62.8	197,945	1,435
	산업재해예방	2,278	2,234	98.1	0	44
	시설사업관리용역	1,040	701	67.4	240	99
	소계	**539,332**	**339,569**	**63.0**	**198,185**	**1,578**
정책 사업	석면제거	29,888	11,331	37.9	18,422	135
	신재생에너지	9,000	7,051	78.3	1,878	71
	BEMS	16,000	7,470	46.7	8,428	102
	안전인증	1,505	1,038	69.0	265	202
	드라이비트	20,000	14,504	72.5	5,219	27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161	6,972	40.6	9,965	224
	소계	**93,554**	**48,366**	**51.7**	**44,177**	**1,011**
BTL정부지급금		**122,366**	**116,678**	**95.4**	**1,232**	**4,456**
의대여건개선		**9,000**	**5,342**	**59.4**	**3,211**	**447**
합계		**1,118,586**	**663,844**	**59.3**	**439,833**	**14,90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확충사업 중 계속사업에서 실집행률이 10% 이하로 저조한 사업에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4건), 공학관, 의과대학 등 대학 건물 증·개축(5건), 신약개발센터, 동물백신 실증센터 등 연구개발센터 신축(4건), 지역협력 복합센터 등 교육문화 시설 신축 등(8건) 주로 대학의 교육·연구를 위한 건물 확충 사업이 포함되었고,

동 사업의 주된 집행부진 사유는 내부협의 지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조정, 사업에 필요한 검토기간 등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확충(계속)사업 집행부진 사유 >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학교명	사업명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집행부진 사유
반도체 (4)	거점	충남대	4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6,325	0	0.0	• 내부협의 지연
	거점	전남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6,000	0	0.0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거점	경북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5,699	0	0.0	• 청정실(클린룸) 규모 및 성능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거점	부산대	권역별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315	0	0.0	• 내부협의 지연
대학건물 (5)	거점	부경대	공학관 증축	4,230	0	0.0	• 행정기간 소요(총사업비 협의 조정)
	거점	충북대	의과대학 1호관 리모델링	3,605	0	0.0	• 내부협의 지연
	거점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	2,298	0	0.0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조정)
	거점	전북대	예술대 등 2개동 개축	2,205	83	3.8	• 내부협의 지연
	특수	한국방송대	영남권 지역대학 구관 리모델링	2,361	229	9.7	• 내부협의 지연
연구개발 (4)	거점	경북대	신약개발센터 신축	14,281	0	0.0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조정)
	거점	국립경국대	동물백신 실증센터 신축	6,042	6	0.1	• 내부협의 지연
	거점	충남대	스마트영농창업융복합 기술혁신센터 신축	6,968	12	0.2	• 내부협의 지연
	거점	전북대	합동연구동 신축	2,154	81	3.7	• 내부협의 지연
교육문화등 (8)	지역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신축	593	0	0.0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거점	부산대	변전실 이전재배치	4,737	13	0.3	• 행정기간 소요(총사업비 협의 조정)
	거점	충북대	CBNU문화체험관(박물관) 신축	3,900	35	0.9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조정)
	거점	경북대	상주 창의융합교육관 신축	4,148	87	2.1	• 내부협의 지연
	거점	충남대	디지털융합인재양성관 신축	10,220	289	2.8	• 내부협의 지연
	지역	부경대	글로컬복합문화센터 신축	616	35	5.6	• 행정기간 소요(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조정)
	특수	목포해양대	지역협력 평생해양안전교육관 신축	3,000	207	6.9	• 내부협의 지연
	특수	한국교원대	AI-EduTech 융합교육센터 신축	1,928	192	10.0	• 내부협의 지연

주: 1. 구분된 사업 내에서, 실집행률 저조 - 실집행액 저조 - 예산현액 고액 순으로 정렬
2. 학교 유형은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 편성(안)」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확충사업 예산은 거점대 및 지역중심대의 경우 포뮬러 배분 지표에 따라 배분되었고, 교육대 및 특수목적대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이 배분되었음.

<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확충사업 예산 배분기준 >

구분	배분기준
거점대(9개교), 지역중심대(13개교)	• 확충사업을 일정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일반대 22개교는 포뮬러 배분 지표에 따라 대학별로 한도액 배분 * 포뮬러 배분 지표 : 기본액(20%) + 학생수(20%) + 시설보유도(30%) + 공간활용평가(10%) + 집행율(20%)
교육대(10개교), 특수목적대(5개교)	• 중・소규모 대학 15개교는 사업 진행현황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액 지원

자료: 교육부

❑ 확충사업의 예산 배분기준은 교육대 및 특수목적대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거점대 및 지역중심대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설확충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실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확충사업 중 계속사업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실소요에 포함되어 예산 편성 및 배분시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비의 연내 집행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중 확충사업의 계속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2025년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4개 대학에 183억 3,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연계하여 하나의 완성된 공동연구소 형태로 운영하려는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권역별 공동연구소 건립 대학은 2023년(Ⅰ~Ⅳ권역) 및 2024년(Ⅴ·Ⅵ권역)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각 권역별로 특화분야가 설정되어 있음.

< 반도체 공동연구소 대학별 특화 분야 >

구분	중앙	지역 거점					
	서울대	전남대 (Ⅰ권역)	부산대 (Ⅱ권역)	경북대 (Ⅲ권역)	충남대 (Ⅳ권역)	전북대 (Ⅴ권역)	강원대 (Ⅵ권역)
공정특화 분야	총괄	패키징	박막, 배선	식각	증착	패터닝	설계, 테스트
응용특화 분야		시스템	차량	전력	나노	스마트 센서	바이오

자료: 교육부

❑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 선정대학은 2025년까지, 2024년 선정대학은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규모 변경, 필요 시설 관련 적정성 검토 기간 소요, 설계 공모 유찰 등으로 지연되어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남대 등 2023년에 선정된 4개 대학에서는 2023년에 교부된 설계비가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집행되어 2024년 및 2025년에 교부된 공사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전북대 등 2024년에 선정된 2개 대학에서는 2024년에 교부된 설계비가 2025년까지 집행되고 있으나, 전북대의 경우 건물배치 조정, 층고 상향 등 설계 변경으로 2025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전체 실집행률은 6.6%로 낮게 나타남.

<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대학명 (권역)	사업기간		공정	교부액 및 실집행액								
	당초	변경		2023		2024		2025		합계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전남대 (1권역)	'23 ~'25	'23 ~'28	설계	679	-	이월	532	이월	113	12,419	655	5.3
			공사	-	-	5,740	0	이월	10			
						-	-	6,000	0			
부산대 (2권역)			설계	679	-	이월	611	이월	0	6,419	611	9.5
			공사	-	-	5,425	0	이월	0			
						-	-	315	0			
경북대 (3권역)			설계	679	475	이월	204	-	-	12,118	679	5.6
			공사	-	-	5,740	0	5,699	0			
충남대 (4권역)			설계	679	263	이월	200	이월	213	12,660	706	5.6
			공사	-	-	5,656	9	이월	21			
						-	-	6,325	0			
전북대 (5권역)	'24 ~'27	'24 ~'28	설계	-	-	679	0	이월	7	679	7	1.0
강원대 (6권역)			설계	-	-	679	48	이월	253	679	301	44.3
합계				**2,716**	**738**	**23,919**	**1,604**	**18,339**	**617**	**44,974**	**2,959**	**6.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은 건립 후에 교과과정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재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액의 이자수입 용도 제한 필요

❑ 최근 3년간(2023~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모두 교부하였으나, 대학의 실집행률은 2023년 77.3%, 2024년 60.1%, 2025년 59.3% 등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각 대학에서는 교부된 예산을 집행한 후 불용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을 이월하였는데, 그 규모는 2023년 2,194억 500만원, 2024년 3,959억 8,900만원, 2025년 4,398억 3,300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3	1,001,853	1,001,853	144	1,001,997	1,001,997	774,822	77.3	219,405	7,770
2024	1,005,309	1,005,309	150	1,005,459	1,005,459	604,671	60.1	395,989	4,799
2025	1,092,909	1,115,224	3,362	1,118,586	1,118,586	663,844	59.3	439,833	14,90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라 함)」에 따르면, 이월금 및 이자수입은 자체수입금에 포함되는 세입으로 국립대학은 이를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확충 목적으로 지원된 경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51]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의 이월액은 해당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각 대학에서는 이자수입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의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대학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대학회계 세입 및 세출 >

구분	내용
세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 자체수입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 이월금 /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이자수입 / –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 –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 그 밖의 수입
세출	•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

자료: 「국립대학회계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51)「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4조(국가 지원금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하 "국가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의 이월액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 대학에서는 이자수입을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 사업 예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다만 최근 3년간 국립대학의 국비 기준 전체 이자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에 72억 3,2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 106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88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으로 2025년에 교부된 예산의 이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52]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에서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통해 일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발생한 이월액의 이자수입을 해당 사업에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등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의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2) 「국립대학회계법」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이자수입 현황(국비 전체 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7,232	10,654	8,827
거점대 (9개교)	전북대	1,494	1,729	1,802
	전남대	1,658	2,551	1,645
	경북대	773	1,427	1,173
	충남대	421	825	735
	강원대	876	1,284	697
	제주대	663	757	508
	충북대	106	453	221
	경상국립대	66	28	55
	부산대	50	40	45
지역중심대 (13개교)	군산대	23	26	284
	금오공대	7	5	164
	국립공주대	489	401	161
	한밭대	23	67	161
	순천대	19	19	42
	서울과기대	111	41	25
	부경대	16	15	22
	창원대	5	5	20
	강릉원주대	6	17	18
	국립경국대	9	14	13
	목포대	78	68	12
	한국교통대	8	14	11
	한경국립대	18	19	7
교육대 (10개교)	전주교대	4	7	270
	춘천교대	3	4	125
	진주교대	2	3	6
	광주교대	144	151	5
	서울교대	3	6	4
	청주교대	0	0	2
	공주교대	3	3	1
	경인교대	2	2	1
	부산교대	0	0	0
	대구교대	0	0	0
특수목적대 (5개교)	한국해양대	112	597	429
	한국교원대	0	0	118
	한국방송대	30	66	39
	한국체대	9	9	6
	목포해양대	1	1	0

주: 1. 학교 구분은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 편성(안)」 기준
2. 2025년 이자수입 고액 - 2024년 이자수입 고액 - 2023년 이자수입 고액 순으로 정렬
3. 이자수입 5억원 이상인 경우 음영 등으로 표기

자료: 교육부

9)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53]

○ ‘국립대병원 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은 2025년도 21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14개이고 이 중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연차별 사업추진 일정과 재원 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연례적 사업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20% 미만에 머물러 있음. 교육부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바,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현황과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사업은 국립대병원이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신축, 개·보수,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

53) 문의: 02-6788-5185

업으로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 장비구입 및 교체사업, 정책사업이 있음.

< 국립대병원 지원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5년 예산액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	국립대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74,566
장비구입 및 교체사업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진료·연구·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	15,503
정책사업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	26,988

(자료 : 교육부)

(2) 결산개요

❑ 202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1,170억 5,700만원으로 518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618억 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3억4,6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44.3%임.

< 202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대병원 지원	117,057	-	117,057	51,816	61,895	3,346	44.3%
○ 시설확충 및 보수	74,566	-	74,566	30,906	41,615	2,045	41.4%
○ 장비구입 및 교체	15,503	-	15,503	11,622	2,741	1,140	75.0%
○ 정책사업	26,988	-	26,988	9,288	17,539	161	34.4%

나) 검토의견

(1) 국립대병원 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의 집행부진 관리 강화 필요

❑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은 14개 국립대(치과)병원 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21개 사업(계속사업 12개, 신규사업 9개)을 대상으로 74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 출연사업[54]으로 정부 출연 규모는 「국립대학병원 국고지원」에 따라 병원의 신축, 시설 증축 및 개축 경우 총사업비의 25%(교육・연구 시설은 75%), 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745억 6,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88억 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8.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21개 사업(계속사업 12개, 신규사업 9개) 중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14개이고 이 중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11개

5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계속사업 12개 중 8개 사업은 2025년도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실집행률 0%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는 ① 칠곡경북대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②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임상연구동·의생명연구원 건립, ③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④ 전남대학교병원 전문진료센터 조성, ⑤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디지털항암센터 건립, ⑥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⑦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⑧ 세종충남대병원감염병전담외래센터 및 교육연구공간확충 사업이 있음.

또한, 2025년도 신규사업 9개 중 3개 사업도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① 제주대학교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② 충북대학교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③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사업이 이에 해당함.

❑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는 건축기본계획 용역 수행기간 지연, 총사업비 협의·조정 지연, 조달청 적정성 검토 소요, 부지 확보 지연 등 사업 추진 절차의 지연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국립대병원 시설확충 및 보수 사업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 시설확충 및 보수		74,566	28,809	38.6%	
계속	강원대병원 강원권역공공의료센터 건립	588	405	68.9%	-낙찰차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 교부
계속	경북대병원 주차환경 개선	431	431	100%	-
계속	칠곡경북대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2024년~2026년)	1,950	0	0%	-건축기본계획 용역 수행기간이 당초 계획('24.1.~3.) 대비 지연(~'24.8.), 교통영향평가 보완심의('25.7) 등에 따른 설계기간 지연
계속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임상연구동·의생명연구원 건립 (2023년~2028년)	690	0	0%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비 대폭 증액으로 인해 사업 축소 검토를 위해 설계 중지('24.7.),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총사업비 협의 조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24.8.~'25.12.)
계속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2022년~2029년)	25,430	0	0%	-4차례 시설공사 유찰('23.2.~'24.2.),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 변경(24.3.),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본설계('24.7.) 수행 등으로 전체사업 일정 지연
계속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	875	432	49.4%	-소아별관 설계 적정성 검토('25.2., '25.6.) 및 단가 적정성 검토('25. 11.)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기간 소요
계속	전남대병원 전문진료센터조성	2,566	0	0%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 및 비상경영으로 사업 잠정 중단('24.2.~'25.2.)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 및 부처 협의 진행으로 추진 지연('25.4.~12.)
계속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디지털항암센터 건립	2,030	0	0%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1차: '24.6., 2차: '25.2.) 및 기본설계 완료('25.9.) 이후 조달청 적정성 검토 진행('25.9.~12.)으로 집행 지연
계속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22,940	22,940	100%	-
계속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3,100	0	0%	-총사업비 조정(증액)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결과('25.5.,조정액 대비 29.6% 감액 반영)에 따라 후속 절차 논의에 시일 소요('25.5.~'26.1.)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계속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4,274	0	0%	-부지 소유권 확보 필요성이 대두('25.7.)되며 부지 소유주인 서울대학교와 논의('25.7.~'25.10.) 후, 부지 일부 양여(50%)에 합의('26.1.) 절차에 시일 소요
계속	세종충남대병원감염병전담외래센터 및 교육연구공간확충	1,862	0	0%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신규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건립	500	300	60%	-전기설비법 개정(24.08)에 따라 지하층 규모 변경 검토(지하2층→지하3층)로 인하여 당초 계획 지연 *건축기획용역('25.5월~10월) → 설계공모 진행('25.10월~12월) → 설계용역 계약('25.12월)
신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심혈관질환 대응사업	985	985	100%	-
신규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500	0	0%	-사업부지 내 묘지 수용 및 보상(5기중 4기 수용, 1기는 무연고묘지로써 처리 절차 진행)으로 일정 지연('25.1.~9.)
신규	충남대병원 임상연구교육실습동 신축사업	500	87	17.4%	-기 선정된 부지(제2주차장)에 대한 부적합 문제(주변건물 영향 등)로 부지 재검토('25.8월 초 부지 변경 결정) 및 사업부지 변경 관련 사업계획변경 승인('25.12.)에 시일 소요
신규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500	0	0%	-총사업비 심의 완료('25.3)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5.6.~7), 건축설계 공모('25.10.~12.)에 시일 소요
신규	충북대병원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375	0	0%	-총사업비 심의 완료('25.3.)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5.7.~8.) 후, 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 제작에 시일 소요('25.9.~12.)
신규	경북대치과병원 장애인 편의 및 노후안전시설 개선	1,177	1,168	99.2%	-
신규	부산대치과병원 노후시설 및 설비개선	1,800	1,800	100%	-
신규	서울대치과병원 연구동 리모델링	1,493	261	17.5%	-신규사업 총사업비 심의 확정('25.5.) 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25.6~7), 설계용역 계약('25.11.) 등에 시일 소요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시설공사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5년도의 경우 상당수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었음에도 사업 추진 지연으로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미교부)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바[55],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집행 부진이 누적되고 있어 예산의 적시성과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어,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56], 사업 추진 이후 예산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에는 예산액 79억 9,200만 원 중 30억 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7.5%에 그쳤고, 2023년 예산액 52억 1,50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월액 3천만 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예산액 28억 4,3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5년에도 이월액 42억 1,700만 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예산액 254억 3,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바,

55) 2025년도 편성된 예산액 중 국립대학병원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56)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 ○ 사업기간 : 2022 ~ 2029년
- ○ 총사업비 : 452,131백만원(국고 205,720백만원, 자체 246,411백만원)
- ○ 사업규모 : 연면적 117,338㎡(지하 1층 ~ 지상 12층)
- ○ 사업내용 : 경기 서남권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실집행률은 10.3%에 그치고 있음[57].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사업” 역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58] 지속적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에는 예산액 16억 6,300만 원 중 4억 5,1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27.1% 수준이었고, 2023년에는 이월액 3억 4,900만 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예산액 21억 4,7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이월액을 제외한 해당연도 예산액 45억 4,200만원과 42억 7,4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바,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실집행률은 8.0%에 그치고 있음[59].

<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실집행액		연도별 실집행률(B/A)
			이월포함	이월제외(B)	
2022년	7,992	7,992	-	3,000	37.5
2023년	5,215	5,215	-	-	-
2024년	2,843	2,843	30	-	-
2025년	25,430	-	4,217	-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실집행액(B)		누적 실집행률(B/A)
			이월포함	이월제외	
’22～’25 누적합계	41,480	16,050	4,247	3,000	10.3

57)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4차례 시설공사 유찰, 기본설계 수행 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으나, 2026년 5월 기준 이월금 및 2026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714억원)하였다는 설명임.

58)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사업>
- ○ 사업기간 : 2022 ~ 2027년
- ○ 총사업비 : 36,208백만원(국고 27,156백만원, 자체 9,052백만원)
- ○ 사업규모 : 연면적 9,046.13㎡(지하 1층 ~ 지상 3층)
- ○ 사업내용 : 환자 맞춤형 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진료환경 구축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치의학 교육센터 조성

59) 교육부는 동 사업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2026년도에는 사업비를 미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사업 결산 현황>

('25.12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실집행액		연도별 실집행률(B/A)
			이월포함	이월제외(B)	
2022년	1,663	1,663	-	451	27.1
2023년	2,147	2,147	349	-	-
2024년	4,542	4,542	22	-	-
2025년	4,274	-	190	-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실집행액(B)		누적 실집행률(B/A)
			이월포함	이월제외	
'22~'25 누적합계	12,626	8,352	561	451	8.0

(자료 : 교육부)

❑ 이처럼 장기 계속사업은 수년간 예산이 편성되고 이월예산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집행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업 추진 여건과 준비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60].

❑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연차별 사업 추진일정과 재원 소요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과도한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61].

60) 교육부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유찰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전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임.
61)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26.3.)을 마련하고, 월별 실집행 실적 점검, 주기적인 내역사업 관리 등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는 설명임.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 바,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립대학병원 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현황과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사업 추진상황과 집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은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개 병원을 선정하여 2030년까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건립(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2021년에 제주대·충남대병원, 2022년에 전남대·경북대병원, 2023년에 서울대·전북대병원, 2024년에 부산대·충북대병원, 2025년에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선정되어, 2026년 현재 2개 병원(제주대·충남대병원)이 완공·개소하고 8개 병원이 건립 추진 중임.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경과>

○ 2021년 ~2025년까지 매년 2개 병원 선정 추진 – ('21년) 충남, 제주, ('22년) 전남, 경북, ('23년) 서울, 전북, ('24년) 부산, 충북, ('25년) 강원, 경상 ○ 2022.1. 제주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 ○ 2024.12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 ○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잔여 2개병원(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지정 ※ 완공(예정) 시기 : ('22) 제주대병원 → ('24) 충남대병원 → ('26) 경북대병원 → ('27) 서울대·전남대병원 → ('28) 부산대·전북대·충북대병원 → ('29) 강원대병원 → ('30)경상국립대병원

(자료 : 교육부)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 출연사업[62]으로 정부 출연 규모는 「국립대학병원 국고지원」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사업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1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연례적 사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20% 미만에 머물러 있음.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교부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	6,049	-	6,049	6,049	2,557	42.3%
2022	11,114	-	11,114	11,114	1,712	15.4%
2023	8,557	-	8,557	8,557	1,197	14.0%
2024	17,672	-	17,672	17,672	2,830	16.0%
2025	23,048	-	23,048	5,509	4,041	17.5%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8개 사업(계속사업 6개, 신규사업 2개)을 대상으로 23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액 중 실집행액은 40억 4,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17.5%로 매우 저조하였음. 특히 2025년도 계

62)「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속사업인 전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신규사업인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전액 미교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실집행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남.

예산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선정 단계에서 계획했던 사업부지 변경, 사업방식 등 사업계획 변경, 총사업비 조정, 조달청 적정성 검토 소요 등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라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63].

< 2025년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23,048**	**4,041**	**17.5%**	
계속	칠곡경북대병원	5,080	3,777	74.4%	-'25년에 공사(건축) 및 건설사업관리 기성만 집행되어 일시적인 집행 부진 발생
계속	전남대병원	4,172	-	-	-당초 원외 신축 예정('22.4월)이었던 사업계획을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면서,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24.9~'25.11월)에 시일 소요
계속	전북대병원	2,400	-	-	-기 선정 부지 변경('25.1월)으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침서 수정('25.1.~3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설계용역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일정 순연

63) 교육부는 시설사업 특성상 설계적정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각종 예비인증 및 평가(환경, 교육, 재해, 지하안전, 문화재, 경관 등)를 수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 및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계속	분당서울대병원	8,396	-	-	-'23.4월 사업 선정 후 문화재 심의 부결로 인한 기본계획 변경(~'23.9월)과 설계 결과 면적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설계 일정이 지연 -중간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회신('25.1월)→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총사업비 협의 조정('25.3월), →실시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회신('25.7월)→공사비 증액 총사업비 협의 조정('25.10월)→조달청 공사계약 요청 완료('25.12월)
계속	양산부산대병원	1,000	160	16%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에 계획('25.9.~10월)보다 시일이 더 소요('25.9~'25.12월되어 중간설계 지연
계속	충북대병원	1,000	104	10.4%	-설계 공모 및 계약('25.2.~5.),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25.9~11)에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 지연
신규	경상국립대병원	500	-	-	-사업계획 수립 후('25.6월), 사업부지 변경 조정*으로 일정 지연 * (변경 전) 경상국립대 의대 학습관 및 임상기술센터 → (변경 후)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신규	강원대병원	500	-	-	-사업계획 수립('25.5월) 이후 총사업비 심의('25.8월 완료)에 따른 일정 소요 -총사업비 심의 완료 후, 착수한 건축기획용역('25.10월~'26.2월) 차년도 이월로 집행 부진 발생

❑ 각 병원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사업방식,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또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임상교육훈련

센터 건립이 늦어져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제공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교육부는 병원별 공정관리와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64].

6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바,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임상교육센터 건립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현황과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65]

○ 교육부는 중도 포기로 발생한 계획액을 다른 사업에 배정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함으로써 중도 포기 등으로 잔여 계획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잔여 계획액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계획액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2861-301)은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환경이 좋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는 것임.

65)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계획현액은 297억 3,7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은 100.0%임.

< 2025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29,737	-	29,737	29,737	-	-	100.0
○ 기타 민간융자금	29,737	-	29,737	29,737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계획액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공공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으로 조성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사학기관 또는 기숙사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66]라 함)에 융자하면, 해당 사학기관 또는 SPC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한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여, 재단이 공공기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동 사업은 지원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에듀21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으로 구분됨.[67]

< 행복기숙사 유형별 사업 개요 >

구분	행복기숙사(사립) (2012년～계속)	행복기숙사(연합) (2012년～계속)	에듀21기숙사 (2011년～계속)	기숙사형 청년주택 (2019년～계속)
사업 내용	대학 내 부지에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를 건립·운영	대학 내·외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숙사를 건립·운영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민간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	LH 매입주택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기숙사를 운영
건립 부지	대학 내 교지	국·공유지, 국·공립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대학 내 교지	대학 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원 대상	행복기숙사(사립) SPC 또는 사학기관	행복기숙사(연합) SPC	민간투자사업 SPC	행복기숙사(연합) SPC
지원 방식	행복기숙사(사립) SPC 또는 사학기관 직접 융자	행복기숙사 SPC에 융자	민자기숙사 SPC에 융자	행복기숙사 SPC에 융자
융자 조건	고정금리(국토교통부 고지금리 1.5% + 가산금리 0.262%), 3년 거치 27년 원리금 균등상환 * 주택도시기금 기준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6)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67) 동 사업으로 80개 기숙사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고 수용규모는 5만 2,596명임(2026.1. 기준)

❑ 2025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은 당초 한국체대 등 6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동명대의 사업 포기 및 대전의 사업 지연으로 4개 사업만 수행되었고, 사업 포기·지연으로 발생한 잔여 계획액은 한국체대 및 부천대 사업에 추가 배정되었음.

< 2025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 계획액 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배정액	증감	비고
연합	한국체대	5,984	8,430	**2,446**	사업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사립	인하대	6,629	6,629	0	-
사립	아주대	3,789	3,789	0	-
사립	부천대	8,377	10,889	**2,512**	사업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사립	동명대	3,675	-	△3,675	사업 포기로 미배정
연합	대전	1,283	-	△1,283	사업 지연으로 미배정
합계		**29,737**	**29,737**	**0**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에 계획액이 배정된 4개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누계 기준으로 2020년에 신규 편성된 한국체대 사업은 배정률 100.0%, 실집행률 72.4%, 2023년에 신규 편성된 인하대 사업은 배정률 29.0%, 실집행률 31.6%, 아주대 사업은 배정률 27.6%, 실집행률 19.0%, 2025년에 신규 편성된 부천대 사업은 배정률 85.7%, 실집행률 49.9% 로 각각 나타남.

이 중 실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한국체대와 부천대 사업에 잔여 계획액이 배정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에 추가 배정된 금액보다 미집

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배정액이 실집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액 실집행 내역(2025년 계획액 배정) >

(단위: 백만원, %)

구분			공공기금 총배정액 (A)	배정액					실집행액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4	2025	미집행액	추가배정액
연합	2020 신규	한국체대	33,812	단년도	25,382	0	0	8,430	단년도	1,704	823	6,106	15,834	-	-
				누계 (B)	25,382	25,382	25,382	33,812	누계 (C)	1,704	2,527	8,633	24,467	9,345	2,446
				배정률 (B/A)	75.1	75.1	75.1	**100.0**	실집행률 (C/B)	6.7	10.0	34.0	**72.4**	-	-
사립	2023 신규	인하대	86,199	단년도	-	4,310	14,070	6,629	단년도	-	3	503	7,395	-	-
				누계 (B)	-	4,310	18,380	25,009	누계 (C)	-	3	506	7,901	-	-
				배정률 (B/A)	-	5.0	21.3	**29.0**	실집행률 (C/B)	-	0.1	2.8	**31.6**	-	-
사립	2023 신규	아주대	47,713	단년도	-	2,686	6,700	3,789	단년도	-	3	421	2,082	-	-
				누계 (B)	-	2,686	9,386	13,175	누계 (C)	-	3	424	2,506	-	-
				배정률 (B/A)	-	5.6	19.7	**27.6**	실집행률 (C/B)	-	0.1	4.5	**19.0**	-	-
사립	2025 신규	부천대	12,700	단년도 (B)	-	-	-	10,889	단년도 (C)	-	-	-	5,438	5,451	2,512
				배정률 (B/A)	-	-	-	**85.7**	실집행률 (C/B)	-	-	-	**49.9**	-	-

주: 배정률은 공공기금총배정액 대비 해당 연도 누적 배정액의 비율, 실집행률은 해당 연도 누적 배정액 대비 누적 실집행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최근 3년간 행복기숙사지원사업에서 2023년 2건 2024년 1건 등 총 3건의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사업에 배정되었던 계획액은 회수 후 다른 사업에 배정되었는데 해당 계획액이 배정된 사업에는 인하대, 아주대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중단 및 사업비 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정액				사업중단		회수 후 배정				
		2019	2020	2021	합계	연도	사유	연도	구분		배정액	합계
사립	동아보건대	-	-	8,515	8,515	2023	러우전쟁에 따른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대학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중단	2024	연합	동소문동	3,413	8,515
									연합	세종공동캠퍼스	2,010	
									사립	인하대	3,092	
연합	부경대	17,514	17,911	-	35,425	2023	건립 부지 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타당성 문제 발생으로 사업 중단	2026	연합	서울과기대	4,829	35,425
									연합	인천대	12,120	
									사립	인하대	18,476	
연합	대구교대	15,824	16,182	-	32,006	2024	수용규모 축소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타당성 문제 발생으로 사업 중단	2026	사립	인하대	12,119	32,006
									사립	아주대	17,269	
									사립	부천대	1,811	
									연합	대방	807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교육부와 재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계획액을 불용하지 않고, 사업별 대외환경,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에 추가로 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액에 추가로 계획액을 배정한 사업에서 추가배정액이 집행되지 못한 바 있으므로, 교육부와 재단은 지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함으로써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계획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잔여 계획액에 대해서는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 계획액이 배정된 사업 중 인하대와 아주대 사업의 누계 기준 실집행률은 각각 31.6%, 19.0%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

계획액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배정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2025년에 실집행이 이루어진 사업 중 용인대와 인천대 사업의 실집행률도 각각 21.4%, 39.9%로 저조하게 나타남.

< 2025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액 실집행 내역(2025년 계획액 미배정) >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보조금 총배정액 (A)	배정액					실집행액				
					~2022	2023	2024	2025		~2022	2023	2024	2025
사립	2021 신규	대진대	29,785	단년도	27,085	0	2,700	0	단년도	0	9,366	18,343	2,076
				누계 (B)	27,085	27,085	29,785	29,785	누계 (C)	0	9,366	27,709	29,785
				배정률 (B/A)	90.9	90.9	100.0	**100.0**	실집행률 (C/B)	0.0	34.6	93.0	**100.0**
사립	2022 신규	용인대	17,640	단년도	8,820	8,820	0	0	단년도	0	151	258	3,370
				누계 (B)	8,820	17,640	17,640	17,640	누계 (C)	0	151	409	3,779
				배정률 (B/A)	50.0	100.0	100.0	**100.0**	실집행률 (C/B)	0.0	0.9	2.3	**21.4**
연합	2022 신규	세종공동캠퍼스	38,043	단년도	22,175	13,858	2,010	0	단년도	228	7,586	19,298	10,931
				누계 (B)	22,175	36,033	38,043	38,043	누계 (C)	228	7,814	27,112	38,043
				배정률 (B/A)	58.3	94.7	100.0	**100.0**	실집행률 (C/B)	1.0	21.7	71.3	**100.0**
연합	2022 신규	인천대	43,630	단년도	11,512	16,618	0	0	단년도	3	561	4,757	5,899
				누계 (B)	11,512	28,130	28,130	28,130	누계 (C)	3	564	5,321	11,220
				배정률 (B/A)	26.4	64.5	64.5	**64.5**	실집행률 (C/B)	0.0	2.0	18.9	**39.9**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상의 4개 사업단에서는 설계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비가 대규모로 배정되었고 사업 초기 주민 민원 발생(인하대), 지자체 건축허가 지연(아주대)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착공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실집행률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인하대와 아주대 사업의 경우 3차연도인 2025년에 배정률이 각각 29.0%, 27.6%로 배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집행률이 각각 31.6%, 19.0%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다하게 배정된 계획액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교육부와 재단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계획액 집행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비[68)]

○ 법인세 납부를 위해 연례적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기타경비(2976-200)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비목으로 구성됨.

68) 문의: 02-6788-5189

(2) 결산개요

❑ 2025년도 계획액은 16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8억 300만원이 증액변경되어 계획현액은 35억 200만원이며, 이 중 34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5,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8.3%임.

< 2025년도 기타경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기타경비	1,699	1,803	3,502	3,444	-	58	98.3
○ 일반수용비	498	△155	343	328	-	15	95.6
○ 공공요금 및 제세	342	2,030	2,372	2,369	-	3	99.9
○ 특근매식비	4	△3	1	0	-	1	0.0
○ 임차료	90	10	100	100	-	0	100.0
○ 유류비	16	-	16	11	-	5	68.8
○ 시설장비유지비	80	△26	54	54	-	0	100.0
○ 복리후생비	140	-	140	139	-	1	99.3
○ 일반용역비	200	△10	190	184	-	6	96.8
○ 관리용역비	74	△51	23	22	-	1	95.7
○ 기타운영비	40	8	48	47	-	1	97.9
○ 국내여비	37	29	66	54	-	12	81.8
○ 국외업무여비	30	△29	1	0	-	1	0.0
○ 사업추진비	59	-	59	47	-	12	79.7
○ 자산취득비	89	-	89	89	-	0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2023~2025년) 기타경비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당초계획액은 13억 3,400만원이었으나 15억 8,100만원이 증액변경되어 29억 1,5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2024년에는 당초계획액이 19억 9,9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인 19억 8,900만원이 증액변경되어 39억 8,8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2025년에도 당초계획액은 16억 9,900만원이었으나 18억 300만원이 증액변경되어 35억 200만원으로 수정되었음.

수정계획액 기준 집행률은 2023년 95.1%, 2024년 99.6%, 2025년 98.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계획액 대비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의 차이인 부족액은, 2023년 14억 3,700만원에서 2024년 19억 7,9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17억 4,500만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경비 사업 결산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부족액 (A-D)
	당초 (A)	변경 (B-A)	수정 (B)					
2023	1,334	1,581	2,915	0	2,915	2,771	95.1	△1,437
2024	1,999	1,989	3,988	7	3,995	3,978	99.6	△1,979
2025	1,699	1,803	3,502	0	3,502	3,444	98.3	△1,745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경비 사업의 계획액 규모 변동과 관련하여 기금 계획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부족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액은 주로 통화금융기관예치 세부사업(9701-971)의 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2)에서 조정되었음.

< 기타경비 사업 기금 계획변경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 변경		
	당초 (A)	수정 (B)	변경 (B-A)	일자	종류	변경내역
2023	1,334	2,915	1,581	'23.4.11.	협의	• (9701-971-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통화금융기관예치금 → (2976-200-210-02) 기타경비-공공요금및제세
2024	1,999	3,988	1,989	'24.2.28.	협의	• (9701-971-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통화금융기관예치금 → (2976-200-210-02) 기타경비-공공요금및제세
2025	1,699	3,502	1,733	'25.3.13.	협의	• (9701-971-470-02) 통화금융기관예치-통화금융기관예치금 → (2976-200-210-02) 기타경비-공공요금및제세
			70	'25.7.17.	자체	• (2976-206-260-02) 대학재정분석-정책연구비 → (2976-200-210-02) 기타경비-공공요금및제세

주: 기타경비(2976-200) 세부사업 계획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기금 계획변경만 기재함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경비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 집행액인데, 법인세 집행액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7.1%에서 2024년에는 87.4%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8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경비 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C)	집행률 (C/B)	법인세 집행액 (D)	법인세 집행비중 (D/C)
	당초 (A)	변경 (B-A)	수정 (B)				
2023	157	1,639	1,796	1,737	96.7	1,339	77.1
2024	642	1,992	2,634	2,634	100.0	2,302	87.4
2025	342	2,030	2,372	2,369	99.9	2,032	85.8

주: 공공요금 및 제세 계획액에는 기타경비(2976-200) 세부사업 계획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기금 계획변경 및 세목조정에 따른 변경을 기재함

❑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이를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사업은 제외됨.[69]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사학기관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70] 재단

---

69)「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70)「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2014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이 수익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71])으로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고, 재단은 세무조사 시점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11년 법인세부터[72] 납부하고 있음.

- 법인세는 기타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계획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법인세의 실제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전년도 당초계획액을 기준으로 완료 소요와 공통절감 부분을 감액하고 추가 소요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어, 법인세 납부를 위해 10억원을 상회하는 기금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71) 국가데이터처(당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 p.670
64. 금융업: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7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기타경비 사업 계획액 편성 내역 >

구분	2023	2024	2025
산출 내역	• 1,334백만원 : '22년 기타경비 예산 1,574백만원 - 완료소요(법인세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17백만원 - 공통절감 및 집행부진감액 86백만원 + 직장공동어린이집 분담금 55백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5백만원 + 공통경비 인상 3백만원	• 1,999백만원 : '23년 기타경비 예산 1,334백만원 - 완료소요(공동어린이집 공사비 분담금 및 전기차 충전설비) 25백만원 - 공통절감 60백만원 + 법인세 및 전기요금 등 750백만원	• 1,699백만원 : '24년 기타경비 예산 1,999백만원 - 완료소요(공동어린이집 공사비 분담금 및 한일포럼 종료 예산 등) 144백만원 - 공통절감 158백만원 + 정원증원에 따른 리후생비 2백만원

자료: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단은 법인세액 중 일부를 해당연도에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고, 해당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는 차년도 2월 이후에 잔여액을 납부하고 있으므로,[73] 이러한 법인세 과세 및 납부 절차상 사전에 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획액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73)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연례적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와 재단은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하기 위해 집행액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수행되는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융자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4)]

---

74)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3. 학교정책실

<일반회계>

1)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75)]

○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가 미비한 민간위탁사업의 반복 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과용도서의 상시 수정·보완, 가격결정, 검정심사 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총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75) 문의: 02-6788-5184

(2) 결산개요

❑ 2025년도 본예산은 5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서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내역사업에서 18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은 38억 4,200만원임. 이 중 36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5%임.

< 2025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3,762	-	3,842	3,651	27	165	95.0
○ 교과용도서 개발	1,159	-	1,159	1,107	-	52	95.5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152	-	152	152	-	-	100.0
○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50	-	75	64	-	11	85.3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75	-	975	882	-	93	90.5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50	-	65	53	12	-	81.5
○ 검정심사 운영 지원	498	-	498	498	-	-	100.0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	140	117	15	8	83.6
○ 교과용도서 정책자문단 운영	40	-	40	40	-	-	100.0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738	-	738	738	-	-	100.0

나) 검토의견: 민간위탁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는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정심사 운영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등 5개 내역사업에 편성되었음. 2025년 기준 동 비목의 예산현액은 총 31억 7,400만원으로, 이 중 3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174	-	3,174	3,067	-	107
○ 교과용도서 개발	938	-	938	925	-	13
○ 교과용도서 우수 사례 발굴	25	-	25	24	-	1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75	-	975	882	-	93
○ 검정심사 운영지원	498	-	498	498	-	-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738	-	738	738	-	-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76]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는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됨. 이 중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

7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음. 또한 검정도서는 민간 출판사가 편찬하여 검정을 통해 사용되며, 검정심사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77]에 따라 수학·과학·정보 과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경제 과목은 한국개발연구원에, 그 외 과목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각각 위탁되고 있음.

이처럼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정심사 관련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위탁 근거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는 「정부조직법」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법령상 근거에 따른 위탁' 요건[78]을 충족하는 것임.

---

7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생 략)

3.「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수학·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과학기술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생 략)

78)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및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의 경우,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79]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에 대한 위탁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내역사업별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위탁기관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교과용도서 개발	초등 국정도서를 위탁하여 편찬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산학협력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외부기관의 수정 요구 및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반영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7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역사업은 2025년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되어 8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2021회계연도 이후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임.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민간위탁 현황 >

연도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집행액 (백만원)
2017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17.1.1.~12.31.	2017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380
2018		2018.1.1.~12.31.	2018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500
2019	〃	2019.5.1.~12.31.	2019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45
2020	〃	2020.4.9.~12.31.	2020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80
2021	〃	2021.2.8.~12.31.	2021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1,066
2022	〃	2022.1.18.~2.28.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20
	〃	2022.3.7.~12.31.	2022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97.4
2023	〃	2023.2.17.~12.31.	2023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915.4
2024	〃	2024.3.27.~12.31.	2024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83
2025	〃	2025.3.5.~12.31.	2025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	882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령(안)을 2025년 9월에 입법예고하였음. 그러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80]에 위탁의 근거 규정을 우선 마

80)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

련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민간위탁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발췌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6조(수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국·검정도서 수정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정도서의 편찬 위탁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직접 위탁 근거를 규정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81],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에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부는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진흥사업[82)]

○ 교육부는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수립 시 법정 기한을 초과하였고, 공청회 개최 계획을 법정시한 이후로 계획하는 등 사업 관리가 미흡했으므로, 제4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할 것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성교육진흥사업(1034-300)은 디지털 환경의 확산,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존중 등 새로운 이슈와 접목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강화 요구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82) 문의: 02-6788-5186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억 5,500만원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69%임.

< 2025년도 인성교육진흥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인성교육진흥사업	155	-	155	107	44	4	69.0
○ 인성교육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50	-	50	22	28	0	44.0
○ 전문인력 양성 연수기관 운영	100	-	100	81	16	3	81.0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5	-	5	4	0	1	80.0

나) 검토의견: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인성교육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사업은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인성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시·도교육청 정책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인성교육 진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을 “전문인력 양성 연수기관 운영” 사업과 함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음.

❑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83],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84]

---

83)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 한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85],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1～2025)은 2025년도까지 적용되는바,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수립했어야 함.

❑ 그러나, 교육부는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6～2030)을 법정기한이 지난 2026년 2월에 수립하였음.

❑ 또한, 시·도교육감은 동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86],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87], 2026년도 인성교육시행계획의 경우 2025년 12월 1일 전에 수립되어야 함.

❑ 그러나, 17개[88]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법정기한 이후에 인

---

84)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86)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7)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설립 전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포함됨.

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6개 교육청은 종합계획 수립 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202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현황]

시도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수립 시기
서울	○	’25.11.27.
부산	○	’26.1.13.
대구	○	’25.11.27.
인천	○	’25.12.11.
광주	○	’25.11.27.
대전	○	’25.12.16.
울산	○	’25.12.9.
세종	○	’25.12.19.
경기	○	’26.1.13.
강원	○	’25.12.5.
충북	○	’26.1.23.
충남	○	’25.12.22.
전북	○	’26.1.22.
전남	○	’26.2.25.
경북	○	’25.11.27.
경남	○	’26.1.16.
제주	○	’25.12.4.

자료 : 교육부 제출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이 2025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89], 정책연구 과정에서 과제 발굴 등 실제 정책 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공청회('26.1.) 및 진흥위원회 심의('26.2.) 역시 지연되어 계획 발표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90]

❑ 그러나, 동 사업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정책연구 제안서(2025.3.5.)에는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1회) 및 공청회(1회) 개최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론회의 경우 6월 중, 공청회의 경우 11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91][92], 공청회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 법정시한인 9월 30일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음.

❑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면서, 공청회등에

89)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계약 공고가 단일응찰로 유찰되었음('25.3.).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25.4.)되어 정책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함.

90) 또한 교육부는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에 종합계획(안)을 회람(9월, 12월)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91) 2025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제안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3p

92) 실제로 토론회의 경우 7월 9일 개최되었고, 공청회의 경우 2026년 1월 28일에 개최되었음(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안)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p)

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93], 의견 청취는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임.

❑ 따라서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공청회 개최를 종합계획 수립 법정시한 이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교육부는 제4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93) **「인성교육진흥법」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94]

○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변동성, ②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③ 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간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95]로 구성됨[96].

---

94) 문의: 02-6788-5185

95) 교육세입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에 해당하는 재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97].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

<table>
<tr><th colspan="2">종류와 재원</th><th colspan="2">교부 기준</th></tr>
<tr><td colspan="2">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td><td colspan="2">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td></tr>
<tr><td rowspan="3">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td><td>국가시책
(60%)</td><td>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td><td>·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td></tr>
<tr><td>지역현안
(30%)</td><td>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td><td rowspan="2">·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td></tr>
<tr><td>재난안전관리
(10%)</td><td>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td></tr>
</table>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시적 교부 기준>

<table>
<tr><th colspan="2">종류</th><th>교부기준</th><th>한시적(2024~2026)</th></tr>
<tr><td colspan="2">보통교부금</td><td>내국세의 20.79% 중 <u>97%</u>
+ 교육세 일부*</td><td>내국세의 20.79% 중 <u>96.2%</u>
+ 교육세 일부*</td></tr>
<tr><td colspan="2">특별교부금</td><td>내국세의 20.79% 중 <u>3%</u></td><td>내국세의 20.79% 중 <u>3.8%</u></td></tr>
<tr><td></td><td>국가시책</td><td>3%의 60%</td><td>3%의 60% (180/380÷47.4%)</td></tr>
<tr><td></td><td>지역현안수요</td><td>3%의 30%</td><td>3%의 30% (90/380÷23.7%)</td></tr>
<tr><td></td><td>재난안전관리</td><td>3%의 10%</td><td>3%의 10% (30/380÷7.9%)</td></tr>
<tr><td></td><td>디지털교육혁신</td><td><u><신설></u></td><td><u>0.8%의 100% (80/380÷21.0%)</u></td></tr>
</table>

*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결산개요

❑ 2025년도 교부금 본예산은 72조 2,794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9,982억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70조 2,812억원이며, 전액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교부금 종류별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예산현액 67조 7,322억원을,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2조 5,489억원을 집행하였음.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1조 338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7,2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2,423억원을 집행하였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5,459억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교육재정교부금	**72,279,438**	**70,281,203**	**-**	70,281,203	70,281,203	**-**	**-**	**100.0**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	67,732,259	67,732,259	**-**	**-**	100.0
특별교부금	2,619,866	2,548,944	**-**	2,548,944	2,548,944	**-**	**-**	100.0
국가시책	1,067,409	1,033,814	-	1,033,814	1,033,814	-	-	100.0
지역현안	743,713	726,916	-	726,916	726,916	-	-	100.0
재난안전관리	247,905	242,306	-	242,306	242,306	-	-	100.0
디지털교육혁신	560,839	545,908	-	545,908	545,908	-	-	100.0

(자료: 교육부)

❑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17조 439억원(24.3%), 서울시교육청 6조 3,473억원(9.0%) 등의 순임.

< 2025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도 교육청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				합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혁신		비중
서울	6,068,601	125,175	58,341	29,634	68,936	6,350,687	9.0%
부산	3,737,536	47,504	56,640	1,250	28,872	3,871,802	5.5%
대구	3,029,895	59,235	41,828	3,887	28,605	3,163,450	4.5%
인천	3,759,525	68,385	25,988	5,158	25,787	3,884,843	5.5%
광주	2,027,159	35,745	19,784	20,385	17,624	2,120,697	3.0%
대전	2,036,161	40,163	21,761	10,222	18,418	2,126,725	3.0%
울산	1,678,004	31,639	14,096	3,029	13,771	1,740,539	2.5%
세종	880,905	24,144	4,913	2,292	6,776	919,030	1.3%
경기	16,580,294	196,991	117,660	23,376	125,654	17,043,975	24.3%
강원	3,046,605	37,225	44,719	29,275	20,664	3,178,488	4.5%
충북	2,741,632	53,097	23,527	5,371	26,489	2,850,116	4.1%
충남	3,860,088	62,499	32,346	34,911	26,596	4,016,440	5.7%
전북	3,514,421	48,052	59,071	10,342	25,923	3,657,809	5.2%
전남	3,815,745	49,265	49,829	26,549	28,314	3,969,702	5.7%
경북	4,530,903	70,377	70,767	9,719	37,653	4,719,419	6.7%
경남	5,361,390	56,502	65,746	26,001	32,027	5,541,666	7.9%
제주	1,063,396	27,816	19,900	906	13,799	1,125,816	1.6%
합계	**67,732,259**	**1,033,814**	**726,916**	**242,306**	**545,908**	**70,281,204**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규모가 결정되고[98],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음[99].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 여건과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우선,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구조이므로 세수 증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

---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음.

최근 5년간(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 중 교부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세수증액으로 연도 중 10.9조 원 추경증액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세수결손으로 연동 중 각각 10.4조 원, 4.3조 원, 2조 원 불용 또는 추경감액을, 2026년도에는 세수증액으로 연도 중 4.8조 원 추경증액을 한 바 있음.

< 최근 5년 교부금 증감(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A)	추가교부(변경) (B)			당해연도 교부합계(A+B) (예산현액)	본예산 대비 변경액 (B/A)
		당해연도 추가경정 (순증감)	전년도 정산금주1) (세계잉여금)	불용주2)		
2022	65,059,537	10,985,419	5,252,633	-	81,297,589	25.0%
2023	75,760,666	-	-	△10,397,000	65,363,666	△13.7%
2024	68,873,209	-	36,439	△4,252,436	64,657,212	△6.1%
2025	72,279,438	△1,998,235	-	-	70,281,203	△2.8%
2026	71,668,748	4,769,338	82,820	-	76,520,906	6.77%

주1) '21,'23,'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차년도 교부)

주2) 연도 중 세수 재추계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금 미배정에 따른 불용

(자료 : 교육부)

특히 세수결손으로 연도 중 교부금이 크게 감액되었던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도교육청은 보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100] 및 교육시설환경개

10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선기금[101])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교부금 감액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현행 교부금 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증감이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의 조정이나 집행계획 변경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이 교육재정에 추가 확보되어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바, 지방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현행 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부금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증가로 향후 교부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음.

---

10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최근 10년간 학령인구 대비 지방교육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학령인구(만6세~만17세)는 2016년 596만명에서 2026년 49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연평균 1.9% 감소)인 반면, 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76조원으로 증가하여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72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크게 증가(연평균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30년 409만명, 2040년 293만명, 2070년 2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학령인구 대비 지방교육재정 추이 >

(단위: 백만원, 만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도교육청 최종예산*	61,964,248	68,264,379	73,737,072	82,081,074	77,332,620	84,919,9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161,502**	**44,718,497**	**49,540,693**	**55,248,823**	**53,511,172**	**59,595,796**
학령인구(만6~17세)	**596**	**582**	**567**	**554**	**548**	**544**
학령인구 1인당 최종예산	10.4	11.7	13.0	14.8	14.1	15.6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7.2**	**7.7**	**8.7**	**10.0**	**9.8**	**11.0**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시·도교육청 최종예산*	107,247,319	95,008,405	95,765,222	97,677,754	93,070,788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44,956**	**65,363,666**	**64,620,773**	**70,281,203**	**76,438,086**	**5.9**
학령인구(만6~17세)	**539**	**533**	**525**	**511**	**492**	**△1.9**
학령인구 1인당 최종예산	19.9	17.8	18.2	19.1	18.9	6.2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14.1**	**12.3**	**12.3**	**13.8**	**15.5**	**8.0**

※ 학령인구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3.12.)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26년 본예산) 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26년도 추경예산(세계잉여금 정산분 미포함)

(자료: 교육부)

< 학령인구(만6세~만17세) 추계 >

연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학령인구 증감률	4,087,366명 △25.4%	2,930,142명 △28.3%	3,171,211명 8.2%	2,678,173명 △15.5%	1,996,309명 △25.5%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3.12월) 발췌, ※ 증감률은 '10년전' 대비 증감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학령인구는 주요 교육수요 중 하나인 점에서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늘봄학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령인구뿐 아니라 교육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교육 분야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교부금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ECD 「EAG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등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OECD 「EAG 2025」(기준연도: 2022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국가	교육단계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한국	15,003	19,749	25,267	14,695	19,805
OECD 평균	11,996	12,730	14,096	21,444	15,023

주 1) 한국 PPP 환율 : (`22년) 816.61원/$
2) "전체" 항목의 경우 유아교육단계 제외
3) 유아교육단계의 어린이집 공교육비에는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중 시도교육청 지출만 포함
출처 : 「OECD 교육지표」, KEDI 산출
(자료 : 교육부)

최근 교육정책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 대응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 분야 간 효율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도 교부금 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교부금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수요 변화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원은 고등·평생, 영유아 등 교육 전반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여건·학령인구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개편을 통해 교부금 안정성과 타 교육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102].

❑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변동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간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2)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민간전문가 및 교육현장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2026.7.8.)

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03]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교육혁신 정책을 지속·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관련 특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례 적용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고 실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혁신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경우에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의 자율적 교육혁신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는바,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이 희망하는 교육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필요해 보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제2항제2호[104]),

103) 문의: 02-6788-5185

10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전체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감의 신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지역 간 형평성 및 재정여건과 사업의 개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함[1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106]에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으로 ①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②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③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④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⑤기타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

구분	사업 내용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강당·체육관(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 수영장,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신·증축 지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체육관 보수, 수영장 보수, 바닥 및 천장 교체,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외벽보수, 내·외부 도장, 옥상 방수, 포장, 담장, 옹벽 보수, 운동장 정비 등의 지원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2025.1.1.)」(p.16)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구분	사업 내용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관련 사업	연수원, 수련원, 정보원 및 과학교육원 등의 시설 신축·증축 및 개선 지원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기타 지역교육현안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2) 결산개요

❑ 2025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본예산은 7,437억 1,300만 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167억 9,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7,269억 1,600만 원이며, 전액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특별교부금	2,619,866	2,548,944	-	2,548,944	2,548,944	-	-	100.0
지역현안	743,713	726,916	-	726,916	726,916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특별교부금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교육부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지방시대 4대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계획임.

❑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및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로 31개 특구를, 2차로

25개 특구를, 3차로 8개 특구를 지정하여 총 64개 교육발전특구에 7개 광역지자체 및 9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 >

유형	신청 단위	1차 지정	지자체명	2차 지정	지자체명	3차 지정	지자체명	합계
1 유형	기초 지자체	20건 (21개 기초 지자체)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	21건 (21개 기초 지자체)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7건 (7개 기초 지자체)	(충북) 증평, 청주, 영동 (경북) 경주, 문경 (강원) 홍천 (경남) 통영	48건 (49개 기초 지자체)
2 유형	광역 지자체	6건 (6개 광역 지자체 전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1건 (1개 광역 지자체)	세종	-	-	7건 (7개 광역 지자체)
3 유형	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	5건 (5개 광역, 22개 기초 지자체)	충남(아산)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3건 (3개 광역 지자체, 19개 기초 지자체)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1건 (1개 광역 지자체, 4개 기초 지자체)	전남(완도, 진도, 고흥, 보성)	9건 (45개 기초 지자체)
합계		31건		25건		8건		64건

(자료: 교육부)

❑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2024년과 2025년에는 기초지자체 30억 원, 광역지자체(인구 100만 명당) 10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기초지자체 20억 원, 광역지자체(인구 100만 명당) 67억 원을 지원하였는바,

이에 따른 연도별 교부 현황은 2024년 1,892억 원, 2025년 3,472억 원, 2026년 2,273억 원으로, 3년간 총 7,638억 원이 교부되었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부산	30,465	36,000	19,500	85,965
대구	21,444	22,200	13,000	56,644
인천	3,300	3,500	2,000	8,800
광주	11,000	12,000	6,500	29,500
대전	10,070	10,000	6,500	26,570
울산	3,028	5,771	6,500	15,299
세종	126	3,500	2,000	5,626
경기	7,451	25,125	14,000	46,576
강원	18,451	34,637	22,000	75,088
충북	4,213	17,433	15,103	36,749
충남	9,100	12,360	8,000	29,460
전북	15,560	39,040	22,000	76,600
전남	4,877	28,310	28,390	61,577
경북	29,652	47,129	29,947	106,728
경남	13,866	42,654	27,958	84,478
제주	6,600	7,600	4,000	18,200
합계	**189,203**	**347,259**	**227,398**	**763,860**

(자료 : 교육부)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을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개별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부가 시범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컨설팅, 성과관리,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을 총괄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107].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정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교육정책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시책 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실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10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

진로·직업교육 등 기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시책 특교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비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108]
[1-01] 유보통합 유보통합시범운영	유보통합모델 시범운영 지역기반 유보통합
[1-03] 늘봄학교 늘봄학교 운영지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 운영	지역특색 늘봄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사회 연계 늘봄체계 운영
[2-06] 디지털 역량 제고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IB 프로그램 도입 · 확산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지원	IB프로그램 운영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운영
[6-25] 직업교육 마이스터고 역량 강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 운영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원

❑ 따라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사업추진체계, 사업의 성격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보다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의 지원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023년 국회 결산심사 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는바,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무성 및

108) 교육부가 제출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교육발전특구) 집행내역’의 사업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임.

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국가시책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109].

❑ 한편, 교육부는 2026년 7월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7년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선도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한 모델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110].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교육혁신 정책을 지속·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9)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5)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교육국제화 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 검토 필요	[지적사항]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무성 및 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25년부터 국가시책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	조치완료

110) 교육부 공고(2026.7.9.),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2026.7., 교육부)

(2)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023.12.6.)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24년 1,892억 원, 2025년 3,472억 원, 2026년 2,273억 원으로 총 7,638억 원의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었음.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111].

❑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교육부의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유치원 및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돌봄, 농어촌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특례를 적용하려는 취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례 적용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고 실제 지역

111)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2026.7., 교육부)

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혁신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2026.7.)에 따르면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경우에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의 자율적 교육혁신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고 지역이 희망하는 교육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교육혁신선도지역 특례(안) >

구 분	특 례 (안)
유치원 설립·운영	▸유치원 설립기준,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교육과정 등을 조례로 정함
초등 돌봄	▸교육감이 초등학생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위해 학교 밖 시설 활용 가능 ▸센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학교 설립·운영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수업연한을 조례로 정함
교육과정	▸다문화 학생,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가능하며, 통학구역 완화
농어촌, 소규모학교	▸주소지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학교 전·입학 허용 ▸초-중, 중-고 간 교육과정 통합 운영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위해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허용
국유·공유 재산 대부	▸학교 신증설 위해 국유·공유·폐교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 허용
교육장	▸교육장 임용 방식 조례에 위임(주민 참여 보장하는 임용 방식 도입 가능)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안 편성 사항 위임 가능

※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2026.7., 교육부)

(자료 : 교육부)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는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특례 적용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일한 취지의 5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임.

< 국회 입법 추진 현황 >

법안명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의원)	2024.11.26.	◦(목적)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 혁신 ◦(특례) 유치원 설립·운영, 거점형 돌봄·교육,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소규모 학교, 교원임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관련 교육 특례 규정	전체회의상정 (2025.02.18.) 법안소위상정 (2026.04.20.)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전의원)	2024.12.24.	◦(목적)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 혁신 ◦(특례) 유치원 설립·운영, 거점형 돌봄·교육,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소규모 학교, 교원임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관련 교육 특례 규정	전체회의상정 (2025.02.18.) 법안소위상정 (2026.04.20.)
교육균형발전 지구법안 (김문수의원)	2025.09.17.	◦(목적)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교육의 발전과 정주기반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 ◦(특례) 거점형 돌봄·교육,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소규모 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규정	전체회의상정 (2025.11.26.) 법안소위상정 (2026.04.20.)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2025.12.29.	◦(목적) 교육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 혁신 ◦(특례) 유치원 설립·운영,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소규모 학교, 교원임용, 특수목적고 설립·운영, 지역산업 관련 교육 특례 규정	전체회의상정 (2026.02.24.) 법안소위상정 (2026.04.20.)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의원)	2026.03.27.	◦(목적)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 강화 ◦(특례) 유치원 설립·운영, 거점형 돌봄·교육, 학교 설립·운영, 교육과정, 농어촌·소규모 학교, 교육장의 권한·임용 특례 규정	법안소위직회부 (2026.04.13.) 법안소위상정 (2026.04.20.)

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12)]

○ 최근 5년간 국가시책사업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연속 지원된 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53~68%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의 50~7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5년 기준 10년 이상 장기 연속 지원 사업도 34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일한 국가시책사업의 3년 사업기간 제한 원칙 및 연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가 국가시책사업의 성과관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 이양, 사업 통·폐합 및 사업 종료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은 「지방재정법」 제58조[113)]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112) 문의: 02-6788-5185
113) 「지방재정법」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제1호[114]), 전체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내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함[115].

(2) 결산개요

❑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본예산은 1조 674억 900만 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33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338억 1,400만 원이며, 전액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특별교부금	2,619,866	2,548,944	-	2,548,944	2,548,944	-	-	100.0
국가시책	1,067,409	1,033,814	-	1,033,814	1,033,814	-	-	100.0

(자료: 교육부)

11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10)

나) 검토의견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1][116]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교육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시책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교부대상으로 ①국가책임 교육·돌봄, ②디지털 교육혁신, ③공교육 경쟁력 제고, ④교육복지 지원, ⑤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⑥진로·직업교육, ⑦행·재정지원 등 7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7개 정책사업, 30개 단위사업 내 142개 세부사업에 교부하였음.

❑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책임 교육·돌봄 사업 4,894억원(46.4%),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1,128억원(10.7%),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1,654억원(15.7%), 교육복지 지원 831억원(7.8%),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461억원(4.4%), 진로·직업교육 사업 1,221억원(11.5%), 행·재정지원 사업 369억원(3.5%) 등을 교부하였음.

---

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부액
1. 국가책임 교육·돌봄	[1-01] 유보통합	112,026
	[1-02] 유아교육	24,974
	[1-03] 늘봄학교	182,500
	[1-04] 기초학력보장	131,009
	[1-05] 특수교육	38,945
	소 계	489,454
2. 디지털 교육혁신	[2-06] 디지털 역량 제고	13,993
	[2-07] 디지털 기반 구축	73,020
	[2-08] 디지털 교과서 개발	25,749
	소 계	112,762
3. 공교육 경쟁력 제고	[3-09] 교육과정	11,254
	[3-10] 교과교육지원	6,720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49,291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7,914
	[3-13] 예술·체육교육	43,914
	[3-14] 창의융합교육	3,747
	[3-15] 글로벌교육지원	9,020
	[3-16] 교육전념 여건조성	21,587
	[3-17] 교원역량강화	5,504
	[3-18] 학부모교육	6,430
	소 계	165,381
4. 교육복지 지원	[4-19] 이주배경 학생지원	18,689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64,417
	소 계	83,106
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21] 학생안전	3,060
	[5-22] 학생건강	5,379
	[5-23] 학폭대응	36,261
	[5-24] 양성평등	1,400
	소 계	46,100
6. 진로·직업교육	[6-25] 직업교육	65,258
	[6-26] 진로교육	5,174
	[6-27] 진학지원	51,687
	소 계	122,119
7. 행·재정지원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3,404
	[7-29] 교육정보화 지원	2,865
	[7-30] 행재정 운영지원	30,642
	소 계	36,911
합 계		**1,055,833**
집행잔액 감교부		△22,019

자료: 교육부, 2025~2026년도 특별교부금 교부 보고(2026.3.)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117].

교육부는 국가시책사업의 3년 이상 사업 수 및 비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3년부터 국가시책사업 연장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정과제 관련 신규사업 등 중점과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교육부의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 기본계획」[118]에 따르면 연장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3년차 이상 지원사업 가운데 다음 연도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과(20점), 사업관리 적정성(20점), 계속지원 필요성(60점)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은 계속지원, 70점 미만은 시·도교육청 이양 또는 지원 중단(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117)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p.11
1. 국가시책사업수요
바. 운용방법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118)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 기본계획」(2025.7.,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신규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국가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53~68%를 차지하였으며, 교부액 기준으로도 전체 특별교부금의 50~75% 수준이 장기 계속사업에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5년 기준 10년 이상 장기 연속지원 중인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국가시책사업의 3년 사업기간 제한 원칙 및 연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3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수			교부액		
	전체	3년 이상	비율(%)	전체	3년 이상	비율(%)
2021년	98	52	53.06	1,086,802	600,837	55.28
2022년	85	58	68.24	1,458,899	736,139	50.46
2023년	82	55	67.07	1,336,333	1,001,314	74.93
2024년	127	76	59.84	1,191,387	615,102	51.63
2025년	142	92	65.71	1,055,833	664,891	62.97

※ 2023년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체계를 세부사업 기준에서(2023년 82개) 30개 단위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의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의 개수가 크게 증가

(자료: 교육부)

< 2025년 기준 10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 내역 >

연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 시작연도	연장평가	
				실시	결과
1	[1-03] 늘봄학교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2010	2023	계속지원
2	[1-04]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06	2023	계속지원
3	[1-04] 기초학력보장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2006	2023	계속지원
4	[3-9]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실행 및 이해 제고 지원	2016	2024	계속지원
5	**[3-9] 교육과정**	**SW·AI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2016**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6	[3-11] 미래교육 체제 구축	EBS 교육방송 지원	2004	2023	계속지원
7	**[3-12]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2012**	**2023**	통·폐합 후 계속 지원
8	[3-12] 교수학습 자료 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2014	2025	계속지원
9	[3-13] 체육·예술교육	예술활동 일상화	2007	2024	계속지원
10	[3-13] 체육·예술교육	체육활동 일상화	2016	2024	계속지원
11	[3-14] 창의융합교육	인성·시민역량 함양	2012	2024	계속지원
12	[3-15] 글로벌교육지원	어린이동화 교류대회	2011	2025	1년 연장 후 지원 중단
13	**[3-16] 교육전념 여건 조성**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2013**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14	**[3-16]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2016**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15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2009**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16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소통 강화**	**2009**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17	[4-19]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이주배경학생, 탈북학생 교육지원)	2006	2023	계속지원
18	**[4-20] 학생성장 통합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014**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연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 시작연도	연장평가	
				실시	결과
19	[4-20] 학생성장 통합 지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2014	2023	계속지원
20	**[4-20] 학생성장 통합 지원**	**학생상담통합지원(학생상담내실화)**	**2011**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21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	**2011**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22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2012**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23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2013**	**2023**	**시도교육청 단계적이양**
24	**[6-25] 직업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2014**	**2023**	통·폐합 후 계속 지원
25	**[6-26] 진로교육**	**진로교육정보망 통합운영 및 고도화**	**2012**	**2023**	통·폐합 후 계속지원
26	[6-27] 진학지원	수능시험 시행지원	2003	2023	계속지원
27	[6-27] 진학지원	수능모의평가 시행지원	2003	2023	계속지원
28	[6-27] 진학지원	대입전형 지원시스템	2009	2023	계속지원
29	[6-27] 진학지원	대입상담센터	2009	2023	계속지원
30	[6-27] 진학지원	고교대상 직업교육 진로진학 지원	2009	2023	계속지원
31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2013	2023	계속지원
32	[7-30] 행·재정운영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2009	2023	계속지원
33	[7-30] 행·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원	2010	2023	계속지원
34	[7-30] 행·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 지원	2011	2023	계속지원

※ 2023년도에 연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연장평가 진행 중

(자료: 교육부)

❑ 2025년 기준 10년 이상 연속 지원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연장평가에서 “시·도교육청 단계적 이양”으로 결정된 10개 사업[119)]

은 2024년과 2025년에도 모두 국가시책사업으로 계속 지원되었으며, “통·폐합 후 계속 지원”으로 결정된 3개 사업[120] 역시 통·폐합 없이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계속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장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이양 또는 사업 통·폐합이 결정되었다면 이양계획, 재원분담 방안 및 통·폐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연장평가가 실질적인 사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계적 이양” 결정 사업의 경우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별교부금을 감축하여 2년 내외 지원 후 시·도교육청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에도 연장평가를 시행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연장평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정책 유연성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수단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연장평가 결과가 시·도교육청 이양 또는 사업통폐합, 사업 종료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시책사

119) ①SW·AI 과학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②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③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④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⑤학부모 소통 강화, ⑥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⑦학생상담통합지원, ⑧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 ⑨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⑩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120) ①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②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③진로교육정보망 통합운영 및 고도화

업의 장기화를 억제하고 한정된 특별교부금을 신규 국가시책에 재배분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우며, 연장평가의 실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연장평가가 국가시책사업의 성과관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 이양, 사업 통·폐합 및 사업 종료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음.

6)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21)]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59%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책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의 사업관리 및 재정집행 성과를 성과평가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은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5,459억 800만원이며 해당 금액 전액이 각 시·도 교육청에 전액 교부되었음.

121) 문의: 02-6788-5188

< 2025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45,908	-	545,908	545,908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고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122]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1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에 적기에 대응하여 정책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임.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 방과후교육 활성화, Ⓒ 우수 인센티브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94% 수준의 높은 집행률을 보여 예산이 대체로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세부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332,319	262,682	79.0
방과후교육 활성화	210,803	200,095	94.9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우수 인센티브	12,000	11,285	94.1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우수	7,000	6,416	91.7
방과후교육 활성화 우수	5,000	4,869	97.4
총 계	555,122	474,062	85.4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은 2025년 전체 집행률이 79.0%에 그쳤으며, 연수 콘텐츠 제작 및 관리(66.8%), 지식샘터 및 AI·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 운영(64.3%), 교사 기획연수 지원 및 박람회 운영(59.0%),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59.6%)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2025년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① 교원 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연수 콘텐츠 제작 및 질관리**	**1,334**	**892**	**66.8**
	ⓑ지식샘터 및 연수용 AI·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 운영	**6,566**	**4,219**	**64.3**
	ⓒ선도교사 연수 운영 및 지원	16,840	15,295	90.8
	ⓓ교사 기획 연수 지원 및 박람회 운영	**8,690**	**5,125**	**59**
	ⓔ-1성취평가제 연수 기획 및 모듈 개발	600	600	100
	ⓔ-2성취평가제 연수	2,800	2,800	100
	ⓕ아이에답(AIEDAP) 연수 운영	2,800	2,796	99.9
	ⓖ-1(글로벌연수)디지털교육연구대회 입상 교원 및 교육혁신 선도교사 유공 교원	**630**	**446**	**70.7**
	ⓖ-2(글로벌연수)수업혁신교사상 입상 교원	800	800	100
	ⓖ-3(글로벌연수)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 교원	700	638	91.2
	ⓖ-4(글로벌연수)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입상 교원	70	70	100
	소계	41,830	33,681	81%
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지원	75,500	67,991	90%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46,900**	**32,939**	**70%**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3,900	3,877	99.4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 연수	100	100	100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60,000**	**35,747**	**59.6**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60,000	51,321	85.6
	ⓔ테크센터 운영	17,000	15,577	91.6
	ⓕ시도교육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18,889**	**13,416**	**71.0**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연구학교 지원	4,300	4,297	99.9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성과 확산	3,900	3,736	95.8
	소계	168,089	128,071	76%
합계		332,319	262,682	79%

자료: 교육부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AIDT의 교육자료화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박람회 미개최, 사업기간 연장, 겨울방학 중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내역사업별 집행률 저조(75% 이하)의 원인 >

구 분	저조 원인	비고
연수 콘텐츠 제작 및 관리	AIDT의 교육자료화('25.8.)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5년 하반기부터 교원 역량체계 개편에 착수, 연수 콘텐츠 등은 개편된 역량체계를 반영하여 수정·제작, 이에 콘텐츠 제작 사업비 집행 지연됨	사업기간 연장·집행 ~2026.3.
지식샘터 및 연수용 AI·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 운영	AIDT의 교육자료화('25.8.), AI·디지털 교육자료 플랫폼 활용 수요가 줄어 해당 임차비용도 감소	
교사 기획 연수 지원 및 박람회 운영	전년도 운영 결과, 특정 지역 참관객 쏠림(수도권 82%) 등으로 국가 주도 행사 개최 효과가 미흡하여 박람회를 운영하지 않음	
글로벌연수(디지털연구대회, 선도교사 유공)	교원들의 겨울방학에 맞춰 글로벌연수 운영('26.1.)됨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늦어짐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본 사업은 1회성 연수가 아니라, 신청한 학교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학교별 종료 후에 연수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지급이 되었음. 연수 사업의 특성상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사업비 이월 집행	사업기간 연장·집행 ~2026.6.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1) 네트워크 개선·구축 특성상 복합적인 절차가 수반되어 상당한 기간 소요 2)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사업기간을 '26.5.31.까지 연장	사업기간 연장·집행 ~2026.5.
시도교육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자료: 교육부

❑ 다만, 이러한 사유 중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계약·집행 절차,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

히 검토하였다면 집행률 저하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사업내용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집행이 지연될 경우 정책의 적시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도 반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정책환경 변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변경과 집행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성과평가의 실효성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필요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D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등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된 세부사업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로, 해당 사업은 D등급을 받아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26.7% 감액되었음(2025년 1,680억 8,900만원 → 2026년 1,232억 9,700만원).

❑ 다만, 동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성과뿐 아니라 교육청의 사업관리 및 재정집행의 책임성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청의 사업관리 수준이나 재정집행의 충실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성과평가에 사업성과뿐 아니라 교육청의 사업관리 및 재정집행 성과를 보다 비중있게 고려하여 예산 편성

과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23]

○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대하여 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정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직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조속히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립부설학교의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설비, 비품비 또는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을 통합한 것이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초등 늘봄교실 리모델링,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등 총 25개[124]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23) 문의: 02-6788-5186
124) 2025회계연도에는 국립부설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6회계연도에는 미편성되었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648억 300만원으로, 448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억 2,0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69.3%임.

< 2025년도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125)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	64,803	44,895	13,387	6,520	69.3

125) 내역사업 중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3억 6,800만원을 반영함.

나) 검토의견

(1) 국립부설학교의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리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126]은 학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1억 8,700만원으로 이 중 152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5억 2,300만원은 불용하여 집행률은 44.7%였음.

< 2025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127]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	64,803	44,895	13,387	6,520	69.3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	34,187	15,276	13,387	5,523	44.7

자료 : 교육부 제출 자료 편집

❑ 동 내역사업은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확충사업', 노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126)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127) 내역사업 중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73억 6,800만원을 반영함.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 수명 연장 등을 지원하는 '보수사업'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시설 개선, 탄소중립 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 캠퍼스 구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의무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4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학교 중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시설은 동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함.[128]

❑ 교육시설안전인증은 「교육시설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2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678호, **2019. 12. 3.**> [시행 2020. 12. 4.]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해야 함.[129]

[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130]]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 그러나, 국립부설학교 중 안전인증 대상학교는 총 42개교로 이 중 32개교만 기한 내에 인증을 받았으며,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10개교 중 6개교의 경우 2026년 5월말 기준 아직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는 이에 관련하여 개축공사가 진행 중인 1개교(전북대 부설

1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13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고)를 제외한 5개교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하였음.

<안전인증 미취득학교 추진현황 및 계획>

학교명	추진현황('26.5.)	완료계획
강원대 부설유치원	인증심사 요청 중	금년도내 심사 후 취득예정
춘천교육대 부설초	2023-11-13 현장심사 후 보완공사 완료	재심사 진행중으로 금년도내 취득예정
청주교육대 부설초	2024-01-31 현장심사 후 보완공사 완료	재심사 요청중으로 금년도내 취득예정
진주교육대 부설초교	2025-06-19 현장심사 후 보완공사 완료	재심사 진행중으로 금년도내 취득예정
제주대 부설중	2025-11-20 현장심사 후 보완공사 완료	재심사 진행중으로 금년도내 취득예정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공사 진행 중	개축공사 완료 후('27.9) 취득 예정

자료 : 교육부 제출

❑ 교육시설안전인증은 교육시설의 안전성(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건축재료의 안전성, 교통안전 및 보안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이므로, 최초의 안전인증 이후에도 향후 계속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131].

13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 따라서,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서 최초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이후 등급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경우 법정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며, 아직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6개교에 대하여 조속히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립부설학교 시설물 안전강화 필요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관 공·사립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을 수립(2023.12.)하였는데, 동 계획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항목으로 석면제거, 샌드위치패널,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스크링클러[132]를 포함하고 있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구성(안)[133]]

항목		세부 항목	
공간 재구조화		·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 늘봄학교 활용가능 공간조성	·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 학교복합시설
시설 성능 유지 관리	**안전 강화**	**· 석면제거 · 샌드위치패널 · 내진보강**	**· 드라이비트 · 스프링클러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성능 개선	· 외벽창호개선 · 냉난방기 개선 · 실내마감 · 방수	· 옥외 캠퍼스 포장 · 승강기/LED교체 · 화장실 개선
	일반 보수	· 일반 보수	· 칠판, 책걸상 등 교체

❑ 국립부설학교의 경우 내진보강 사업, 석면교체 사업, 샌드위치패널 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2026년 5월말 기준 드라이비트[134]는 5개

132) 동 항목에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립학교의 경우 동 내역사업이 아닌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133)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 2023.12., 교육부, 11p
134) 드라이비트(공법)은 건물 외부단열 및 마감 공법으로 주요 구성요소에는 단열재, 메쉬, 접착몰탈, 마감재 등이 있고, 단열재는 스티로폼이나 불연성 암면을 주로 사용하며, 메쉬로 불리는 유리섬유는 고인장 강도를 가진 소재로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됨(김태성,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초등학교 건물의 외장 특성,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2, 7p)

교(5,226㎡)가 보유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는 사업대상 10개교 중 9개교[135]가 아직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립부설(특수)학교 안전시설 설치현황]

구 분	드라이비트		스프링클러(설치대상: 특수, 기숙사)			
	보유학교	보유면적	대상학교	대상면적	미설치 학교	미설치 면적
유치원	0	0	0	0	0	0
초등학교	0	0	0	0	0	0
중학교	3	2,750	0	0	0	0
고등학교	1	776	4	8,461	3	7,942
특수학교	1	1,700	6	88,434	6	0
합계	**5**	**5,226**	**10**	**96,896**	**9**	**7,942**

자료 : 교육부 제출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42개교)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동 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드라이비트 및 스프링클러 사업은 국립부설(특수)학교의 재정여건, 학사일정, 공사여건에 따라 기간내[136]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음.

135) 28개 건물이 미설치되어 있음.
136)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는 **공·사립 학교**에 대한 드라이비트 및 스프링클러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 최근 5년간 교육시설[137] 화재 발생현황 >

(단위: 동,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화재건수	113	104	106	103	111	107.4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편집(소방청 화재통계연감)

드라이비트는 인화성이 높아 내·외부 화원에 의해 착화되기 쉬우며, 착화시 발열량과 연소속도가 매우 높은 특성으로 인하여 건축물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 현상이 발생하는 등[138]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교육시설에서 화재시 인명사고 발생 등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139]

❑ 또한, 「교육시설법[140]」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13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해당함(교육부 제공).

138) 송유철, 지역공동체 화재대응을 통한 소방 초기대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20, 17p

139) 드라이비트가 포함된 국립학교 중에는 특수학교도 포함되어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140) 교육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는 2025년 2월 7일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부터 적용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부 칙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81호, 2024. 2. 6.>

률[141]」에서는 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및 특수학교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 교육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소방서장등의 이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 바. (생 략)

9. 노유자 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고 있음.[142]

❑ 따라서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의 드라이비트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부설학교의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143]

1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143) 교육부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 수립 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144)]

○ 교육부는 진로전담교사 연수 결과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는바, 시도교육청과 연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전 준비하고, 연수 실시 후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4031-301) 사업은 「진로교육법」 제15조[145)]에 따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44) 문의: 02-6788-5186

145)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3억 7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07	-	307	307	0	0	100.0
- 민간경상보조 (320-01)	307	-	307	307	0	0	100.0

나) 검토의견: 진로전담교사 연수를 위한 면밀한 사전 준비 필요

❑ 교육부는 2016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146].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근거 법률인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등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진로교육법」상 국가진로교육센터 업무[147] >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146) ※ 현 지정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2.10. ~ '28.1.14.(3년)

147)「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2025년도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법정 업무 중 ‘진로전담교사 교육’,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및 ‘진로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포럼(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경우는 동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였거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 국가진로교육센터 업무별 예산 운영 현황 >

구분	관련 업무	’25년
1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국교위 이관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특교
3	진로심리검사 개발	특교
4	진로상담 지원	특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특교
6	진로교육 컨텐츠 개발	특교
7	**진로전담교사 교육**	**국고**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국고**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10	**그 밖의 교육부장관 요청 사항 (진로교육 연계·협력체제 구축)**	**국고**

자료 :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2025년도에 진로전담교사 교육(2025년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을 실시하였는데, 전국 중·고등학교 진

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 변화를 주제로 6월 12일[148]에 온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실시하였음.[149]

❑ 동 진로전담교사 연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전국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총 5,193명[150]이나 온라인 연수의 최대 접속자 수는 21.6%인 1,120명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동 연수의 대상은 전국 중등 진로전담교사이나 모든 학교급(초중고)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개방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참여율은 21.6%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151]

❑ 아울러, 참여율 저조 문제 외에도 개선방안 모색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총 접속자 1,120명 중 37.8%인

148) 14시부터 17시 10분까지 진행함.
149) 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2025.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로교육 관계자(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연수 개요
○ 연수명: 2025년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주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 변화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1)
-일시: 2025. 06. 12. (목) 14:00~17:10
-방식: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내용: [1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정책 및 모델
-내용: [2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 사례
-최대 접속자 수: 1,120명

150) 각급 학교별로 **중학교 2,960명**, **고등학교 2,233명**임(교육부 제공).
151) 동 연수의 대상은 전국 중등 진로전담교사이나 모든 학교급(초중고)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개방하여 실시함(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423명이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에 응답하였음.[152]

❑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25년 3월 2022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 도입되어 연수를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온라인 연수의 경우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교사들이 참여하기 용이하다는 진로전담교사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수를 방학이 아닌 일과시간에 실시하였으며, 연수 전·중·후로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링크, QR 코드 안내)를 안내·독려하였으나,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온라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연수에 비해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제출한 결과보고서[153]를 살펴보면 향후 개선방안으로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연수 실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앙-시도 진로전담교사 연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바, 연수 내용 중복이 진로전담교사의 연수 참여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연수 참가자들이 제출한 개선사항 중에는 연수시기를 방학 또는 (학기 중) 방과후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154], (학기 중)일과시간 중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진로

152)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의 연령대 비율은 50대 57.2%(242명), 40대 28.8%(122명), 60대 이상 8.5%(36명), 30대 4.5%(19명), 20대 0.9%(4명) 순으로 나타났는바, 참가자들 중 20~30대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됨.
153) 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208p
154) 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206p

전담교사 중에는 참여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로전담교사 연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진로전담교사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동 연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진로교육 운영 모델 탐색, 현장 적용 사례(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탐색 및 학교급·유형별 교육 진로교육 정보 공유를 통해 진로전담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바[155], 동 연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진로전담교사의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향후 진로전담교사의 연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연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전 준비하고, 연수 실시 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5) 2025년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결과보고서, 208p

9)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68.2%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취업자 및 실제 장려금 수급인원의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현실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예산 규모를 조정할 것.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4606-30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참여 수당 및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취업연계 장려금, ②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으로 구성됨.

❑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고졸청년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장실습 지원금'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023억 8,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02,380	-	102,380	102,380	-	-	100%
○ 취업연계 장려금	83,616	-	83,616	83,616	-	-	100%
○ 현장실습 지원금	17,670	-	17,670	17,670	-	-	100%
○ 사업관리비	1,094	-	1,094	1,094	-	-	100%

나) 검토의견 : 사업 참여 인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 조정 필요

❑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계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학생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

2024년까지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이 확인된 학생에 대하여 선지급의 방식으로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선지급 방식으로 인하여 장려금이 과오지급되거나, 재직 도중 퇴사함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하여 환수절차를 밟게 되는 등의 절차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을 재직한 것이 확인된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을 재직한 이후 잔액 300만원을 지급하는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5년 한국장학재단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결산 기준(‘25.12.31.) 33.7%로 저조하고, 사업 특성상[156] 사업기간이

156) 동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25.12.31.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

‘26.5. 까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률이 저조함.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25.12. 기준)			2025년(`26.5. 기준)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96,663	79.6	102,380	34,451	33.7	102,380	69,808	68.2
○ 취업연계 장려금	102,000	79,425	77.9	83,616	31,126	37.2	83,616	52,205	62.4
○ 현장실습 지원금	18,000	15,906	88.4	17,670	2,601	14.7	17,670	16,609	94.0
○ 사업관리비	1,480	1,332	90.0	1,094	724	66.2	1,094	994	90.6

❑ 이와 같은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3개월 재직 인원을 20,400명, 12개월 재직 인원을 14,272명으로 추산하여 총 83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실제 지원인원 현황을 보면, 3개월 재직 인원이 13,759명, 12개월 재직 인원이 8,229명으로 총 522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실제 지원 인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산식	지원인원
2023	장려금	102,000	102,000	100.0%	20,400명 × 5백만원	20,146명 (’22학년도) 254명 (’23학년도)
	현장실습	20,528	16,118	78.5%	17,107명×60만원×2개월	
	운영비	1,500	1,388	92.6%		
	총계	124,028	119,507	96.4%		
2024	장려금	102,000	79,425	77.9%	20,400명 × 5백만원	15,885명 (’23학년도)
	현장실습	18,000	15,906	88.4%	17,000명×3만원×35.3일	
	운영비	1,480	1,332	90.0%		
	총계	121,480	96,663	79.6%		
2025	장려금	83,616	52,205	62.4%	20,400명×2백만원+ 14,272명×3백만원	13,759명 (1차지급, 2백만원) 8,229명 (2차지급, 3백만원)
	현장실습	17,670	16,608	94.0%	15,500명x3만원x38일	
	운영비	1,094	994	90.6%		
	총계	102,380	69,805	68.2%		

자료: 교육부

❑ 2024년의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실질행률은 77.9%인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고3학생들부터 지급 방식이 후지

급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고3학생에 대한 지급시점이 2025년으로 이연되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24년도 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참고로, 2025년도 예산에는 ① 이연된 2024학년도 고3학생의 1차 지급분, ② 12개월 재직요건을 충족한 2024학년도 학생의 2차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4, ‘25학년도 지급 일정(안)]

구분	‘25년										‘26년												‘27년		
	3월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4학년도	①1차							②2차																	
25학년도	-												1차							2차					
지 급	← 2025년 예산 →															← 2026년 예산 →									

구분		‘24학년도 고3	‘25학년도 고3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하는 **‘24학년도** ❶직업계고 3학년, ❷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 참여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하는 **‘25학년도** ❶직업계고 3학년, ❷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 참여 학생
재직인정 기한	1차	'24. 10. 1 ~ '25. 9. 30.	'25. 10. 1 ~ '26. 9. 30
	2차	'24. 10. 1 ~ '27. 3. 31	'25. 10. 1 ~ '28. 3. 31
지급	1차(3개월)	'25. 3 ~	'26. 3 ~
	2차(12개월)	'25. 10 ~	'26. 10 ~

자료: 교육부

❑ 다만, 사업 방식이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도 실집행률은 62.4%로 2024년 실집행률인 77.9%에 비하여 15.5%p 감소하여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수가 2024년에 비해 5.41%감소(63,005명 → 59,661명)와 취업자 수가 7.79%(16,588명 → 15,296명) 감소하고 있고, 동 사업의 실제 지원인원 역시 1차 지급 기준으로 2024년 15,885명에서 2025년 13,759명으로 13.38%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최근 3년간 계속되어온 편성인원(20,400명)을 단순히 유지하기보다 최근 실집행 실적과 학년도별 실제 신청·수급인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직업계고 인원 및 취업통계 현황>

(단위: 개교, 명, %)

학교유형 (조사년도 기준)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대비 취업자
전 체	2025	59,661	15,296	29,373	1,523	1,049	12,420	55.2	49.2	25.6
	2024	63,005	16,588	30,216	1,716	1,059	13,426	55.3	48.0	26.3
	2023	71,591	19,526	33,621	1,940	971	15,533	55.7	47.0	27.2
	2022	76,760	22,709	34,686	1,873	942	16,550	57.8	45.2	29.5
	2021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55.4	45.0	28.5

자료: 교육부

주1: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times 100$

주2: $\text{진학률(\%)} = \frac{\text{진학자}}{\text{졸업자}} \times 100$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종전의 일률적인 지원인원 20,400명 대신 직업계고 고3 학생 수와 3개월·12개월 재직완료 비율을 적용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을 전년 대비 18.5% 감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7년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요구 개선 방안>

	현행	개선
3개월 재직자 (단가 2백만원)	’24~’26년 물량 (20,400명)	’26년 고3 인원 × 3개월 재직완료 비율 (15,832명 = 68,538명 × 23.1%)
12개월 재직자 (단가 3백만원)	위 물량의 약 70% (14,272명)	’24~’26년 고3 인원 × 12개월 재직완료 비율 (12,148명 = 6.5~6.8만명 × 1~15.2%)
총예산	83,616백만원	68,108백만원 (△18.5%)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교육부는 학년도별 졸업예정자 규모, 제도 변경 이후의 3개월·12개월 재직 전환 실적 등 예산 편성 시점에 확보 가능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소요 인원을 추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12개월 재직 요건의 경우 재직 인정기간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칠 수 있으므로, 지급기한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학생의 향후 재직 전환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및 실제 장려금 수급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요구액의 추가 감액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취업률·재직 전환율을 적용하여 예산 산출근거를 보다 정확히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교육부는 집행률 개선을 위하여 예산 추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신청 안내 강화, 재직정보 연계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교육부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적용하였으므로, 기업현장교사의 역할과 교육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할 것. ○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실제 지급단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예산 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미지급분이 차년도 예산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4606-302)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4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5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2,400	-	12,400	12,400	-	-	100%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12,000	-	12,000	12,000	-	-	100%
○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관리	400		400	400	-	-	100%

나) 검토의견

(1) 예산 편성 시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을 통한 미지급분 발생 방지

❑ 동 사업은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 1인당 1명의 현장실습생 담당을 원칙으로 하여 기업현장교사에게 일 30,000원[단,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담당학생 1명 30,000원, 2명 35,000원)], 최대 210만원[157]을 지원하는 사업임.

기업현장교사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로 ①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정부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함.

❑ 동 사업은 2025년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에 총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완료 기준, 총 12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참고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25.12.31.)으로, 실집행률은

157) 210만원 = 35,000원 × 20일(한달) × 3개월

42.9%인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이 4분기부터 집중되어 있어 사업기간을 차년도 5월까지로 하고 있어 실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설명임.

❑ 최근 5년간 현장실습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평균 실습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교사 1인당 평균 실습생은 1.3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1.16명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에 수당을 수령받은 현장교사 수는 11,564명으로 2021년 13,589명에 비하여 14.9% 감소하였는데, 현장실습 지원금 수령 학생 수가 2021년 20,295명에서 2025년 13,699명으로 32.5% 감소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 시,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인원이 12,000명으로 유지되고 있음.

<최근 5년 현장실습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평균 실습생>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장실습 지원금 수령 학생수	20,295	16,433	13,983	13,499	13,699
수당 수령 현장교사수 ※ (산출기준) 당해연도 사업참여자수	13,589	12,167	11,397	11,277	11,564
교사1인당 평균 실습생	1.32	1.29	1.21	1.17	1.16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기업현장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기업현장교사 1명이 현장실습생 1명을 전담하는 것을 원칙[158]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평균 실습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1인 1학생 전담체계를 강화해 온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1인 1학생 전담원칙이 현장실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실제 현장실습의 질 향상 등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기업현장교사 규모(12,000명)가 실제 사업 수요와 부합하는지 등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원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산출단가가 실제 지급단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부족으로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업현장교사 지원단가는 2023학년도부터 1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159]되었으나, 교육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인상된 지원단

158) 2025년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처리기준, 한국장학재단
기업현장교사 1인당 1명의 현장실습생 담당원칙(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당 1명의 기업현장교사 배정이 원칙이며, 실습 일자가 다를 경우 다른 기업현장교사 배정 및 지원가능)

159) (~2022년) 1인당 담당학생 1명 : 2만원, 2명 : 2.5만원, 3명 : 3만원
(2023년~) 1인당 담당학생 1명 : 3만원, 2명 : 3.5만원

가를 예산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실제 지급소요액이 편성된 예산 120억원을 초과하였고,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이후에도 2026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예산상 지원단가가 실제 지급단가보다 낮은 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급소요의 일부를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음. 이로 인해 매년 예산은 형식적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미지급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에도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예산 65억 4,3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음.

<’23~’25학년도 기업현장교육 일자별 집행현황>

예산	학년도	차수	지급일자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원)
2023 (140억)	2023	1	2023-11-15	256	291,340,000
		2	2023-11-23	20	19,860,000
		3	2023-11-29	452	613,585,000
		4	2023-12-13	41	51,900,000
		5	2023-12-20	1,570	1,913,235,000
		6	2024-01-23	3,366	4,498,205,000
		7	2024-02-20	3,908	5,139,255,000
		8	2024-03-21	1,152	1,472,460,000
2024 (120억)		9	2024-04-09	416	530,170,000
		10	2024-05-02	158	203,615,000
		11	2024-05-21	58	63,500,000
	2024	1	2024-11-07	581	704,745,000
		2	2024-12-05	1,522	1,755,075,000
		3	2025-01-09	2,314	3,093,040,000
		4	2025-02-12	3,679	4,952,890,000
		5	2025-02-20	525	696,965,000
2025		6	2025-03-17	2,192	2,800,050,000
		7	2025-04-04	400	519,360,000

(120억)		8	2025-05-09	148	179,540,000
		9	2025-05-28	170	196,095,000
	2025	1	2025-10-13	9	3,120,000
		2	2025-11-10	225	225,185,000
		3	2025-12-04	1,023	1,219,545,000
		4	2026-01-08	2,344	3,159,600,000
		5	2026-02-10	2,672	3,697,505,000
2026 (185억)		6	2026-03-10	4,675	6,138,740,000
		7	2026-04-08	528	632,595,000
		8	2026-05-08	315	365,575,000
		9	2026-05-27	55	69,865,000

<연도별 예산 및 지급총액>

연도	사업비예산	예산기준 지급총액	학년도기준 지급총	당해연도 미지급금
2023	14,000	13,999	14,797	797
2024	12,000	12,000	14,897	3,695
2025	12,000	12,000	15,511	7,206
2026 (’26.7월 기준)	18,543	7,206	-	

자료: 교육부

❑ 2026년도 예산에 미지급분이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미지급액이 정산되고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부담이 연쇄적으로 이전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원단가와 예산상 산정단가 간 차이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개년 예산 편성 세부 산정 내역>

구분	예산편성액 (백만원)	세부 산정 내역
2024년	12,000	12,000명 × 50만원 × 2개월
2025년	12,000	12,000명 × 50만원 × 2개월
2026년	18,540	(12,000명 × 50만원 × 2개월) + 미지급분 65억 4,300만원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인상된 1인 지급 단가가 최종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인원의 적정 수 등 실제 사업수요를 세부 산정내역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미지급분이 발생하거나 지급부담이 차년도 예산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교육부는 2026년 예산 집행을 통해 미지급분을 전액 지급하고, 2027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인상된 교사 지급 단가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임.

(2) 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동 사업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양질의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및 지도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현장실습과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기업현장교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의 학습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는 '현장실습-취업연계 기업 발굴 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였으나, 2025년 프로그램 단위의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전체의 취업률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과는 평가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특히, 해당 사업이 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현장교사 배치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 제고, 만족도 조사 등이 주요 사업 성과로 측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2024년까지 적용되었던 성과지표인 '현장실습 기업 발굴 수'는 산출 지표 성격이 강하여 목표 달성도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부터 ‘현장실습 취업전환률’을 신규 지표로 고안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2025년에는 동 사업과 평가대상 및 사업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프로그램 단위 성과지표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성과가 적절하게 측정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

<2024년 ~ 2026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160)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4년 성과 지표	현장실습-취업연계 기업 발굴 수 (단위: 개)	목표	23,000	24,000	25,000	26,000
		실적	24,303	26,140	28,369	29,482
		달성도	105.6	108.9	113.5	113.3
2025년 성과 지표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단위: %)	목표	70.5	71.7	72.1	73.2
		실적	71.6	73.6	73.2	72.4
		달성도	101.6	102.6	101.5	99.2
2026년 성과 지표	현장실습 후 취업전환률(%)	목표	-	-	-	-
		실적	67.1	65.7	63.2	65.0
		달성도	-	-	-	-

160) 측정산식
- (2024년) 현장실습-취업연계 기업 발굴 수 :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내 기업 수 집계

- (2025년)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
  ㅇ 측정산식 : ①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자/②혁신지원 전문대학 취업대상자×100%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프리랜서
  ②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2026년) 현장실습 후 취업전환률(%) :
  ㅇ 측정산식 : ① 현장실습 후 취업자 / ② 현장실습 참여학생수×100%
  ①현장실습에 참여한 당해연도 직업계고 3학년 학생중 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
  ②당해연도 직업계고 3학년 학생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총 학생 수

❑ 또한,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현장실습 후 취업전환율도 종전 지표보다는 사업목적과의 관련성은 높으나, 학생의 취업 여부는 개인의 직무역량과 취업 의사, 기업의 채용수요 및 지역·업종별 고용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업현장교사의 배치 및 지도활동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전환율과 함께 기업현장교사의 역할 및 현장교육의 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①기업현장교사의 교육계획 이행률 및 실제 지도시간 충족률, ②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율 및 중도탈락률, ③현장교육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취업성과와 기업현장교사의 지도성과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기업현장교사 지원이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 제고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사업(7034-502)[161]

○ 교육부는 위탁사업 계약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7034-502) 사업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약 21,260여개 교육기관(약 82,000여동)[162]의 시설 현황 및 운영 정보, 안전인증 및 안전점검 등의 이력정보,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함)」[163]이

161) 문의: 02-6788-5192

162)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부속기관, 감독기관 등 총 21,260개 기관의 현황 및 운영 정보를 담고 있음(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사업 과업지시서).

163)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제정·시행(2020.12.4.)됨에 따라 2023년에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1월 개통하였으며, 2025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정보망 운영업무(법정업무/시도지원업무/대국민포털) >

구 분		업무내용
교육시설 현황	시설현황관리	▪ 학교/기관, 시설 변동현황 조사 및 갱신
	주요관리대상시설	▪ 재해취약시설, 화재취약시설 등 지정/해제 관리
	시설지도	▪ 학교·기관, 용지, 건물 등 주요 교육시설 형상을 지도위에 생성. 자연재해정보, 안전인프라정보 연계
법정업무	안전점검	▪ 학교/기관별 해빙기/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 조사. 재해취약시설상시점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 등
	안전인증	▪ 안전인증 전문기관의 인증결과 취합 및 관리 학교별 세부심사결과 관리
	안전성평가	▪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통보서, 보완조치계획서 및 보완조치결과, 안전확보요청 등 취합 및 관리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 교육시설 건물, 설비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학교별 점검총괄표 관리
	내진보강사업관리	▪ 내진보강사업관리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및 내진보강공사 이력 취합
	소방시설실태조사	▪ 소방차 진입로 확보현황 및 소방시설 실태 점검결과 제출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안전사고	▪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고, 사고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관리
	교육시설관리계획	▪ 교육시설 기본계획, 교육시설 시행계획, 교육시설 실행계획 및 각 계획별 결과 관리
학교시설 성능지수	학교시설성능지수 (SFCI)	▪ 데이터 기반의 학교시설 성능수준을 점수로 산출, 전국단위 시설성능 관리체계 마련
대국민 포털	대국민포털	▪ 대국민 통계 공개 범위 협의·확정, 대국민포털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및 시각화 자료 개선

자료 : 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사업 과업지시서

---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④ (생 략)

(2) 결산개요

❑ 2025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은 16억 7,600만 원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11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률은 70.0%임.

< 2025년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1,676	-	1,676	1,173	503	-	70.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위탁사업 계약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필요

❑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제35조[164]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2025. 3. 28.~ 2025. 12. 31.)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함(집행률 70.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165] 당초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5억 300만원은 2026년으로

164)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65) 교육부, 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계약 변경 요청, 2025.12.11.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계약기간 연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요청(2025.12.11.)[166]에 따른 것으로, 연장요청 사유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집행 마감 기한 도래에 따른 인건비 및 내부 예산 정산 등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한 것임.

< 계약기간 연장 현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계약기간 : 2025. 3. 28. ~ **2025. 12. 31.**	계약기간 : 2025. 3.28.~ **2026. 2. 28.** **(59일 연장)**	당해 회계연도 예산집행 마감 기한 도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건비 및 내부 예산 정산 등 원활한 회계 처리를 위한 계약 기간 연장

자료 : 교육부 계약 변경 요청 공문의 내용 중 변경내용을 발췌함

❑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계약기간 연장 사유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요청한 바와 같이「(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제6호[167]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고, 계약기간 연장에

16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계약기간 연장 요청, 2025.12.11.

167)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그러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당초 계약 종료일(2025.12.31.) 기준 추진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업무가 실제로 완료되지 못한 채 익년도로 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단순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본 사업은 국고금에 따른 계약[168]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담금에 따른 계약[169]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을 통합하여 보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음.

< 원 계약종료일(25.12.31.) 기준 사업 추진 실적 >

업무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5년 하반기 교육시설현황 정기조사 결과 보고 작성	기본조사·중점조사·기타조사·오류검증·마감 등 보고서 작성 중	진행 중
시설지도 형상 생성/변경 사전조사	학교신설·건물신축 등에 따른 시설지도(GIS) 형상 구축 신청	12월~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 ⑧ (생 략)

168) 「2025년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최초계약 2025. 3. 28. ~ 2025. 12. 31./ 1,676백만원

169) 「2025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관리 용역」/ 2025. 5. 1. ~ 2026. 4. 30. / 8,991백만원

업무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5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모니터링 조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 기본 정보·공정상황 주1회 교육부 송부 등	12.1~'26.2.27
시설현황·재난사전예방 서비스 업무 영역 기능개선 추진	사용자 편의성 향상 관점 주요 개선사항 진행 중 (4건 완료, 5건 진행 중)	진행 중
'24년 법적 후속조치 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조사	「교육시설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치완료 후 15일 이내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조치계획서 접수 153건 중 결과보고서 1건 미제출)	진행 중
'25년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자체점검 조사	「교육시설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체크리스트 기반 자체점검 결과 제출 16,720개 학교/기관 중 15,397개 학교/기관 제출(92.09%)	11.28~12.31 (연장예정)
안전사고 업무단계 절차 개편 기능개선	신고접수·상세피해내역 2단계 분리 개편	진행 중
안전인증 실적확인 및 추진계획 입력조사	인증 취득 실적계획 제출 총 35,219건 중 35,168건 제출 완료(99.86%)	12.1~12.23 (연장예정)
교육시설 '26년도 실행계획 제출	실행계획 수립·제출 대상 시설 총 20,751개 중 19,505개 제출(94.00%)	~12.31(연장예정)
법정업무 영역 기능개선 추진	12건 중 4건 완료, 8건 진행 중 (모바일 안전점검, 내진보강 등)	진행 중
시설사업 정기조사 실시	학교·기관의 시설사업(공사/용역관리, 하자관리) 정보 현행화	12.1~'26.1.2
시설사업 업무 영역 기능개선	알림톡 발송, 승인관리 등 4건 완료	12월 중
환경개선 대상사업 조사	'26년 본예산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예산 수요 조사	진행 중
환경개선 업무 영역 기능개선	사업확정 비율설정, 순위선정 산출방식 등 4건 진행 중	'25.10~'26.1
2025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25.12.12 ~'26.1.9 (연장)
2026년 교육박람회 참가 추진	교육박람회 메인 컨셉 확정 등	진행 중

업무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업무포털 시각화 대시보드 기획	메인화면·사용자별 대시보드 설계 중	-
대국민포털 시범 운영	정식개통('26.1월) 대비 기능테스트·데이터검증	'25.12.3 ~ '26.1.2
대국민포털 홍보 영상 제작	스토리보드·시나리오 작업 완료, 영상 제작 중	'25.12.15 ~'26.1.16
2025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운영	월간·주간 업무보고, SR 처리 등	'25.6.1~'26.4.30
2026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계획 수립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진행 중
2025년 통합유지보수 감리 용역	3단계 감리 시행 및 검수감리(1단계 완료, 2단계 예정)	'25.11.6~'26.4.30
2025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서비스 상담센터 위탁 운영 용역	11,737건 상담(응대율 99.04%)	'25.5.1~'26.4.30

자료 : 「2025년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25년 12월 추진실적 보고 재구성 (추진 실적 중 완료 및 상시 사업 제외)

❑ 따라서 교육부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국고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담금이 공동 투입되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고 집행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유무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변경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확보함으로써, 계약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정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특성과 재원이 공동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계

획과 사업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170]

○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과년도 수요포럼 운영 실적을 재검토하고, 향후 수요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내역사업 예산이 아닌 직원 교육훈련비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단순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서·예산서·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은 불가피하게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체수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이 중 사업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170) 문의: 02-6788-5184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60억 4,500만원으로, 전액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였고, 재단은 160억 4,500만원 중 156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7.8%임.

<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045	-	16,045	15,691	156	198	97.8
○ 사업비	6,607	-	6,607	6,159	150	298	93.2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556	-	556	540	-	16	97.1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228	-	1,228	1,061	-	167	86.4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275	-	275	272	-	3	98.9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252	-	252	225	-	27	89.3
-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1,672	-	1,672	1,669	-	3	99.8
- 교류 및 홍보 사업	375	-	375	363	-	12	96.8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1,494	-	1,494	1,340	150	4	89.7
- 연구관리 및 지원	123	-	123	118	-	5	95.9
-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632	-	632	571	-	61	90.3
○ 인건비	8,480	-	8,480	8,267	-	213	97.5
○ 경상비	2,977	-	2,977	2,966	6	5	99.6
○ 자체수입	△2,019	-	△2,019	△1,701	-	△318	84.2

나) 검토의견

(1) 사전의결 원칙 위배: 수요포럼 운영

❑ 수요포럼은 재단 설립 초기인 2007년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내외로 운영되어 온 내부 학술행사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재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수요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기존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463만원,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218만원 등 총 7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집행 방식은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됨[171].

< 2025년 수요포럼 주제별 지출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단위: 원)

지출 예산과목	일자	발표주제	강사비*	다과비 등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1.8	한국, 근대미술을 만나다	500,000	176,600

171) 2023년의 경우, '연구·정책기획 및 연구지원' 1개 내역사업에서 3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220만원,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에서 117만원, '연구관리 및 지원'에서 68만원,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에서 60만원, '역사현안 전략적 국제화'에서 60만원 등 총 5개 내역사업에서 524만원을 집행하였음.

지출 예산과목	일자	발표주제	강사비*	다과비 등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2.5	영락제의 베트남 침공과 조선의 대명외교	500,000	134,80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3.5	제국일본의 식민정책과 역사교육-조선의 사례-	0	235,000
		자민당 체제와 일본의 보수화 : 제도론적 접근	0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요인 : 러시아 정체성과 푸틴	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3.19	영국-아일랜드 합방의 형성 : 경제와 제국, 1756-1801	0	98,000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본 냉전기 한미관계	0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4.9	815 Histeria and the Tragicomedy: 건국, 건국절, 건국연도, 국적 논쟁	500,000	118,30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5.7	포스트탈냉전시대, 한국 외교의 길	500,000	116,15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6.4	산업교류로 본 한·중·일관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라면까지	500,000	129,40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6.11	Enviornmental science diplomacy: Science engagement with the DPRK (환경과학을 통한 북한과의 국제협력 사례)	300,000	1,016,000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7.9	슬픈 아일랜드의 역사와 역사학	0	135,000
소계				4,626,250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9.1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호주(Australia)의 역할	500,000	232,200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10.1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질서와 한국	500,000	279,000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12.3	서양의 근대화와 모더니즘 미술, 그리고 그 이후	500,000	168,500
소계				2,179,700
총계				7,138,950

* 내부 연구위원이 발표자였던 경우 강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자료: 교육부

❑ 먼저, 2025년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내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수요포럼’ 운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집행된 일부 발표 주제 역시 각 내역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예컨대 ‘815 Histeria and the Tragicomedy: 건국, 건국절, 건국연도, 국적 논쟁’은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내역사업과의 연계성이 제한적이며,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질서와 한국’, ‘서양의 근대화와 모더니즘 미술, 그리고 그 이후’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내역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는 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집행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2025년 집행 양상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내역사업 예산을 사용하다가 9월 이후에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점이 확인됨. 이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내역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내역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방식은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당 사업의 집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재단은 수요포럼의 목적 중 하나로 직원 연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실제로 다양한 주제의 포럼 운영은 조직 내 지식 공유와 학습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함.

다만, 이러한 기능은 본질적으로 직원 교육·훈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정 목적사업의 성과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조직 전반의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측면이 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내역사업 예산에서 분산·임의 집행하기보다는, 재단 예산의 경상비 항목 중 직원 교육훈련비(일반수용비)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서 일부 발췌 >

(단위: 천원)

관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경상비			2,977,000		
	…	일반수용비	2,720,440	1.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2,239,676
				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86,174,130원×12월=	2,234,090
				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인상분 3,724,000원×1.5월=	5,586
				(중 략)	
				15. 직원 교육훈련비 240,000원×120명=	**28,800**
				(후 략)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과년도 수요포럼 운영 실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요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내역사업 예산이 아닌 직원 교육훈련비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내역사업에 포함된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관리운영 사업’[172] 예산에서 ‘역사 현안 관련 일본 현지 답사 및 의견 청취’ 명목의 공무국외출장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이는 당초 예산의 편성 목적과 예산서 기재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 ‘역사 현안 관련 일본 현지 답사 및 의견 청취’ 국외출장 집행 내역 >

(단위: 원)

계정명	날짜	적 요(지출건명)	거래처명	금액
일반수용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차량임차료, 보험료, 입장료 개산급	하*	5,838,250
일반수용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차량임차료, 보험료, 입장료 개산급	하*	116,210
일반수용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차량임차료, 보험료, 입장료 개산급	입*	200,000
일반수용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행사 수수료	하*	275,000
여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비	하*	2,560,200
여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비	박*	216,760
여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비	남*	126,440
여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비	이*외4인 식비	2,348,210
여비	2025/10/23	공무국외여행(일본) 여비	송*	93,930
여비	2025/11/17	공무국외여행(일본) 숙박비	호*	3,811,738
업무추진비	2025/11/17	공무국외여행(일본) 간담회	S*KA	168,366
업무추진비	2025/11/17	공무국외여행(일본) 간담회	H*RORO	475,367
합계				16,230,471

자료: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출부

172)

내역사업	-	세부사업	-	단위사업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구축 및 전산관리운영		역사자료 디지털플랫폼 및 전산관리운영

❑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DB 구축, 재단 운영 사이트의 유지·보수, 유튜브 콘텐츠 제작임. 따라서 '역사 현안 관련 일본 현지 답사 및 의견 청취' 명목의 국외출장은 당초 사업 내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는 사업계획서가 실제 집행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사업계획서 內 동 단위사업 설명자료 >

◦ **(사업 추진 절차)**
- **(DB 구축 및 홈페이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일상감사 의뢰 → 사업계획 수립 → 계약의뢰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사업 완료 보고 → 준공검사 → 사업비 정산
-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도서관 강화)** 사업계획 수립 → 수행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자료: 교육부

❑ 또한, 재단은 해당 국외출장의 목적이 재단 유튜브 동영상 소재 개발 및 영상 촬영이며, 이는 예산서상 일반수용비 지출 항목 중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음. 그러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뿐 아니라 여비와 업무추진비까지 함께 사용되었음. 더구나 해당 비목의 집행 목적에는 DB 구축만이 명시되어 있고, 국외 출장이 DB 구축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집행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산서 內 동 단위사업 산출내역 >

(단위: 천원)

목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1.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관리운영	580,000
	가. DB 구축 145000,000원×1식=	145,000
	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 100,000,000원×1식=	**100,000**
	다. 홈페이지 통폐합 및 재단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235,000,000원×1식=	235,000
	라. 디지털 도서관 강화 100,000,000원×1식=	100,000
여비	1.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관리운영	14,000
	가. DB 구축	**14,000**
	1) 국내여비 200,000원×2명×10회=	4,000
	2) 국외여비 1,000,000원×10명×1회=	**10,000**
업무추진비	1.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관리운영	6,000
	가. DB 구축 간담회 30,000원×10명×20회=	**6,0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은 사례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45조[173]가 정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단순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서·예산서·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또는 계획 변경 절차 준수 필요

❑ ‘교류 및 홍보’ 내역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인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174]은 국내외 우수 시민단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시민단체 8개를 대상으로 단체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사업계획서 內 동 단위사업 정량적 목표(계량) >

(단위: 건, 회)

지원	현장실사	시민사회 지원 간담회
8	1	10

< 예산서 內 동 단위사업 산출내역 >

(단위: 천원)

목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1.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5,000
	가. 심사비 200,000원×4명×3회=	2,400
	나. 정산보고 검토비 2,600,000원×1회=	2,600
여비	1.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500
	가. 지원사업 현장실사(국내) 100,000원×1명×5회=	500
업무추진비	1.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1,500
	가. 간담회비 30,000원×5명×10회=	1,500
지원비	1.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80,000
	가. 동북아역사 현안 및 독도·동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10,000,000원×8건=	**80,000**

자료: 교육부

174)

내역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교류 및 홍보 사업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그러나, 실제 집행 집행 과정에서는 총 지원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16개 단체로 확대하고, 단체별 지원금액을 5백만원으로 축소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할 때 대상 수 및 단체별 지원단가가 모두 변경된 것임.

< 2025년 시민사회단체 지원 현황 >

No	구분	단체명	지원금액(천원)
1	국내단체	나누며하나되기	5,000
2	국내단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5,000
3	국내단체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5,000
4	국내단체	(사)한일미래포럼	5,000
5	국내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5,500
6	국내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000
7	국내단체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5,000
소계			35,500
8	해외단체	(사)신시대 아시아 피스 아카데미	5,000
9	해외단체	(사)코리아협의회	5,000
10	해외단체	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5,000
11	해외단체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	5,000
12	해외단체	高麗博物館	5,000
13	해외단체	재독독도지킴이단	5,000
14	해외단체	태즈메이니아 한인봉사연합회	4,500
15	해외단체	일본 죽도=독도문제연구넷	5,000
16	해외단체	WAM	5,000
소계			44,500
총 지원금액			80,000천원

자료: 교육부

❑ 소수 단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다수 단체에 대한 분산지원은 대상 선정 방식, 기대 성과, 성과평가 기준 등에 구조적 차이를 수반함. 따라서 지원 대상 확대와 같은 사업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의사결정 경위가 명확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 동일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 기존의 지원 대상 수와 지원단가를 변경하면서도 별도의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절차[175]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이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 적정성 측면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재단은 향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절차

17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를 거치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1604-300)[176]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년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 집행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은 40년 이상 된 노후 교육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교육과정 실현과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0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177]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재정사업 75%, BTL사업[178] 25%의 비율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왔으나,

176) 문의: 02-6788-5192

177) 2020년 7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대표 과제는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AI)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 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임.

178) Build-Transfer-Lease : 민간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등을 건축하도록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임차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방식

연례적인 집행부진 등의 문제[179]로 2024년 이후 선정된 교육시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 및 사전기획이 완료된 총 1,604동(재정 1,161동, BTL 443동)의 교육시설에 대한 공사 및 BTL 사업비 상환 등 사후관리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2,886억 10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와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85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288,601	-	288,601	285,254	-	3,347	98.8

자료 : 교육부

179)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 : 2021년 58.9%, 2022년 37.6%, 2023년 52.5%, 2024년 80.2%

나) 검토의견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2025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8%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집행부진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불용액
2021	94,252	94,252	55,504	100.0	58.9	-
2022	431,527	412,412	162,155	95.6	37.6	19,115
2023	421,158	383,741	221,280	91.1	52.5	37,417
2024	358,484	331,165	287,557	92.4	80.2	27,319
2025	288,601	285,254	274,345	98.8	95.1	3,347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총 교부액 211억 6,400만원 중 118억 1,800만원 만을 집행(실집행률 55.8%)하여 여전히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부산·인천·충북·충남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였음.

< 사업시행 주체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교육부예산(A)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예산현액	집행액(C)			
서울교육청	21,164	21,164	6,082	27,246	17,687	21,164	11,818	9,324	235	55.8
부산교육청	21,859	20,662	4,566	25,228	24,773	20,662	20,224	438	17	92.5
대구교육청	20,934	20,934	2,600	23,534	23,534	20,934	20,934	0	0	100
인천교육청	13,076	12,865	1,123	13,988	13,837	12,865	12,714	151	0	97.2
광주교육청	4,612	4,612	2,798	7,410	7,061	4,612	4,558	54	295	98.8
대전교육청	6,930	6,930	0	6,930	6,930	6,930	6,930	0	0	100
울산교육청	1,080	1,080	0	1,080	1,052	1,080	1,052	28	0	97.4
세종교육청	0	0	254	254	254	0	0	0	0	-
경기교육청	36,275	36,275	10,669	46,944	46,944	36,275	36,275	0	0	100
강원교육청	11,360	11,266	0	11,266	11,266	11,266	11,266	0	0	99.2
충북교육청	14,717	14,717	1,939	16,656	16,106	14,717	14,167	550	0	96.3
충남교육청	25,010	24,140	226	24,366	23,867	24,140	23,856	284	215	95.4
전북교육청	17,997	17,997	2,206	20,203	20,145	17,997	17,939	58	0	99.7
전남교육청	28,788	28,393	3,904	32,297	32,297	28,393	28,393	0	0	98.6

사업 시행 주체 (기관명)	교육부 예산 (A)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경북 교육청	40,996	40,416	2,287	42,703	42,703	40,416	40,416	0	0	98.6
경남 교육청	22,307	22,307	3,682	25,989	25,989	22,307	22,307	0	0	100
제주 교육청	1,496	1,496	1,250	2,746	2,746	1,496	1,496	0	0	100
합계	288,601	285,254	43,586	328,840	317,191	285,254	274,345	10,887	762	95.1

자료: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① 단위 학교별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분기별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②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성립전 예산[180]으로 편성하던 지방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기간을 확보하는 등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사업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소음·분진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학생 분산 배치 과정에서 인근 학교의 수용 여건 부족,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설계 변경,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착공 시기 변

180)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경(여름방학 → 겨울방학)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전년도와 유사한 지연 사유가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원 컨설팅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의 사업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2026.6.30.기준)을 살펴보면, 202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액 268억원의 48.5%인 130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026년 상반기 기준 집행률은 5.4%(예산액 총 293억 8,300만원 중 15억 7,300만원이 집행)에 불과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편성방식 개선이 반복되는 집행부진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2026. 6. 30. 기준)

집행 기관	학교명	세출목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편성 시기
동부	면중초	건설비	4,000	1,386	329	8.2%	본예산
	홍릉초	건설비	5,000	5,000	-	0.0%	본예산
서부	북가좌초	건설비	2,323	-	-	0.0%	2026-06-24 (성립전)
	갈현초	건설비	2,000	-	-	0.0%	2026-06-24 (성립전)
남부	오류초	건설비	2,000	-	-	0.0%	2026-06-24 (성립전)
북부	도봉초	건설비	5,000	-	-	0.0%	본예산
중부	보광초	건설비	4,000	953	7	0.2%	2026-06-24 (성립전)

집행 기관	학교명	세출목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편성 시기
동작 관악	당곡초	건설비	2,500	-	-	0.0%	2026-06-24 (성립전)
교육 시설 안전과	유현초	BTL 원금	212	106	106	50.0%	2026-03-26 (성립전)
		BTL 이자	210	105	105	50.0%	2026-03-26 (성립전)
	수유초	BTL 원금	136	45	45	33.3%	2026-03-26 (성립전)
		BTL 이자	113	38	38	33.3%	2026-03-26 (성립전)
	신화중	BTL 원금	248	124	124	50.0%	2026-03-26 (성립전)
		BTL 이자	346	173	173	50.0%	2026-03-26 (성립전)
	금호여중	BTL 원금	269	134	134	50.0%	2026-03-26 (성립전)
		BTL 이자	343	171	171	50.0%	2026-03-26 (성립전)
	청량중	BTL 원금	341	170	170	50.0%	2026-03-26 (성립전)
		BTL 이자	342	171	171	50.0%	2026-03-26 (성립전)
합 계			29,383	8,576	1,573	5.4%	

자료 :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후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사업 추진 단계 별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년도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 집행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정보시스템구축사업(6034-300)[181]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정보화 사업의 추진일정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자체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구축(6034-300) 사업은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경영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자산운용시스템 및 정보화 기반 운영)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5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55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1%임.

181) 문의: 02-6788-5192

< 2025년도 정보시스템구축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 정보시스템구축	5,845	5,845	-	5,845	5,557	-	288	95.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74	4,365		4,365	4,077	-	288	93.4
○ 일반연구비(260-01)	337	1,480		1,480	1,480	-	-	100.0
○ 자산취득비(430-01)	1,334	-		-	-	-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대규모 자체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 동사업은 당초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억 7,400만원, 일반연구비(260-01) 3억 3,7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13억 3,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집행단계에서 자산취득비 13억 3,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각각 시설장비유지비(1억 9,100만원 증액)와 일반연구비(11억 4,300만원 증액)로 자체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공단은 대규모 계획변경이 발생한 사유를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편에 따른 행정지원시스템 연계 강화와 인건비 등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5년도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집행내역	집행금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공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2,190,505
	자산운용시스템 유지보수료	868,175
	보안관제 운영유지	363,870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요금	226,758
	통신선 및 서비스 요금(NCTI, SKB,, KT등)	174,299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경비등	253,782
	합계	**4,077,389**
일반연구비 (260-01)	**국가결산체계 시스템 재구축 사업**	**1,421,200**
	공유시스템 및 DB 암호화 개발 사업	39,965
	행정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18,660
	합계	**1,479,825**

자료 : 교육부

❑ 그러나 d-Brain 개편은 정부의 '국가결산체계 및 dBrain 기금결산시스템 개편'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이미 새로운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가 예정되어 있었음.[182)]

182) <국가결산체계 및 dBrain 기금결산시스템 개편 추진 일정>
- 1차년도(2022년) : 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최종 확정
- 2차년도(2023년) : 디브레인 개편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3차년도(2024년) : 디브레인 시스템 개발
- 4차년도(2025년) : 디브레인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5차년도(2026년) : 개편결산서(2025회계연도) 국회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4. 9. p. 2867.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또한 기존의 계약내용, 유지관리 범위 및 인건비 변동 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당초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전액 감액하여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연구비로 대규모 자체 변경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내용과 소요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자산취득비는 장비 취득을 위한 투자성 경비인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연구비는 운영·유지관리 성격의 경비로서 예산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 제70조제1항[18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84]에 따라 기금집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자체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비목을 전액 감액하여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수준의 대규모 변경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기금운용계

183)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84)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획 심의·의결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일정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자체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소요재원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6037-300)[185]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정책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 추계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등 재원이 되는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여(6037-3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186]함으로써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융자사업으로,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예산은 5,245억 9,400만원이 기타민간융자금(450-04)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5,245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임.

185) 문의: 02-6788-5192
186)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에서 1인 최대 6천만원(연금수급자 1천만원)까지 대여

<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 생활안정자금대여	524,594	524,594	-	524,594	524,551	-	43	99.9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524,594	524,594	-	524,594	524,551	-	43	99.9
합 계	524,594	524,594	-	524,594	524,551	-	43	99.9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의 정책수요 반영 및 재원운용 적정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서, 계상된 지출계획액 범위 내에서 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수년간 100%에 가까운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산상 집행실적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실제 정책수요의 충족 여부나 사업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제 생활안정자금대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시도한 건수는 사업의 실질적인 이용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청 대비 실제 지급률은 2024년 35.3%, 2025년 28.4%에 불과하였으며, 그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대여가 모두 집행되고 있으나 상당수 신청자가 예산 부족 또는 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로 대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산상 집행실적과 실제 정책성과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줌.

< 생활안정자금대여 신청 대비 지급 실적 현황 >

(단위 : 건, %)

연도	신청 시도 건수(A)	지급 건수(B)	지급률(B/A)
2024	165,111	58,238	35.3
2025	172,285	48,893	28.4

※ 신청 시도 건수 : 인터넷·모바일 접속을 통해 대여 신청을 시도한 건수
※ 최대 2년 치 데이터까지 보관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자료 재구성

❑ 이러한 정책수요는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생활안정자금대여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행복나눔대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여수요 관련 문항이 포함된 2023년 이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46.5%에서 2024년 78.6%, 2025년 8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비록 행복나눔대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한계는 있으나, 정책수요에 비해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활안정자금대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단위 :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행복나눔대여	전체 설문 응답자	816	1,113	1,115	856	820
	예산 증액 응답자	-	-	518	673	692
	예산 증액 응답 비율	-	-	46.5%	78.6%	84.4%

※ 2021~2022년은 설문 조사 문항 내 대여 수요와 관련된 문항이 없어 제외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획예산처도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동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87]

❑ 이와 같이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의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왔음.

187) 기획예산처, 「2026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2026.5. 1618p

최근 5년간 예산계획액은 2022년 8,346억원에서 2025년 5,246억원으로 약 3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한 대여 규모 또한 함께 축소되었음.

<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 예산 편성 ·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834,616	834,616	834,616	834,495	99.9	99.9	121
2023	711,847	695,958	695,958	695,701	99.9	99.9	257
2024	630,959	630,959	630,959	630,929	99.9	99.9	30
2025	524,594	524,594	524,594	524,551	99.9	99.9	43

자료 : 교육부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러한 예산 감액이 정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 한편,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의 운영재원의 주요 수입항목인 기타민간이자(54-544)[188]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189]는 2025년 결

188) 생활안정자금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산 결과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74.4%(기타민간이자) 및 56.0%(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에 그치는 등 수입계획과 실제 수납실적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두 수입항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최근 4년간 평균 기타민간이자수입은 96.3%,[19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수입은 99.8%[1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채권회수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계획 단계에서 실제 회수가능 규모와 이자수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은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대여를 실시하고,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통해 재원을 다시 확보하는 순환구조를 갖는 사업으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적정한 지출계획과 현실적인 수입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책수요에 비해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원계획 또한 실제 수납실적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189) 생활안정자금대여 및 국고위탁대여금 상환액
190)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 2022년 96.0%, 2023년 96.6%, 2024년 96.5%, 2025년 96.1%
191)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99.8%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신청건수, 지급률, 미지급 사유 등 사업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 추계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최근 수납실적과 회수가능성을 토대로 재원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연금급여(6131-400)[192]

○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개별 수급자의 생활보장과 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폐교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연금급여(6131-4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193]

(2) 결산개요

❑ 2025년 연금급여 예산은 당초 4조 9,21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금급여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하여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2)에서 2,031억 4,8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5조 1,248억 2,9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중 99.2%에 해당하는 5조 83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음.

192) 문의: 02-6788-5192
193) 퇴직급여 :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학연금 대상 기관에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경우 연금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
퇴직유족급여 :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 또는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2025년도 연금급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 연금급여	4,921,681	5,124,829	-	5,124,829	5,083,601	-	41,228	99.2
○ 민간이전 (320-03)	4,921,681	5,124,829	-	5,124,829	5,083,601	-	41,228	99.2
합 계	4,921,681	5,124,829	-	5,124,829	5,083,601	-	41,228	99.2

※ 자체변경 증감분 : 203,148백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2)에서 재원 확보)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사학연금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폐교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사학연금기금은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2021년 2조 1,350억원에서 2025년 8,334억원으로 61.0% 감소(연평균 △21.0%)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194)]

194) 2024년 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 최근 5년간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수입(A)	75,895	72,863	66,460	68,318	73,364	△0.8
지출(B)	54,545	57,071	61,236	63,825	65,030	4.5
재정수지(A-B)	21,350	15,792	5,224	4,493	8,334	△2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2026.7., p.192. 재구성

❑ 최근(2025.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가 작성한 「제6차 재정재계산」에서도 제5차 재정재계산(2020. 12.) 대비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각각 앞당겨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사학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 기금최고액 및 주요 변화시점 비교 >

구분	기금최고액(연도)	재정적자 발생시점	기금소진시점
제5차 재정추계	25.12조원(2028년)	2029년	2049년
제6차 재정추계	31.67조원(2027년)	2028년	2047년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 제6차재정재계산보고서, 2025.12., p.85.

❑ 연금급여(6131-400) 사업의 경우, 2025년 기금 결산 총지출[195] 6조

5,030억원 중 가장 큰 비중(78.2%, 5조 83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 및 결산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 및 중장기 재정관리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직제·정원의 개편에 따른 조기 퇴직연금(이하 "폐교연금") 지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 폐교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금지급 연령인 65세 이전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6]

이 경우, 정상적인 연금개시 시점보다 10 ~ 30년 먼저 연금수급을

---

195)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 6,010억 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 지급(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5조 8,726억 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 : 294억 원

19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서는 연금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공무원연금법」제45조제1항제4호에서 폐교 연금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 7.>
1. 65세가 되는 때
2.· 3. (생 략)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생 략)

개시하여 장기간 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금의 장기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197]

❑ 폐교연금 지급액은 2025년 말 기준 94억 8,900만원으로 연금급여 총 지출액(5조 836억원) 대비 비중은 0.2%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기금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수급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2025년 409명으로 6년간 38.6% 증가하였고,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61억 5,400만원에서 94억 8,900만원으로 약 54.3%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현황(2025년 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급자 수(누적)		295	319	338	351	377	406	409
수급액	폐교 이후~개시연령(65세) 전	4,048	3,685	3,628	3,407	3,028	2,995	2,999
	개시연령 이후	2,106	2,517	3,198	3,942	4,992	5,934	6,490
	합계	6,154	6,202	6,826	7,349	8,020	8,929	9,489

자료 : 교육부

197) <수급 개시 연령대별 폐교연금 수급자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인원	1	18	129	240	21	409

아울러 최근 5년간(2021 ~ 2025년) 연평균 128개교(누적 642개교)의 사립학교가 폐교하였고, 2026년 8월 시행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폐교연금 수급자·지급액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가추세와 향후 확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폐교에 따른 퇴직연금은 학교의 폐교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별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과 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정책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폐교연금 제도의 적용 규모와 재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98]

○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참여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성과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현장적용 사례의 권역별 편차(최대 18배)가 큰 만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증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여부 및 다른 학교로의 확산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은 AI 코스웨어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2024년 개발된 22개 교과목 중 2025년 다른 대학에서 실증한 교과목은 3개에 그치는 등 타 대학의 활용 수요가 제한적이었는 바, 사업 선정 단계에서 활용 수요와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은 공교육에 맞는 에듀테크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에듀테크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축·운영하고, 교사·기업이 함께 에듀테크를 개발·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198) 문의: 02-6788-5188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은 79억 3,800만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현액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7,938	-	-	7,938	7,938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성과조사의 응답률 제고와 권역별 성과관리 강화 등

❑ 내역사업인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함) 출연사업으로, 교육정보원이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각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운영함.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현장의 에듀테크 활

용 촉진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모델을 개발하며, 교사·학생·학부모 등에게 연수를 제공함.

< 2025년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별 운영 현황(8개소) >

지역	선정연도	주관기관	운영기관
대구	2021	대구시청/대구시교육청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		광주교육청/광주시청	광주교육대학교
경기(남부)		경기교육청/경기도청	경기대학교
서울	2024	서울교육청	건국대학교
부산		부산시청/부산교육청	부산교육대학교
경기(북부)		경기교육청/양주시청	경기도교육연구원
충북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 * (협력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전북		전북교육청	전주교육대학교

주. '21년 선정된 3개기관은 국비 100% 지원으로 기관당 약 5억원이 집행되며, '24년 선정된 5개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으로 기관당 약 4억원이 집행됨.
자료: 교육부

❑ 2025년 동 사업은 8개 권역에서 실증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성과 공유 등을 추진하였으며, 8개 소프트랩 운영기관 집행률도 98.5%로 예산은 대체로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실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KERIS) 소프트랩 운영 지원		768	768	-	100.0%
	에듀테크 실증 운영	127	127	-	100.0%
	에듀테크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3	153	-	100.0%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우수 실증사례 공모전, 자료집 등)	323	323	-	100.0%
	사업관리·운영 (인건비, 점검·평가 등)	165	165	-	100.0%
(8개 소프트랩 운영기관) 소프트랩 운영		2,510	2,473	37	**98.5%**
	실증 프로그램 운영	514	507	7	98.6%
	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529	526	3	99.4%
	성과공유 및 확산	362	352	10	97.2%
	사업 운영 및 관리비	509	499	10	98.0%
	전담인력 인건비	596	589	7	98.8%
계		3,278	3,241	37	98.9%

자료: 교육부

❑ 또한, 사업의 성과를 보면, 교사의 만족도는 90.1점, 기업의 만족도는 93.0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역량도 사업 참여 전 4.72점에서 참여 후 6.08점으로 향상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참여자 실증 만족도 >

구분	교사	기업
실증 참여가 만족스러운지	87.5점	94.0점
향후에도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지	92.8점	94.0점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지	90.0점	91.0점
실증 종합 만족도	**90.1점**	**93.0점**

< 실증 참여 전·후 체감하는 에듀테크 활용 역량(교사) >

구분	실증 이전		실증 이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리더십 단계(7점)	36	11.7	129	41.7
숙련 단계(6점)	55	17.9	95	30.6
응용 단계(5점)	80	26.1	66	21.5
적용 단계(4점)	80	26.1	19	6.2
탐색 단계(3점)	40	12.7	-	-
인식 단계(2점)	17	5.5	-	-
무관심 단계(1점)	1	0.3	-	-
평균(점수 환산)	**4.72점(62.0점)**		**6.08점(84.7점)**	

자료: 교육부

❑ 다만,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성과조사 응답률은 교사의 경우 2024년 54.6%에서 2025년 57.2%로, 기업은 37.5%에서 45.5%로 각각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참여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현재 만족도와 역량 향상이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4-2025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지원 성과 조사 응답 현황 >

(단위: 명)

구 분	조사 대상	참여 교사			참여 기업		
		대상	응답	응답률	대상	응답	응답률
2024년	'21~'24년 실증 참여 기업 및 교원	777	424	**54.6%**	96	36	**37.5%**
2025년	'25년 실증 참여 기업 및 교원	540	309	**57.2%**	55	25	**45.5%**

자료: 교육부

❑ 또한, 권역별 실증과제 수는 6~12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장적용 사례는 충북 926건, 대구 222건, 전북 199건인 반면 광주 50건, 경기북부 62건, 경기남부 66건 등 권역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권역별 여건 차이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우수 운영사례와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는 등 권역별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권역별 실증과제 및 현장적용과제 현황 >

(단위: 건)

지역	선정연도	실증 과제 수	적용 과제 수	현장적용 사례 수
대구	2021	9	9	222
광주		12	12	50
경기(남)		8	8	66
서울	2024	6	6	102
부산		8	8	178
경기(북)		8	8	62
충북		10	10	926
전북		9	9	199
합계		70	70	1,805

자료: 교육부

❑ 아울러 현재 사업성과는 실증과제 수, 만족도, 현장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목적이 공교육 현장에 에듀테크를 확산하는 데 있는 만큼 실증 이후 학교의 지속 활용 여부, 다른 학교로의 확산 실적, 교육청 도입 여부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AI 코스웨어의 확산성 및 예산 효율성 제고 필요

❑ 내역사업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대학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계하여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에서 실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4년에는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 22개가 신규 개발되었으며, 2025년에는 2개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7개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는 한편, 2024년에 개발된 교과목 중 14개는 개발 대학에서 고도화하고, 3개는 신규 참여 대학에서 실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2024~2025년 사업 운영·참여 대학의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 현황 >

개발연도	연번	구분	과정	교과목/프로그램	2025년 운영 실적
2024 신규개발 22개	1	대학1	교과	일반물리학 및 실험	**2024년 개발대학에서 고도화** 14개 (63.6%)
	2	대학1	교과	대중문화속의영어의이해	
	3	대학2	교과	디지털 기술과 미래사회	
	4	대학3	교과	수학으로 여는 세상(대학수학)	
	5	대학3	교과	간호연구	
	6	대학4	교과	영어학개론	
	7	대학5	교과	경제통계학	
	8	대학5	교과	성인 학습 및 상담	
	9	대학6	교과	미래사회와 소프트웨어의 이해	
	10	대학6	교과	보육과정	
	11	대학7	교과	수학과 통계의 세계	
	12	대학7	교과	대학생을 위한 기본수학	
	13	대학9	교과	컴퓨팅사고-데이터기초	
	14	대학9	교과	C프로그래밍	

개발연도	연번	구분	과정	교과목/프로그램	2025년 운영 실적
				(데이터분석기초)	**타대학에서 실증** 3개 (13.6%)
	15	대학9	교과	범죄와 형벌	
	16	대학10	교과	AI융합영어(초급)	
	17	대학2	비교과	대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완전정복	**2025년 사업 제외** 6개 (27.3%)
	18	대학8	비교과	학습공동체(스터디그룹)	
	19	대학9	교과	창의코딩-모두의R	
	20	대학8	교과	중급 일본어강독	
	21	대학4	교과	기초수학	
	22	대학10	교과	초급토익	
2025 신규개발 7개	23	대학11	교과	AI와함께하는 대학수학	(참고) 2개 대학 공동개발
		대학12	교과	대학수학2	
	24	대학3	교과	AI코치 헬스케어용어	
		대학13	교과	AI코치 헬스케어용어	
	25	대학14	교과	중국어회화	
		대학15	교과	Beginner Chinese I	
	26	대학16	교과	음악의이해	
		대학17	교과	음악의이해	
	27	대학18	교과	손에 잡히는 데이터시각화	
		대학9	교과	모두의파이썬	
	28	대학9	교과	원가관리회계	
		대학19	교과	원가회계1	
	29	대학20	교과	회계원리2	
		대학21	교과	재무회계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24년에는 수학·기초과학·어문 계열 등 기초 교과목을 중심으로 AI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여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25년에는 대학 수요를 반영하되 범용성과 확산성을 고려하여 기초 및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이에 따르면, 사업의 핵심 성과는 개발된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

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25년 사업 결과를 보면, 2024년에 개발된 22개 교과목 가운데 개발 대학이 동일 교과목을 고도화한 경우는 14개(63.6%)였으나, 다른 대학에서 이를 실증한 경우는 3개(1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개(27.3%)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교육부는 2025년 사업에서 기존 교과목을 다른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참여 대학을 공모하였으나 신청 대학은 3개교에 그쳤으며, 신청 대학 모두를 선정하였음. 이는 개발된 AI 코스웨어의 다른 대학 활용 수요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이 목표로 하는 확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개발 대학의 고도화 수요(14개)에 비해 다른 대학의 실증 수요(3개)가 현저히 적은 것은 대학별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과목 운영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한 AI 코스웨어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줌.

❑ 또한, 2025년 사업에서 제외된 6개 교과목 중 2개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대학별 운영 방식의 차이가 커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이 어려웠으며, 나머지 4개는 교과목 폐강, 원어강의 전환 등의 사유로 개발 대학이 계속 참여를 희망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대학과 에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AI 코스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 단계에서 교과목의 교육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의 활용 가능성, 운영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 1개당 평균 약 1,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 이후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교과목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동일 교과목을 2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기 개발된 AI 코스웨어의 운영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존 대학의 고도화 수요는 19개(65.5%), 타대학 실증 수요는 13개(44.8%)로 나타나 2025년에 비해 AI 코스웨어의 활용 및 확산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 다만, 2026년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는 향후 활용 의향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AI 코스웨어의 활용 및 확산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공동개발 방식의 도입이 실제 타 대학 활용 확대와 사업성과 제고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19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사업수익은 최근 5년간 매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결산은 2021년 100만원, 2022년 0원, 2023년 100만원, 2024년 4,500만원, 2025년 7,600만원으로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바, 과거 결산실적과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을 반영하여 사업수익 예산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1303-500)은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349억 4,100만원이며 해당 금액 전액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부되었음.

199) 문의: 02-6788-5188

< 2025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4,941	-	34,941	34,941	-	-	10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사업수익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재원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및 수탁사업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자체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0.3%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출연사업비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최근 5년간 자체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2021년 7억 3,900만원에서 2025년 13억 9,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비 확보율도 2021년 49.4%에서 2025년 89.2%까지 개선되는 등 자체수입 확보 실적은 점차 향상되고 있음.

< 자체수입 목표(예산) 대비 확보(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계획	실적
사업수입	198	1	198	0	198	1	198	45	198	76
사업외수입	120	108	120	174	185	247	185	464	185	501
이자수입	70	30	70	118	147	197	147	385	147	361
잡수입	50	78	50	57	38	50	38	79	38	140
전년이월금	1,178	630	1,178	686	1,178	634	1,178	795	1,178	815
계	1,496	739	1,496	861	1,561	882	1,561	1,304	1,561	1,392
(확보율)		(49.4)		(57.5)		(56.5)		(83.5)		(89.2)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다만, 사업수익은 최근 5년간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수익은 매년 1억 9,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결산은 2021년 100만원, 2022년 0원, 2023년 100만원, 2024년 4,500만원, 2025년 7,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각각 1.0%, 0%, 1.0%, 22.7%, 38.4% 수준으로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학술정보 제공 등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출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

며, 자체수입 부족분은 출연사업비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정보보호 사업,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대상 교육·컨설팅 등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공적 기능과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자체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최근 수년간 사업수익이 예산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수익 예산은 과거 결산실적과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신규 수익사업의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수익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200]

○ 교육부는 2025년 동 사업의 집행률이 56.8%에 불과하고, 최근 집행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23년 3억 6,400만원 → 2024년 3억 2,700만원 → 2025년 2억 6,300만원)를 고려하여, 과거 집행실적과 향후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7011-255)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4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3,600만원과 이·전용 등 △1,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이 중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59.1%임.

200) 문의: 02-6788-5188

< 2025년도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	445	36	△18	463	263	163	37	59.1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59.1%에서 132.8%까지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동 사업의 예산은 2023년 2억 7,400만원에서 2024년 4억 2,800만원으로 1억 5,400만원(56.2%) 증가하였고, 2025년에도 4억 4,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0만원 증가하였음. 반면, 집행액은 2023년 3억 6,400만원에서 2024년 3억 2,700만원으로 3,700만원(10.2%)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억 6,300만원으로 다시 6,400만원(19.6%) 감소하여 예산 규모는 확대된 반면 실제 집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292	292	21	22	322	289	98.9	89.7	34	-
2023	274	274	34	60	368	364	132.8	98.9	3	1
2024	428	428	2	△67	363	327	76.4	90	36	-
2025	445	445	36	△18	463	263	59.1	56.8	163	37

자료 : 교육부

❑ 일반적으로 기본경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적·반복적 경비로서 집행 수요를 비교적 예측하기 용이한 예산에 해당함. 그럼에도 최근 예산 증액과 함께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자료화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당초 추진을 검토했던 회의 및 행사, 관련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2026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으로 변화하여 조직 및 인원이 증가하고,[201] AI 교육 및 인

201) 기존 3과 1팀, 44명(정원기준)에서 6과 1팀, 62명(정원기준)으로 증가함.

재양성 등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기본경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수요가 일정 부분 증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의 2025년 집행률은 59.1%에 그치고 있고 최근 집행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02]

○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취업성과를 공신력 있는 취업통계와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트캠프의 선정 시 제시한 기업 협력 및 취업지원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기업 참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849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828억 5,000만원

202) 문의: 02-6788-5188

을 집행하고 21억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9%임.

< 2025년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4,950	-	184,950	182,850	2,100	98.9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취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중 하나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203] 2025년에는 예산현액 682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음.

< 2025년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결산내역 >

구 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6,000	68,250	68,250	68,250	-

자료: 교육부

203) 부트캠프(bootcamp)는 원래 군대에서 신병을 단기간에 집중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교육 분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실무 중심으로 몰입 교육을 하는 과정을 뜻함.

동 사업은 2025년에는 1,586개 기업과 공동으로 629개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47개 대학에서 총 7,641명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204]

< 2025년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성과 >

분야	주요 참여기업	교육 분야	양성인원
반도체	DB하이텍, 실리콘마이터스, 네패스 등	반도체 설계, 소부장 등	4,833명
이차전지	삼성디스플레이, AP시스템, 원익IPS 등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공정 등	508명
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이차전지 소재, 공정, 평가, 리사이클	490명
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림제약, 수젠텍 등	생산공정, 품질관리, 생산 등	716명
항공우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첨단항공 · 우주비행체 제조 등	519명
미래차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등	자율주행, SDV, 차체제어, 차량안전	226명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이노그리드 등	클라우드, 생성형AI, AI보안	349명

자료: 교육부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아니라 교육 이수자의 실제 취업성과에 있다고 할 것임.

204) 2025년 총 47개 대학 중 인공지능 분야 3개 대학(7억 2,500만원 교부)을 제외하고 44개 대학에 각각 14억원~15억 2,500만원을 교부하였음.

❑ 현재 동 사업의 성과평가는 교육과정 추진의 적정성,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핵심성과인 취업성과는 '(2) 운영실적(정량) 중 ④ 인재양성'의 핵심성과지표(안)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성과평가 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배점
1. 당해 연도 사업 수행 실적	(1) 교육과정 추진 적정성(정성)		200
	(2) 운영실적 (정량)	① 사업지원체계, ② 교육인프라 ③ 교육프로그램 개발·개선, **④ 인재양성**, ⑤ 자율지표	300
	(3) 사업비 사용실적 (정성)		100
	(4) 성과관리 (정성)		100
2. 향후 계획	(1) 차년도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정성)		200
	(2) 사업비 편성 (정성)		100
합 계			1,000점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가 그간 성과평가에서 관리했던 취업성과는 대학별 자체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대상,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이 대학마다 상이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핵심 성과지표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어렵고, 사업 간 성과 비교나 재정투자의 효율성 판단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2026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취업성과를 관리할 계획인 바, 향후에는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취업성과를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점을 고려하여,[205] 2026년 7월말 현재에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연계하여 취업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 부트캠프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간 연계성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선정평가는 대학의 교육역량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의 우수성 및 협업계획,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지원 계획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05)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졸업자의 취업여부를 2025년 12월부터 확인이 가능하였음.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선정기준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 대학의 역량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 여건(교원, 교과목 등)	150
2. 사업 추진내용	(1) 추진체계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30
		▪참여기업의 우수성 및 협업계획의 안정성(협약기업 지원방안의 효과성 등)	50
		▪교원 및 인프라 확보(활용) 계획의 적정성	20
	(2)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 및 효과성	60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현장성	70
		▪학생 모집·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적극성	70
	(3) 취업 지원 방안	**▪교육 이수자 관리 및 취업 지원 계획 적정성**	**200**
	(4) 대학밖 자원의 활용	▪산업계 전문가 및 외부인프라 등 활용방안 적정성	150
	(5) 제도개선	▪학사제도 운영 개선(선택권 확충, 학점인정 확대 등) ▪교원제도 운영 개선(산업계 인사 활용 활성화 등)	100
3.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예산배분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중복투자 방지계획의 적정성	50
4. 성과관리 계획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50
5. 가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50), 지자체·민간 대응투자(50)	가점
합 계			1,00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사업 수행 이후의 성과평가에서는 선정 당시 제시한 취업지원 계획이나 기업 협력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취업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결과적으로 사업 선정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간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업계획서상 우수한 취업지원 계획을 제시한 대학과 실제 취업성과를 창출한 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와 우수사례 확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선정 당시 제시한 주요 성과목표와 사업 종료 후 실적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는 기업-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1,586개 기업이 참여한 점을 사업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기업 참여 규모 자체는 사업의 외형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기업 협력이 실질적인 취업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이 교육과정 공동개발에 참여한 경우와 현장실습 제공, 프로젝트 운영, 채용 연계까지 수행한 경우는 산업현장과의 협력 수준과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에도 현재의 성과관리 체계에서는 이러한 참여 수준이나 협력의 질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또한, 협약기업의 실제 채용실적이나 교육 이수자의 협약기업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할 경우 기업 참여 확대가 실질적인 취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핵심 목표인 산업현장과 대학 간 미스매치 해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참여기업 수뿐만 아니라 기업의 교육과정 참여 수준, 현장실습 운영 실적, 채용 연계 실적, 협약기업 취업률 등 기업 협력의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06]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연간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임에도 첨단분야별 교과목 및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성과와 지원금 대비 교육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핵심 교육성과를 성과평가와 사업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1조 9,410억원이며, 이·전용 등 5,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9,410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조 9,33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75억 3,1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9.6%임.

206) 문의: 02-6788-5188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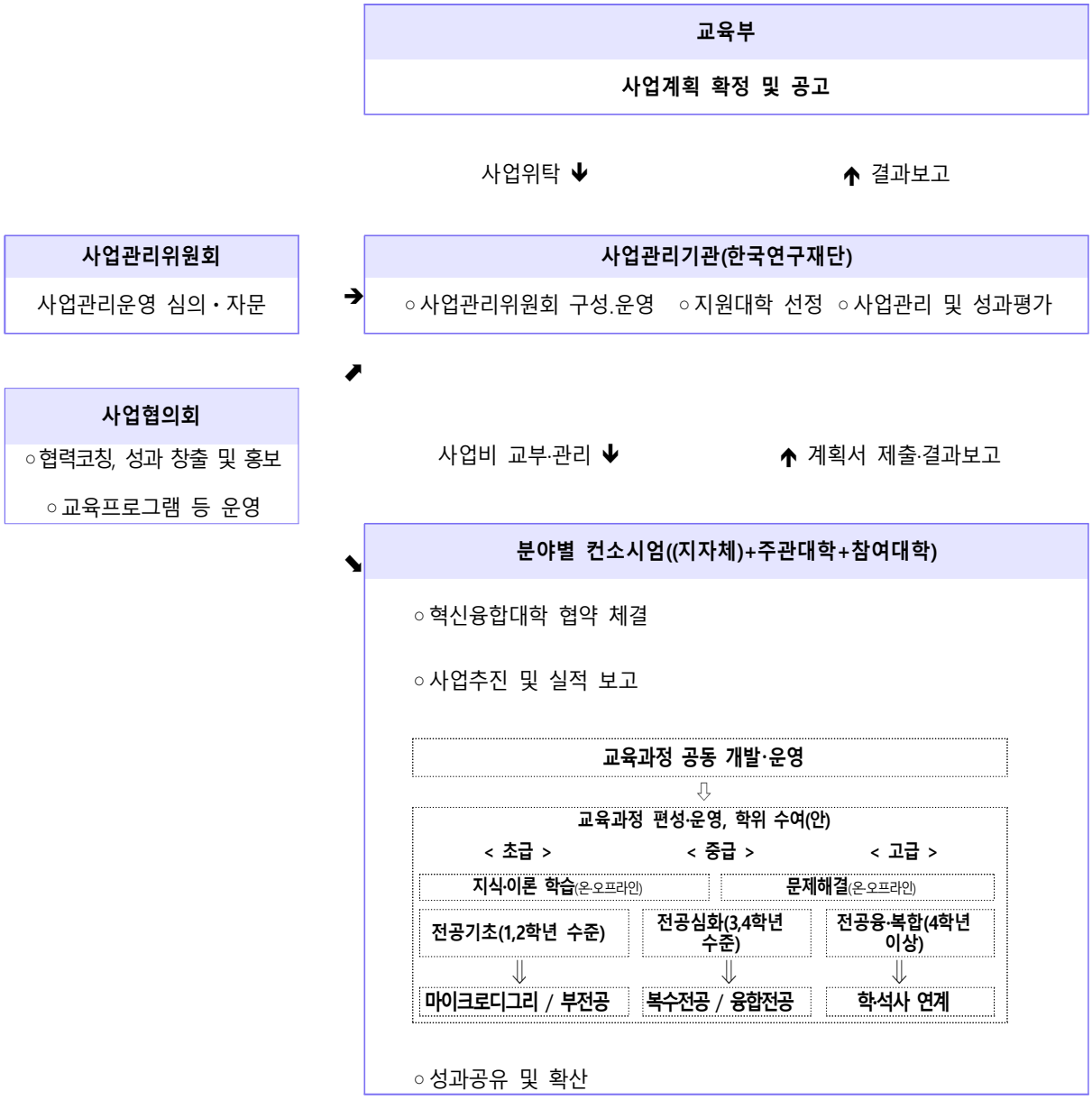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941,000	50	1,941,050	1,933,519	7,531	99.6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 교육성과 중심의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첨단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집행절차 >



자료: 교육부

❑ 2025년 기준 동 사업에는 총 18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97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컨소시엄별로도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임.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18개 컨소시엄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	주관대학	참여대학	지원 금액		
				'23.	'24.	'25.
1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11,200	10,800	10,900
2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10,900	10,800	10,900
3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11,050	10,950	10,700
4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12,200	13,200	12,550
5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12,200	13,200	12,550
6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11,200	10,800	10,900
7	지능형로봇	한양대(ERICA)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공학대, 영진전문대	11,200	10,800	10,900
8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11,200	10,800	10,900
9	항공·드론	한국항공대	인하대, 경북대, 한서대, 연암공과대	10,200	10,850	10,200
10	반도체소부장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국공학대, 대림대	10,200	11,250	10,200
11	이차전지	충북대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	10,200	11,100	10,950
12	차세대통신	국민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	10,200	10,850	10,950
13	에코업	고려대(세종)	고려대, 건국대, 영남대, 전주비전대	10,200	10,850	10,550
14	그린바이오	충남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연암대	'24. 선정	10,200	10,500
15	첨단소재·나노융합	중앙대	강원대, 한남대, 국립금오공과대, 인하공업전문대		10,200	10,800
16	데이터보안·활용융합	강원대	아주대, 충남대, 한양대(ERICA), 영남이공대		10,200	10,800
17	차세대 디스플레이	단국대	경희대, 한서대, 호서대, 충북보건과학대		10,200	11,500
18	사물인터넷	세종대	대전대, 동국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10,200	10,500
합 계				142,150	197,250	197,250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에 대해 교육부는 단계평가와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자원 확보, 제도개선, 지·

산·학 프로젝트, 공유교과 운영 등 정량지표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반 구축, 컨소시엄 운영, 성과확산,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단계평가 및 연차평가의 기준 >

① 단계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 당해 연도 사업 수행 실적	(1) 운영실적 (정량)	①교육자원 확보, ②교육과정 개발·운영 ③제도 개선, ④지산학 프로젝트, ⑤공유교과 등	100
	(2) 교육과정 및 교육기반(정성)		180
	(3) 제도개선 및 교원·학생 참여 지원 등(정성)		120
	(4) 컨소시엄 내·외 공유 및 성과확산(정성)		120
	(5) 1차년도 연차점검 실적		180
2. 향후 계획	(1) 차년도 계획의 적절성 (정성)		180
	(2) 예산 편성 및 집행, 성과관리계획(정성)		120
합계			1,000

② 단계평가 이후 연차평가

구 분	평 가 항목		배점
당해 연도 사업 수행 실적	(1) 운영실적 (정량)	①교육자원 확보, ②교육과정 개발·운영 ③제도 개선, ④지산학 프로젝트, ⑤공유교과 등	300
	(2) 교육과정 및 교육기반(정성)		240
	(3) 제도개선 및 교원·학생 참여 지원 등(정성)		200
	(4) 컨소시엄 내·외 공유 및 성과확산(정성)		140
	(5)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 (정성)		120
합계			1,000

자료: 교육부

이처럼 교육부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있는 만큼, 실제 교육성과가 사업성과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기준 컨소시엄별 교육성과를 살펴보면, 교과목 이수자는 지능형로봇 분야가 3만 7,941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반도체소부장 분야는 2,872명으로 약 13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도 지능형로봇 분야는 1,586명인 반면, 사물인터넷 분야는 51명으로 약 3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교과목 이수자 수 및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수 현황 >

(단위 : 명)

구분	분야	교과목 이수자 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수
1	인공지능	21,652	167
2	빅데이터	11,138	747
3	차세대반도체	7,472	258
4	미래자동차	14,839	1,131
5	바이오헬스	18,438	1,104
6	실감미디어	13,418	928
7	지능형로봇	37,941	1,586
8	에너지신산업	6,424	134
9	항공드론	7,031	537
10	반도체소부장	2,872	130
11	이차전지	17,624	429
12	차세대통신	18,041	1,038
13	에코업	5,880	408

구분	분야	교과목 이수자 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수
14	그린바이오	14,139	496
15	첨단소재나노융합	4,539	126
16	데이터보안활용융합	11,253	411
17	차세대디스플레이	4,800	399
18	사물인터넷	11,825	51

주.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는 특정 역량·직무에 필요한 최소 단위의 소규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학위와 별개로 이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임.
자료: 교육부

물론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의 특성, 실험·실습 비중, 장비 구축 필요성 및 교육여건 등이 서로 달라 단순히 이수자 수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컨소시엄별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목 이수자와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등 핵심 교육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원금 대비 교육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사한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능형로봇 분야의 교과목 이수자 1인당 비용은 28만 7,000원,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1인당 비용은 687만 3,000원인 반면,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교과목 이수자 1인당 비용은 355만 2,000원으로 지능형로봇의 약 12.4

배에 달하고, 사물인터넷 분야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1인당 비용은 2억 588만원으로 지능형로봇의 약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업비 투입 대비 교육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예시) 과정별 1인당 소요비용 현황 >

분야	2025년 지원금액	교과목 이수자 수	교과목 이수자 대비 1인당 비용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 대비 1인당 비용
지능형로봇	109억원	37,941명	28만 7,000원	1,586명	687만 3,000원
반도체소부장	102억원	2,872명	355만 2,000원	130명	7,846만 2,000원
사물인터넷	105억원	11,825명	88만 8,000원	51명	2억 588만원

❑ 따라서 교육부는 첨단분야별 교육환경과 운영 여건 등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원금 대비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분야별 성과 편차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가 우수한 운영모델은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는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학생지원국

<일반회계>

1) 교육기부활성화사업(1035-404)[207]

○ 교육부는 신규 내역사업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세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규 내역사업이 기존 사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 간 역할 구분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부활성화(1035-404)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자원 발굴, 학교와의 매칭 및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교육기부 자원 발굴, ② 체계적 지원 강화, ③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④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17개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늘봄학교 프로그램[208]의 원

207) 문의: 02-6788-5192

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 관리 사업으로, 각 참여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범부처 늘봄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피드백, 강사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예산은 32억 5,000만원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209)]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250	-	3,250	3,250	-	-	100.0
○ 교육기부 자원 발굴	680	-	680	680	-	-	100.0
○ 체계적 지원 강화	200	-	200	200	-	-	100.0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560	-	560	560	-	-	100.0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1,310	-	1,310	1,310	-	-	100.0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500	-	500	500	-	-	100.0

자료: 교육부

208) 17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부처별 특성이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범부처 총 사업 예산은 10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9) 다만,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32억 5,000만원 중 위탁사업 정산반납액(63,351,567원)과 발생이자(20,967,367원)을 합한 총 84,318,934이 반납되었음.

나) 검토의견: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면밀히 검토 필요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은 표면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전년 대비 6,300만원(1.9%) 감액)의 예산이 편성·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신규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제외한 기존 내역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300만원(△17%)이 감액 편성·집행되었음.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313	3,250	△63	△1.9
○ 교육기부 자원 발굴	683	680	△3	△0.4
○ 체계적 지원 강화	432	200	△232	△53.7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836	560	△276	△33.0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1,362	1,310	△52	△3.8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	500	순증	순증

자료 : 교육부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교육기부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늘봄학교와 교육기부가 그 내용과 취지가 상이하고 운영기준 및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사업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액된 예산이 보다 효율

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편성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이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과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 바 있음.[210]

❑ 그러나 2025년도 교육기부 지원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기부포털[211] 방문자 수, 개인기부자 발굴·지원 인원 및 대학생 교육기부[212] 수혜 학생 인원 등에서 전년대비 뚜렷한 감소를 보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이 기존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5년도 교육기부 지원 성과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교육기부 포털	방문자(명)	256,048	293,974	232,344	377,899	348,102
	프로그램 등록(종)	202	307	219	117	174
우수기관 인증(건)		46	35	37	37	34
개인기부자 발굴·지원(명)		146	111	115	139	70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지원(개)	355	353	335	357	359
	수혜 학생(명)	7,673	7,901	7,728	7,136	7,024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2025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결과보고서,2026.3.,p5.

210) 2025년도 교육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2024.11., PP.470 ~ 475.

211)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부자와 수혜자(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상호 매칭과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212) 대학생 동아리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매칭 및 활동비 지원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연계 대학생 교육기부자 활동 지원

❑ 또한 신규 편성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예산 5억 원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범부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총괄·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집행되어, 기존 교육기부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2025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통기준 마련	20	20	100
범부처 늘봄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피드백	30	30	100
강사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기준 마련 적용	200	200	100
늘봄프로그램 홍보, 협의체 운영 등 사업관리비	250	250	100
합 계	500	500	100

❑ 교육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사업인 교육기부 거점 지원센터에서 발굴한 우수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54종의 프로그램을 92학급에 공급하였고, 기존 교육기부 박람회와 늘봄학교 사업을 연계하여 '온동네·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소요예산 5억원, 관람인원 394,575명),

이는 신규 편성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5억원)' 예산은 범부처 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해서 집행하고, 기존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신규 내역사업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세부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규 내역사업이 기존 사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 간 역할 구분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급여[213]

○ 교육부는 교육급여 지급 계획인원 산정 시 최근 수급인원 증가 추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급여(1131-300)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214]에 근거하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교육 관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형태로 운영됨.

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약 31

---

213) 문의: 02-6788-5184

2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만 명을 대상으로 함. 급여는 ① 교육활동지원비, ② 교과서비, ③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되고, 교과서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별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지급됨.

교육활동지원비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습 준비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로, 2022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바우처는 일부 업종(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2025년 교육급여 제도 개요 >

(단위: 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87,000	-	
중 학 생	679,000	-	
고등학생	768,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자료: 교육부,「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651억 7,100만원으로, 1,65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교육급여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교육급여	165,171	-	165,171	165,149	-	22	100

나) 검토의견: 교육급여 수급인원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교육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교육급여 지급 계획인원을 29만 4,735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 인원은 31만 5,519명[215]에 이르러 당초 계획 대비 약 2만 1천명이 초과되었음.

< 최근 5개년 지급 계획인원 및 실제 지급인원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 계획인원	311,589	306,466	313,442	305,628	**294,735**
실제 지급인원	308,634	303,730	313,832	315,463	**315,519**
오차	-2,955	-2,736	390	9,835	**20,784**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2023~2024년 교육급여 사업에서는 전전년도의 학교급별 수급자 수에 학교급별 학령인구 3개년 평균 증감율을 두 차례 곱하여 지급 계획인원을 산출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사업연도의 학교급별 학생수 추계(KEDI)에 전전 연도 12월 기준 수급자 비율(수급자 수/전체 학생수)을 곱하도록 산정 방식을 변경하였음.

< 2024년 지급 계획인원 산정 내역 >

(단위: 명)

구분	학교급	'22년 수급자 수 (12월 기준)	'23년 수급자 수 (예상)	'24년 지급 계획인원 (예상)
교육활동지원비	초	133,103	132,304	131,510
	중	87,794	88,848	89,914
	고	89,309	86,719	84,204
교과서대	고	1,928	1,872	1,817
입학금·수업료	고	2,736	2,656	2,578

※ 학교급별 학령인구 3개년 평균 증가율(초:△0.6%, 중:1.2%, 고:△2.9%)을 '22년 수급자 수에 적용하여 '23년 수급자 수를 산출하고, 산출한 '23년 수급자 수에 3개년 평균 증가율 적용하여 '24년 수급자 수 산출

자료: 교육부

215) 2026년 8월 현재 2025년도 교육급여 사업 정산 진행 중으로, 경미한 수치 변경 가능

< 2025년 지급 계획인원 산정 내역 >

(단위: 명)

구분	'25년 학생수 추계(KEDI)	전전연도 12월 기준 수급자 비율	'25년 지급 계획인원
초	2,329,381	4.9%	114,072
중	1,375,902	6.4%	88,284
고	1,310,845	7.0%	92,379
합계	5,016,128		294,735

자료: 교육부

이러한 산정 방식 변경은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 비율은 2023년 100.1%, 2024년 103.2%에서 2025년 107.1%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행 산정 방식은 최근의 수급인원 증가 추세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5개년 지급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 비율 >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계획인원		311,589	306,466	313,442	305,628	294,735	예산서 인원
지급인원	NEIS 추출	308,634	303,730	302,534	304,661	307,304	(매년 12.31. 기준) 중도탈락자 미포함
	한국장학재단			313,832	315,463	315,519	실제 지급인원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 비율		99.1	99.1	100.1	103.2	107.1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지급계획 인원이 실제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산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첫째,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 교육급여 사업의 급여액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계획인원과 실제 지급인원과의 차이는 사후 정산을 통해 조정됨. 즉, 계획 대비 부족분이 발생한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추후 교육부로부터 보전받고, 반대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연도에 잡수입 형태로 반납하는 구조임.

실제 지급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청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해야 하며, 2023년 사업 정산이 2026년에 이루어지는 등 정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특히 최근과 같이 초과비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최근 3개연도 사업 정산분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반영 연도	정산분 예산
2021년 사업	2023년 예산	3,916
2022년 사업	2024년 예산	3,651
	2025년 예산	1,834
2023년 사업	2026년 예산	971

❑ 둘째, 교육급여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계획예산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정산분이 별도 예산으로 분산 반영됨에 따라 사업 전체 규모를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지고 있음.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셋째, 교육부의 중장기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정산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를 단년도에 반영하기 어려워 다년도에 걸쳐 분산 편성하게 되고, 이는 향후 교육급여 단가 인상이나 기타 교육복지 사업 확대 시 재정 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단순히 과거 시점의 수급인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최근 수급인원 증가 추세, 경제여건 변화, 정책 요인 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추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216)]

○ 교육부는 시험 일정과 성과 운영비 제도 운영 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단일 회차 중심의 성과평과 구조를 개선하여 응시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운영기관이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체험학습의 교육적 범위와 검정고시 학습과의 연계성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관련 지침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4131-306)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화지 못한 학습자들의 학력보완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검정고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지원 및 상담센터·홈페이지 운영, 교·강사 연수지원을 통해 학습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임.

내역사업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25년 기준 프로그램 운영기관 40개소와, 거점기관 6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음. 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기관별로 기본 운영비 300~700만원, 성과 운영비 100~30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검정고시에 대비한

216) 문의: 02-6788-5184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거점기관에는 기관별로 약 5백만원을 지원하며, 권역 내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함.

❑ 한편, 동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검정고시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해당 센터가 사업의 집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5,8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임.

< 2025년도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558	-	558	558	-	-	10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73	-	273	273	-	-	100
○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285	-	285	285	-	-	100

나) 검토의견

(1) 성과 운영비 제도의 추진 일정 및 평가 지표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본 운영비와 성과 운영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기본 운영비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C등급 300만원(12개소), B등급 500만원(20개소), A등급 700만원(8개소)이 배정됨.

성과 운영비는 202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당해연도 1회 검정고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응시율과 합격률을 각각 80:20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지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D등급은 미지급(10개소), C등급 100만원(10개소), B등급 200만원(10개소), A등급 300만원(10개소)이 지원됨.

< 기본 운영비 및 성과 운영비 개요 >

기본 운영비 (총 192백만원)				성과 운영비 (총 60백만원)		
평가등급	지원기관	지원액		성과등급	지원기관	지원액
A	8개	7백만원 내외	+	A	10개	3백만원 내외
B	20개	5백만원 내외		B	10개	2백만원 내외
C	12개	3백만원 내외		C	10개	1백만원 내외
D	미선정	-		D	10개	미지급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고」

❑ 현행 성과 운영비 제도는 사업 운영 일정과 성과평가 시점 간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매년 사업은 1~2월 운영기관·거점기관 공모, 3월 초 사업 선정 결과 발표, 3월 중순 기본 운영비의 70% 교부, 9월 하순 잔여 기본 운영비 30% 및 성과 운영비 교부 순으로 진행됨.

매년 제1회 검정고시는 2월 중·하순 원서접수, 4월 초·중순에 시험이 실시되어, 운영비 교부 이전에 원서접수는 완료되며, 운영비 교부로부터 시험일까지는 약 2주 내외에 불과함. 이에 매년 제1회 검정고시의 응시율·합격률 지표는 당해 연도 사업 운영의 성과라기보다 기존 학습 상태나 사업 운영 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25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지원 내역사업 운영 일정 >

프로그램 운영기관/ 거점기관 공모 (~2.12.)	심사·선정 (2~3월)	기본 운영비 70% 교부 (3월 중순)	중간점검 및 컨설팅 (5~8월)	기본 운영비 30%, 성과 운영비 교부 (9월 하순)	운영 결과 보고 ('26.1월)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고」

< 매년 제1회 검정고시 실시 일정 >

시험 공고 (1월말~2월초)	응시원서 접수 (2월 중·하순)	시험 실시 (4월 초·중순)	합격자 발표 (5월 중순)

자료: 검정고시지원센터 누리집

❑ 또한, 성과 운영비 지급기준이 당해연도 제1회 검정고시 결과만을 반영하는 방식 역시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8월말 합격자가 발표되는 제2회 검정고시 결과까지 반영할 경우 10월 이후에야 성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어 예산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단일 회차의 시험 결과만으로 기관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연간 사업 운영 성과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움.

❑ 평가지표에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평가지표는 응시율과 합격률을 8:2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어, 기관으로 하여금 학습자의 실질적인 학업 성취 제고보다 응시율 관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유인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교육부가 2026년부터 성과지표에 ‘참여 학습자 이수율’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에도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검정고시 시험 일정과 성과 운영비 제도 운영 일정 간의 정합성을 높여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 수행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성과 운영비 지급 기준에도 응시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가 균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체험학습비 집행 기준의 검정고시 학습 연계성 명확화 필요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학력 미인정 학습자의 검정고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초·중등 학력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예산 항목을 인건비, 사업추진비, 경상운영비로 구분하고,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17].

사업추진비에는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가 포함되며, 입학식·졸업식·수료식 등 각종 행사와 체험학습 관련 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는 강사료·교재비 등 직접적인 학습비용 외에도 학습 동기 제고 등 간접적 교육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2025년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

항목	세목	지원 내용
사업 추진비	교재비	◦ 검정고시 프로그램 강의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 - 기출문제, 이론서 등 **검정고시 관련 시판 교재, 제본 교재 등 구입에 사용**
	행사비 및 체험 학습비	◦ 입학식, 졸업식, 수료식 등 행사 및 체험학습 관련 비용 ※ 유가증권, 상품권 등 지원 불가 - 검정고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체험학습 식비 및 다과비(**1인 15,000원 이내**×인원) ※ 주류 구입 불가 - 체험학습 입장료(입장료×인원) 등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 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자료: 교육부, 「2025년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

217)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 기준은 참고자료의 '2025년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참조.

❑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총 지원금 600만원 중 약 500만원(약 83%)을 수학여행비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해당 운영기관은 신청 단계부터 동일한 금액을 수학여행비로 편성하였고, 선정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5년 ○○ 운영기관 지원액 및 집행액 >

(단위: 원)

항목	세목	지원액	집행액
사업 추진비	교재비	*중졸 검정고시반 490,000 *고졸 검정고시반 413,000	*중졸 검정고시반 490,000 *고졸 검정고시반 413,000
	행사비 및 체험 학습비	***중졸 검정고시반 수학여행 2,907,000 *고졸 검정고시반 수학여행 1,970,000 => 소계: 4,877,000**	***수학여행 임차료 1,800,000 *수학여행 입장료 758,000 *수학여행 숙박비 1,152,000 *수학여행 식사비 360,000 *수학여행 현수막 27,000 *수학여행 체험비 780,000 => 소계: 4,877,000**
경상 운영비	기타운영비	*여비 188,800 *공동인증서 갱신비 4,400 *사무용품 46,800	*여비 188,800 *공동인증서 갱신비 4,400 *쓰레기봉투 20,250 *사무용품 26,550
계		6,020,000	6,020,000

자료: 교육부

이는 지침상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 항목에 근거한 집행이기는 하나, 수학여행은 검정고시 대비 학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집행은 체험학습비의 허용 범위 및 교육적 연계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교육부는 2026년부터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를 총 신청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수학여행 등 검정고시 학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집행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노력으로 평가됨.

< 2026년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

항목	세목	지원 내용
사업 추진비	교재비	◦ 검정고시 프로그램 강의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 - 기출문제, 이론서 등 **검정고시 관련 시판 교재, 제본 교재 등 구입에 사용**
	행사비 및 체험 학습비	◦ 입학식, 졸업식, 수료식 등 행사 및 체험학습 관련 비용 **※ 총 신청금액의 20% 이내에서 집행 가능**, 유가증권, 상품권 등 지원 불가 - 검정고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체험학습 식비 및 다과비(1인 15,000원 이내×인원) ※ 주류 구입 불가 - 체험학습 입장료(입장료×인원) 등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 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자료: 교육부, 「2026년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

그러나, 현행 지침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범위와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검정고시 대비 학습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관광성 활동과 교육과정 연계형 체험학습 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순한 비율 상한 규정만으로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 집행의 목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검정고시 학습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5년 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218)]

항목	세목	지원 내용
인건비	강사비	◦ 검정고시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강사비 - **1교시당 40,000원 이내** (예) 기관에서 교시당 강사비를 20,000원으로 책정, A강사가 1일 2교시씩 월8회 (주당 2회*4주), 2개월간 수업하는 경우 : 20,000원 × 2교시 × 8회 × 2개월 × 1명 = 640,000원 **※ 국고보조금으로는 1교시당 40,000원 이내이나, 기관 자부담으로 시간당 추가지급 가능**
	교통비	◦ 검정고시 프로그램의 **무급 강사자원봉사자** 교통비 - 1인 기준, **월 최대 150,000원**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전담 무급 행정 담당자** 교통비 - 1인 기준, **월 최대 150,000원**
사업 추진비	교재비	◦ 검정고시 프로그램 강의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 - 기출문제, 이론서 등 **검정고시 관련 시판 교재, 제본 교재 등 구입에 사용**
	행사비 및 체험 학습비	◦ 입학식, 졸업식, 수료식 등 행사 및 체험학습 관련 비용 ※ 유가증권, 상품권 등 지원 불가 - 검정고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각종 행사 / 체험학습 식비 및 다과비 (1인 15,000원 이내 × 인원) ※ 주류 구입 불가 - 체험학습 입장료(입장료 × 인원) 등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 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경상 운영비	임차료	◦ 강의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임차 비용 **※ 총 지원액의 20% 이내에서 집행 가능**
	홍보비	◦ 기관 및 검정고시 프로그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현수막, 홍보지 등)
	기타 운영비	◦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비용 ※ 차량유류비 지원 불가 - 강사비·교통비 이체 수수료 - 다음의 경우에 한한 물품 구입과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 **※ 총 지원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한한 물품 구입) **· 검정고시 프로그램 수업을 위해 학습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검정고시 프로그램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 학습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 (예) 학습자용 책상·의자, 칠판, 빔 프로젝터, 지하강의실 습기제거제, 강의실 공기청정기, 강의실 조명 등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 **· 토너, 복사용지(A4용지 외), 학용품 등**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직무연수 참석 출장비* 등 * p. 15 '출장비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

<table>
<tr><th>항목</th><th>세목</th><th>지원 내용</th></tr>
<tr><td>경상
운영비</td><td>기타
운영비</td><td>
〈출장비 집행 기준〉
<table>
<tr><td>시
내
여
비</td><td>
기관 소재지와 같은 시·군 안에서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table>
<tr><th>출장 시간</th><th>지급액</th><th>비고</th></tr>
<tr><td>4시간 미만</td><td>10,000원</td><td>–</td></tr>
<tr><td>4시간 이상</td><td>20,000원</td><td>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시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20,000원 지급</td></tr>
</table>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td></tr>
<tr><td>시
외
여
비</td><td>
기관 소재지와 같은 시·군 외 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table>
<tr><th>운임</th><th>일비(1일당)*</th><th>식비(1일당)</th><th>숙박비(1박당)</th></tr>
<tr><td>철도, 버스,
항공운임
실비</td><td>(정액)
25,000원</td><td>(정액)
25,000원</td><td>실비, 상한액 이내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td></tr>
</table>
* '일비'란 출장자에서 소요되는 교통비(택시비 등),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함.
</td></tr>
</table>
</td></tr>
</table>

※ 지자체직영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경상운영비 집행 불가

※ 냉·난방비, 수도요금 등 공과금 집행 불가

218) 교육부, 「2025년 검정고시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4.

6. 영유아정책국

<일반회계>

1) 영유아보육료 지원[219]

○ 교육부는 향후 내내역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내역사업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 및 성과 미흡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내내역사업인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상·하반기를 나누어 교부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행정나급 상용직원의 잦은 중도 퇴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래에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미지급금 지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료 사업운영관리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19)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3조 2,40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25.7.4.)을 통해 1,130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3조 3,531억 2,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됨.

< 202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0,039	3,353,124	-	3,353,124	3,353,124	-	-	100
○ 0~2세 보육료	2,892,683	2,987,07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92,683	2,987,079	-	-	-	-	-	100
○ 장애아 보육료	73,447	75,266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3,447	75,266	-	-	-	-	-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28,637	28,637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637	28,637	-	-	-	-	-	100
○ 연장보육료 지원	80,567	83,110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0,567	83,110	-	-	-	-	-	100
○ 미지급금 지원	85,011	85,011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5,011	85,011	-	-	-	-	-	100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79,612	93,939	-	-	-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9,612	93,939	-	-	-	-	-	100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82	82	-	-	-	-	-	100
-민간경상보조(320-01)	82	82	-	-	-	-	-	100

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내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내내역사업별 집행액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 관리 강화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220]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2세)에 대하여,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221].

< 202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부모보육료	567	500	414	616
기관보육료	567	500	414	616
계	1,134	1,000	828	1,232

주: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대해 0~2세, 장애아보육시 지원 ※ 1일 이상 출석시 전액 지원
자료: 교육부

---

220)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2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임.

❑ 2025년도 예산액은 3조 2,39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25.7.4.)을 통해 1,130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3조 3,530억 4,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실집행액은 3조 3,416억 1,900만원(99.7%)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법령[222]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중 한 가지 사유만 발생하여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

2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적시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및 정산을 진행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단위: 건, %)

구분	기한 내 제출(A)	지연 제출(B)	지연 제출률(B/A)
2021년도 결산	12	5 (전남, 충북, 광주, 서울, 세종)	29.4
2022년도 결산	14	3 (경북, 전북, 전남)	17.6
2023년도 결산	14	3 (전북, 경남, 인천)	17.6
2024년도 결산	14	3 (충남, 제주, 전남)	17.6
2025년도 결산	15	2 (세종, 제주)	11.7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부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정산 등에 활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및 국회 재정통제의 효과성과 직결됨.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의 2025년도 예산액은 79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단가 인상[223]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25.7.4.)을 통해 143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939억 3,9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은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 유인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에서 제안되어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224]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0~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223) 2025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단가(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구분	본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0세반 (0·1세혼합반)	624천원	660천원(36천원 증)
1세반 (1·2세혼합반)	342천원	359천원(17천원 증)
2세반 (2·3세혼합반)	232천원	244천원(12천원 증)

224)「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 (교육부 지침,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4)

로 지원하는 사업임.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기준 >

반구분	정원기준	지원반	지원인원	추가지원 단가
0세반 (0·1세혼합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현원 2명) 660천원
1세반 (1·2세혼합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현원 3명) 718천원 (현원 4명) 359천원
2세반 (2·3세혼합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현원 4명) 732천원 (현원 5명) 488천원 (현원 6명) 244천원

* 지원단가(기관보육료): 0세(0·1세혼합반) 660천원, 1세(1·2세혼합반) 359천원,
2세(2·3세혼합반) 244천원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영아반 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보육료 수입 부족분을 인센티브(보조금)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 및 유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보육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영아반 정원 미달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를 통해 기관 이용을 원하는 영아가 언제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영아반 입소 대기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영아반 개설 및 유지에 관한 지표로서 동 사업 도입 이후 영

아반이 미개설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 도입 이전에 감소하던 추세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5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0세반 및 0·1세 혼합반을 제외한 영아반 대부분의 미개설 비율이 증가한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에 따른 성과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 >

(기준: 각 연도 12월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당 영아반 수(개)	4.1	4.2	4.4	4.6	4.7	4.9

자료: 교육부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각 연령반이 미개설된 어린이집 비율 >

(기준: 각 연도 12월말, 단위: %)

구분	0세반 미개설	1세반 미개설	2세반 미개설	0세반, 0·1세 혼합반 미개설	1세반, 1·2세 혼합반 미개설	2세반, 2·3세 혼합반 미개설
2021년	44.6	31.2	27.7	21.2	10.2	27.1
2022년	38.9	30.2	28.3	18.4	9.8	27.7
2023년	34.4	27.0	29.7	17.0	8.7	28.9
2024년	30.3	23.3	24.2	15.0	8.3	23.3
2025년	27.6	25.6	25.9	12.7	9.0	25.1

자료: 교육부

❑ 보조금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이나 사업성

과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이 영아반 개설 및 유지 모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①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는 매년 증가(2023년 4.6개 → 2024년 4.7개 → 2025년 4.9개)하고 있고, ②개설이 어려운 0세반(0·1세 혼합반) 미개설 비율은 매년 감소[2023년 34.4%(17%) → 2024년 30.3%(15%)→ 2025년 27.6(12.7%)]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임.

특히, 영아반 정원충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225]하여 영아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아반 유지 및 개설 추세를 유지한 점 또한 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사업 도입(2024년) 이전에도 이미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는 증가 추세, 0세반(0·1세 혼합반) 미개설 비율는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점, ②해당 추세의 크기

225)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영아반 정원충족률

구분	민간	가정
2021년	96.6%	91.2%
2022년	96.6%(-)	91.2%(-)
2023년	**95.8%(△0.8%)**	**89.6%(△1.6%)**
2024년	**93.4%(△2.4%)**	**84.7%(△4.9%)**
2025년	**93.0%(△0.4%)**	**83.4%(△1.3%)**

자료: 교육부

가 사업 도입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추세가 동 사업으로 인한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업 도입 이후(2024년·2025년)에 영아반 정원충족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동일한 지원을 하였음에도 2025년의 경우 2024년과 달리 영아반 대부분의 미개설 비율이 증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보조금 사업의 수혜적 기능을 고려하여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반기 전액 교부 지양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사업은 영아반 인센티브 등 보육료 지원시스템, 예탁금 집행·정산, 제도 홍보 등 사업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실집행액은 5,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69.5%에 그침.

❑ 동 사업의 경우 2024년에도 행정나급 상용직원의 중도 퇴사 및 후임자 채용 지연이 발생하여 예산 불용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상반기에 모두 교부한 결과, 작년에 이어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났음.

< 연도별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사업 실집행 현황 >

(기준: 각 연도 12월말,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불용 사유
2024년	50	42	-	8	84	행정 직원 중도 퇴사로 인한 공석(1개월)
2025년	82	57	-	25	69.5	행정 직원 중도 퇴사로 인한 공석(3개월)

*자료: 교육부
**2024년도부터 사업 개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및 제17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집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또한,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회계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상반기 전액 교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226].

❑ 따라서, 교육부는 보조금 교부·점검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상·하반기를 나누어 교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향후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나급 상용직원의 잦은 중도 퇴사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석 발생 시 조속한 후임자 채용을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2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부처별Ⅲ), p. 307~309

2) 시간제보육 지원[227]

○ 교육부는 수요자의 제공기관 유형(독립반, 통합반)에 따른 선호를 고려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확충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통합반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거주지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조사업자(한국보육진흥원)가 예산 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은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으로,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지정된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228]에 근거를 두고 있음.

227) 문의: 02-6788-5187

228)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

< 시간제보육 운영 기준 >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자료: 교육부(2025년도 시간제보육사업안내)

❑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고,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관리기관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임.

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⑤ (생 략)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28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됨.

< 2025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시간제보육 지원	28,018	-	28,018	28,018	-	-	100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7,627	-	27,627	27,627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7,627	-	27,627	27,627	-	-	100
○ 사업운영·관리	391	-	391	391	-	-	100
-민간경상보조(320-01)	391	-	391	391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수요자 중심의 제공기관 별 확충 및 통합반 이용률 제고 필요

❑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2025년도 예산액은 27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239억 6,600만원(86.7%)임.

❑ 동 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독립반 모형으로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채용을 통해 운영했으나, 2022·2023년도 통합반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24년도부터는 통합반 모형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충[229]하였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반, 연도말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17	17	17	17	17	17	17	17
시군구	153	154	164	177	176	185	193	198
관리기관[1)]	18	18	18	18	18	18	18	18
제공기관[2)] (기관/반)	373 /443	402 /490	578 /681	740 /857	796 /946 (독 816, 통 130)	827 /1,000 (독 819, 통 181)	1,675/ 2,033 (독 836, 통 1,197)	1,877/ 2,177 (독 850, 통 1,327)

주1: ’16년까지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주2: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독립반만 운영, 2022년부터 독립반·통합반 구분
자료: 교육부

229) 23년 181반 → 24년 1,197반 → 25년 1,327반

❑ 2024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반 모형은 기존 독립반 모형과 달리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면서 시간제보육반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별도의 보육공간을 마련하거나 담임교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연도별 이용현황 >

(단위: 개소, 반, 건, 시간, 연도말 기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독립반	통합반	독립반	통합반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24	39	57	62	6	58	7
	이용시간	91	150	230	240	24	217	30
반당 (평균)	이용건수	20	33	48	53	5	50	6
	이용시간(A)	78	128	193	205	20	186	26
	이용아동수(B)	3	4	6	7	1	7	1
	이용시간/이용아동수(A/B)	30	29	32	29	20	27	26
1인당 (평균)	이용건수	8	7	8	7	6	7	6
	이용시간	31	28	31	28	25	26	27

자료: 교육부

❑ 다만,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4년도 본격 시행된 통합반의 경우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도 불구하고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또한, 최근 4년간 통합반(시범사업 포함)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비 지원기준인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비율이 각각 2022년 73.15%, 2023년 88.0%,

2024년 75.7%, 2025년 66.49%에 달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및 지원기준 >

(단위: 개소, %)

<table>
<tr><th>연도</th><th colspan="2">계
(기관/반)</th><th>40시간 미만</th><th>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th><th>80시간 이상</th></tr>
<tr><td>2021년</td><td colspan="2">740/857</td><td>255(34.46)</td><td>178(24.05)</td><td>307(41.49)</td></tr>
<tr><td rowspan="2">2022년</td><td rowspan="2">전체
796/946</td><td>통합반*1)
(108/136)</td><td>79(73.15)</td><td>20(18.52)</td><td>9(8.33)</td></tr>
<tr><td>독립반
(688/810)</td><td>73(10.61)</td><td>129(18.75)</td><td>486(70.64)</td></tr>
<tr><td rowspan="2">2023년</td><td rowspan="2">전체
827/1,000</td><td>통합반**
(125/181)</td><td>110(88.0)</td><td>12(9.6)</td><td>3(2.4)</td></tr>
<tr><td>독립반
(702/819)</td><td>10(1.42)</td><td>30(4.27)</td><td>662(94.30)</td></tr>
<tr><td rowspan="2">2024년</td><td rowspan="2">전체2)
1,675/2,033</td><td>통합반
(974/1,197)</td><td>738(75.7)</td><td>178(18.27)</td><td>58(5.95)</td></tr>
<tr><td>독립반
(717/836)</td><td>5(0.69)</td><td>26(3.62)</td><td>686(95.6)</td></tr>
<tr><td rowspan="2">2025년</td><td rowspan="2">전체2)
1,877/2,177</td><td>통합반
(1,164/1,327)</td><td>774(66.49)</td><td>335(28.78)</td><td>55(4.72)</td></tr>
<tr><td>독립반
(731/850)</td><td>13(1.77)</td><td>38(5.19)</td><td>680(93.02)</td></tr>
<tr><td rowspan="3">2025년 지원기준

※ 통합반은 인건비 미지원</td><td colspan="2">인건비(독립반)</td><td>1년간 미지원</td><td colspan="2">1년간 100% 지원</td></tr>
<tr><td colspan="2">운영비(독립반)</td><td>1년간 미지원</td><td>전월 실적
(8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td><td>1년간 100%
지원</td></tr>
<tr><td colspan="2">운영비(통합반)</td><td colspan="3">전월 이용실적이 있을 경우 지원</td></tr>
</table>

주1: 통합반은 '22~'23년 시범사업 이후 '24년부터 본사업
* 1차 시범사업('22.9.~'23.2.), ** 2차 시범사업('23.7.~'23.12.)
주2: '24년, '25년 제공기관 중 독립반·통합반 모두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 수에서 중복 제외
'24년, '25년 이용실적의 경우 시스템 상 이용 연도의 다음 해에 이용확정 처리된 건은 미반영
자료: 교육부

❑ 한편, ‘2025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230]’에 따르면, 통합반 담임교사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 지원(91.6%), 긴급 돌봄 제공(91.2%),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경감(90.6%)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으나, 통합반 이용 아동의 적응 어려움이 정규반 아동 보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83.5%로 독립반 60.4% 대비 23.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시간제보육 이용 부모의 경우 시간제보육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97.9%)고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 후 만족(평균 87.0점)한다는 의견(97.0%)이 많았으나, 시간제 유형으로는 독립반(77.5%) 대비 통합반(22.5%)의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인지 경로로는 지인소개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31]

❑ 이와 같은 이용자 선호 미고려, 홍보 부족으로 인한 통합반 이용실적 저조 문제와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및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32]에서 이미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 공급 확대

230) 2025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2025. 12.), 한국보육진흥원, pp. 16-20 참고

231) < 시간제보육 인지 주요 경로 > 자료: 2025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 p. 162. 편집 재구성

구분	지인소개	정부 및 지자체 홍보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매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년	36.1%	16.8%	15.9%	11.0%	12.0%
2023년	27.8%	12.7%	22.3%	7.4%	9.2%
2024년	35.7%	20.3%	16.9%	8.5%	7.3%
2025년	42.7%	19.3%	15.1%	8.4%	5.5%

232)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pp. 1929-1930) 참고
- (성과 미흡)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아동 비율이 10%(2023년 기준)에 머물고 있음
- (집행관리 미흡) 현장 방문, 정기모니터링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하나 해당 실적이 구체적으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통합반 위주 확대, 홍보 효과 미미 등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교육부는 수요자의 제공기관 유형(독립반, 통합반)에 따른 선호를 고려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확충하고, 시간제보육 독립반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통합반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반납 비율이 50% 내외에 머물고 있음

ㅇ 시간제 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 공급 확대 및 이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홍보물 배포, 부모 서포터즈 운영, SNS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동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통합반 모형을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 바 있고, 구체적으로 독립반과 통합반을 모두 합한 시·도별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시·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

(단위: 명, 개소, 개, 12월말 기준)

시·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6~36개월) (A)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육반 당 대상자 수 (A/B)	보육반 당 대상자 수	
		시·군·구		보육기관	보육반(B)			
		설치	미설치				2024년	2021년
계	**255,349**	193	36	1,877	2,177	**117.3**	**124.1**	**398.0**
서울	43,271	25	-	225	277	156.2	142.3	439.3
부산	15,230	16	-	183	202	75.4	85.1	204.5
대구	11,710	8	1	142	155	75.5	95.9	344.5
인천	17,632	8	2	89	101	174.6	137.1	530.3
광주	6,475	5	-	80	84	77.1	82.8	253.4
대전	7,526	5	-	92	101	74.5	83.1	**146.4**
울산	5,669	5	-	50	61	92.9	91.8	336.1
세종	2,963	1	-	13	20	148.2	117.1	335.8
경기	77,507	29	2	339	410	**189.0**	**209.7**	**1032.9**
강원	6,790	13	5	71	79	85.9	100.7	319.3
충북	8,242	11	-	62	75	109.9	103.3	254.2
충남	10,367	12	3	64	75	138.2	158.6	508.4
전북	6,654	10	4	64	71	93.7	108.9	366.1
전남	8,136	15	7	86	100	81.4	89.8	187.1
경북	10,406	16	6	126	153	68.0	75.9	324.6
경남	13,888	17	1	134	145	95.8	109.6	374.5
제주	2,883	2	-	57	68	**42.4**	**44.7**	167.2
2024년 합계	**252,238**	**193**	**36**	**1,675**	**2,033**			
2021년 합계	**341,125**	**177**	**52**	**740**	**857**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2025년도 12월말 기준 ‘시간제 보육반 당 대상자 수’는 평균 117.3명이고, 최대 189명(경기)부터 최소 42.4명(제주)까지 시·도별 기반시설의 편차가 있음.

- 통합반 모형 도입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지역별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보육반 개소 수는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 여건은 개선(평균 398.0명→117.3명, △70.5%)되었으나 시·도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 비교(2021년, 2025년) >

구분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보육반	보육반 당 대상자 수
2021년	341,125명	857개소	398.0명
2025년	255,349명 (△ 25.1%)	2,177개소 (154.0%)	117.3명 (△70.5%)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해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시·도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보육반 당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크게 변동(평균 124.1명→117.3명, △5.5%)이 없는 반면, 지역 별 평균은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그 수가 증가[233]하는 등 시·도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였거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거주지가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도별 시간제보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확충 우선순위, 시급한 지역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 등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충에 관한 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 및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충' 및 '시·도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부모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위치(접근성)'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및 원장(18.5%), 제공기관 유형(17.8%)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234]

233) 2024년 대비 '보육반 당 대상자 수' 증가 지역

구분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북
2024년	142.3명	137.1명	91.8명	117.1명	103.3명
2025년	**156.2명(10%)**	**174.6명(27%)**	**92.9명(1%)**	**148.2명(27%)**	**109.9명(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34) 2025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2025. 12.), 한국보육진흥원, p. 19 참고

(3)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운영 관리'은 시간제보육 사업 홍보,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액 3억 9,1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99.2% 수준임.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운영 현황과 인식, 관련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간제보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조사는 설문조사 운영대행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반수용비(210-01목)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만족도 조사 개요(2025년) >

□ **(목적)** 시간제보육 담당교사(독립반, 통합반), 이용부모, 예비 이용부모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운영 현황과 인식, 관련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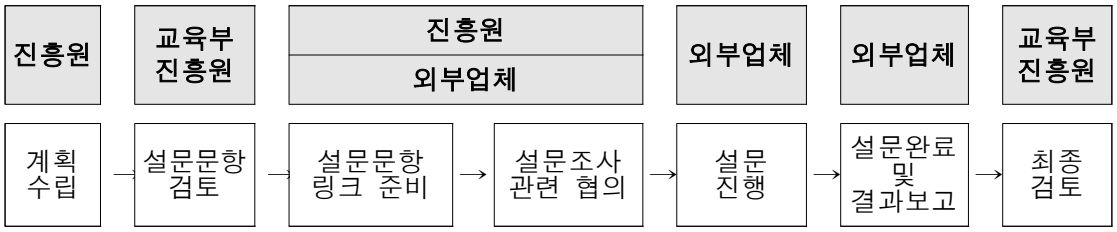
○ **(대상)**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1,000명(독립반 500명, 통합반 500명), 이용부모 1,000명, 예비 이용부모* 1,000명

*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은 6-36개월 미만 아동이나, 본 설문이 예비이용부모 대상 홍보·안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예비이용부모 설문조사 대상을 3개월-35개월 미만 자녀가구로 설정함

○ **(기간)** ’25. 10. 27. ~ 11. 17.
○ **(내용)** 시간제보육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구분	주요내용
담당교사(독립반,통합반)	– 교사 근무조건 및 만족도, 시간제보육 제도 관련 의견 등
이용부모	–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이용 만족도, 시간제보육 제도 관련 의견 등
예비 이용부모	– 시간제보육 제도 관련 의견 등

○ **(방법)** 설문조사 운영대행 용역
○ **(추진체계)**



자료: 교육부

< 최근 5년간 시간제보육 만족도 조사 용역 계약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계약 상대방	계약방식	집행액	집행 비목
2021년	(주)한국리서치	수의계약	16,700	일반수용비 (210-01목)
2022년	(주)한국리서치	수의계약	16,700	일반수용비 (210-01목)
2023년	(주)한국리서치	수의계약	16,700	일반수용비 (210-01목)
2024년	(주)한국리서치	수의계약	18,990	일반수용비 (210-01목)
2025년	(주)한국리서치	수의계약	20,000	일반수용비 (210-01목)

자료: 교육부

❑ 그런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235]

235)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면서,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연구개발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일반수용비(210-01목) 성격의 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공고료 및 광고료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만족도 조사의 경우 그 성격상 실태조사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260-01목)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보육진흥원은 수 년간 별도의 보조비목 조정 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음.

- 참고로, 용역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다수 있어 왔음[236].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236) 2022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외통,국방,행안) p. 465
2024회계연도 결산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p. 127

3) 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7]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고 사업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 중인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국공립 확충 지원'에 대한 사업 수행 및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1635-372)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으로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①보육진흥원 운영 지원, ②어린이집 평가·지원, ③보육교직원 자격관리, ④보육교직원 역량강화, 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⑥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⑦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⑧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37)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220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됨.

< 2025년도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2,097	-	22,097	21,965	-	-	99.40
-민간경상보조(320-01)	22,097	-	22,097	21,965	-	-	99.4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0,630	-	10,630	10,498	-	132*	98.76
·어린이집 평가 사업	8,158	-	8,158	8,158	-	-	100.00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	1,323	-	1,323	1,323	-	-	100.00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40	-	40	40	-	-	100.0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689	-	689	689	-	-	100.00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879	-	879	879	-	-	100.00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204	-	204	204	-	-	100.00
·국공립 확충 지원	174	-	174	174	-	-	100.00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838	-	838	546	-	-	65.16

자료: 교육부

* 예비비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보육진흥원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나) 검토의견: 사업 수행 및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고유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한국보육진흥원의 고유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238]에서 그 업무 및 위탁 범위를 한정하고 있

---

238)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고, 해당 범위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 사업 현황 >

고유사업	위탁사업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어린이집 평가 지원 사업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 보수교육기관 평가 사업	◦ 국공립 확충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39]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사업 별로 법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례가 일반적임.

아울러,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240]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또한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바, 보조사업 편성 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임.

<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1-1 보조사업의 필요성 (30점)	①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등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② 보조금 외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유사·중복되는 다른 재정사업은 없는지 고려
	③ 보조사업의 실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가 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지 고려
(중 략)	
1-4 보조사업 법적 근거 (감점 최대 △5점)	**①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등 보조금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한지를 고려**
(중 략)	
1-5 사회적 책임 실현 (가감점 최대 △3점 ~ +3점**)	① 사회적 책임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
	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책임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고려

자료: 교육부

240)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p.102.

❑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국공립 확충·지원’의 경우 다른 내역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수 년간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고[241], 이에 대해서 비용 지원의 형태로 보조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242]와 달리 센터의 설

241)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는 19년부터, ‘국공립 확충·지원’은 20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구분	내용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 (’19.~’20.)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지원 사업」 위탁 운영 (단년위탁) - (’21.~’23.)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지원 사업」 위탁 운영 (3년위탁) - (’24.~)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위탁 운영
국공립 확충·지원	- (’18.2월~11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 용역 수행 - (’19.3월~12월)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 용역 수행 - (’20.) 「2020년 국공립 확충·직무교육 전담사업」 위탁 운영 (단년위탁) - (’21.~’23.) 「국공립 확충·품질관리 전담 사업」 위탁 운영 (3년위탁) - (’24.~) 「국공립 확충 지원 사업」 위탁 운영

자료: 교육부

2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운영부터 사업 수행까지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고,

‘국공립 확충·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243]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을 뿐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및 법적 근거 >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법적 근거	비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영유아보육법」 제8조	-
어린이집 평가·지원	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 전·후 상시 질 관리, 부모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기준 및 정보제공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51조의2제1항제4호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등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인성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4호	-
보수교육기관 평가	보수교육기관 대상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1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정양육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제8호 및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공공형어린이집의 표준적 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 학습공동체 등 품질관리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2호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신고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관리 개선 지원**	**△ (현지 조사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2호)**	**위탁 근거 미비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국공립 확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관리**	**X**	**위탁 근거 미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43)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사업 및 민간 위탁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영유아보육법」에서 한국보육진흥원 사업 및 민간위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국공립 확충 지원'의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0호[244]에 따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크게 위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위탁 범위를 법률에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의 경우에는 위탁 범위를 법률에서 한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에 관한 입법례 >

구분	위탁 범위 포괄	위탁 범위 한정
조문 형식	**0000(위탁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00(수탁자)**에 **위탁**할 수 있다.	**0000(위탁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0000(수탁자)**에 **위탁**할 수 있다.

244)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관련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식진흥법」, 「동물보호법」 등	「영유아보육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제10호의 경우에는 특정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아닌 단순히 한국보육진흥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문에 불과함.

❑ 따라서, 교육부는 이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국공립 확충 지원’의 사업 수행 및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245]

○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전용 및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대체교사, 특히 특수 대체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내내역사업인 '급식위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제도 홍보 강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45)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1조 9,619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67억 5,100만원을 전용(증)하고 1,034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증)하여, 예산현액은 2조 721억 2,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5.10.24.)	전용 (25.10.27.)	예비비 (25.10.21.)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	1,961,911	-	6,751	103,460	2,072,122	2,072,122 [2,052,049]
①보육교직원 인건비	1,169,743	-	2,310	103,460	1,275,512	1,275,512 [1,268,627]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973,895	-	2,310	100,865	1,077,071	1,077,071 [1,075,405]
- 영아전담 어린이집	40,820	-	-	-	36,822	36,822 [34,027]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54,704	-	-	2,594	58,078	58,078 [57,014]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37,197	-	-	-	40,966	40,966 [44,827]
- 방과후 교사	180	-	-	-	201	201 [700]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62,947	-	-	-	62,375	62,375 [56,654]
②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50,923	6,347	4,442	-	261,712	261,712 [260,125]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909	6,347	4,442		232,894	232,894 [231,839]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554				5,450	5,450 [5,100]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3,460				23,368	23,368 [23,186]

구분	예산액 (본예산)	내역 변경 (25.10.24.)	전용 (25.10.27.)	예비비 (25.10.21.)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③보조, 대체교사 지원*	**510,615**	**△2,688**	**-**	**-**	**507,927**	**507,927 [498,283]**
- 보조교사(연장교사)	449,146	△4,048	-	-	445,098	445,098 [438,107]
- 대체교사	61,469	1,360	-	-	62,829	62,829 [60,176]
④어린이집 운영지원*	**30,629**	**△3,659**	**-**	**-**	**26,970**	**26,970 [25,015]**
- 교재교구비	9,778		-	-	9,897	9,897 [9,391]
- 차량운영비	8,868	△833	-	-	7,812	7,812 [7,290]
-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979		-	-	1,083	1,083 [1,006]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1,004	△2,826	-	-	8,178	8,178 [7,328]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46]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247].

2025년도 예산액은 1조 9,619억 1,100만원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으로 전용을 통해 67억 5,100만원과 예비비 배정('25.10.21.)을 통해 1,034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조 721억 2,200만원이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 '보조, 대체교사 지원' 예산 중 26억 8,8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

246)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 략)

2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임.

36억 5,900만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내역변경하고 (’25.10.24.), ②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전용(’25.10.27.)과 예비비(’25.10.21.[248]) 편성을 통해 충당함.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이·전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5.10.2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조·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30-01	6,34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30-0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증가 등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
전용 (’25.10.27)	가정양육수당 지원 (1641-300)	330-01	6,75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330-0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증가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 자료: 교육부

248)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2025년도 예비비 배정 일정(자료: 교육부) >

- (3~9월) 분기별 부족액 추계, 부내 이·전용 가능 예산 파악 및 기재부 실무 협의
- (9.29.)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비비 요구안 제출(교육부→기재부)
- (10.21.) 제4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비비 편성(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통령 재가
- (10.23.)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일반예비비 배정 통보(기재부→교육부)
- (10.24.) 변경내시 수정 통보(e나라도움)
- (10.28.)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교육부→시·도)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249]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이고, 예비비 또한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250]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임.

이에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해야 할 보충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4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250)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251]의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로 지급대상, 지급단가 및 국고보조율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당시 예상 대비 보육시설 이용 영아 수 증가 등에 따라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고, 특히 영아반은 반별 정원이 적으며(영아반 3~7명 / 유아반 15~20명), 지원 비율이 높아(영아반 80% / 유아반 30%) 영아 증가 시 인건비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①보육시설 이용 영아 수 및 보육교사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점, ②기존 증가 추세에서 전년 대비 2025년의 증가율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25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있음 (교육부 지침,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4)

<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이용 영아 수, 보육교사 수 현황 >

(단위: 천명, %)

구분	보육시설 이용 영아 수* (전년 대비 변화율)	인건비 지원 대상 보육교사 수** (전년 대비 변화율)	비고
2023	198(7.4)	41(11.1)	
2024	211(6.3)	44(8.0)	
2025	223(5.9)	47(7.2)	

자료: 교육부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에 재원하는 0~2세 아동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0~2세반(혼합반 포함) 담임교사

❑ 또한,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이미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지난 4년 간(2022년~2025년) 연례적으로 전용(2022년~2025년) 및 예비비 편성(2023년~2025년)을 해온 바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율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전용 및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대체교사 확충 및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대체교사 지원'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도에 본 예산으로 6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601억 7,600만원(97.9%)임.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7조제4항·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 2[252]에 따르면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대체인력 지원 및 관리

---

252)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② ~ ⑥ (생 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생 략)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로, 정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2.12.)'에 따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으로,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통해 휴가권의 실질적 사용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받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253] 등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있음.

< 대체교사 운영 현황 >

구분	내용
목적(업무)	보육교사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고용 주체	육아종, 지자체, 어린이집
고용 현황('25년)	육아종 2,544명, 어린이집 3,021명
급여('25년)	월 2,473천원 * 어린이집 채용: 일 96,500원, 8시간 근무기준
근로조건	일 8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4시간 근무 가능 * 상호 협의로 일급, 주급 가능
지원대상	담임교사(8h 근무), 교사겸직원장(年 최대 15일),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미지원
지원사유	①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기간 제한 없음) 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1~10일) ② 보수교육(5~10일) ③ 경조사(1~5일) ④ 연가(1~15일), 질병·사고(1~10일)

253)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율은 53.1%에 불과**함.
* 시·군·구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를 포함한 228개 기준

구분	내용
지원방식	<사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월 신청(1개월 단위) <수시> 긴급사유, 유선·FAX

자료: 교육부

❑ 또한, 이와 같이 대체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254]에 근거한 동 사업에 따라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대체교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교사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의 경우 66.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2023	309,250	211,984	68.5
2024	342,671	231,338	67.5
2025	373,365	247,761	66.4

* 자료: 교육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기준

❑ 또한, 시·도별로 지원율을 비교해 살펴보면, 2025년 기준 60%(대전)부터 85.1%(광주)까지 시·도별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음.

254)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시·도별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2025년)>

(단위: 건, %)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실집행률
전체	373,365	247,761	**66.4**	95.8
서울	79,093	48,466	61.3	91.8
부산	20,542	15,835	77.1	99.8
대구	19,694	14,194	72.1	98.5
인천	24,401	15,497	63.5	97.0
광주	6,592	5,612	**85.1**	97.5
대전	18,124	10,875	**60.0**	90.5
울산	12,772	7,974	62.4	96.0
세종	5,714	3,541	62.0	98.9
경기	95,473	62,605	65.6	96.7
강원	5,706	4,213	73.8	**87.5**
충북	13,824	9,602	69.5	95.7
충남	11,622	8,223	70.8	95.7
전북	14,753	10,011	67.9	95.5
전남	11,693	8,802	75.3	92.1
경북	10,874	7,113	65.4	94.2
경남	18,518	12,091	65.3	95.7
제주	3,970	3,107	78.3	99.2

자료: 교육부

❑ 동료 교사에 대한 업무 전가의 심리적 부담과 어린이집 내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대체교사 지원 여부는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직결되는바,

이와 같은 대체교사 지원율 저조 문제는 대체교사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 사용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지원 가능성이 달라져 보육교사의 근무지에 따른 차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음.

- 참고로, 교육부의 2024년도 보육 실태 조사[255]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7개 항목 중 '휴가 및 연차' 항목이 3번째로 낮은 만족도(4점 척도 기준 2.8점, 불만족 32.4%)를 기록한 바 있음.

<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평균	평균	
						2021년	2018년
근무환경(전반)	2.1%	17.5%	58.6%	21.8%	3.0	3.1	3.2
물리적 환경(공간)	3.3%	21.8%	54.3%	20.6%	2.9	3.0	3.1
인적 환경(동료, 원장, 학부모 관계)	1.1%	11.5%	60.7%	26.7%	**3.1**	3.1	3.2
급여 수준	16.1%	38.7%	35.4%	9.8%	**2.4**	2.6	2.9
근로 및 휴게 시간	13.6%	34.9%	38.8%	12.7%	2.5	**2.7***	**3.1**
휴일 및 연차	**8.3%**	**24.1%**	**44.3%**	**23.3%**	**2.8**		
일에 대한 보람	1.8%	10.9%	61.3%	26.0%	**3.1**	3.1	3.2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대체교사 지원율 저조 문제는 전반적으로 대체교사 수가 그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체교사 수 부족 문제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고려하면, 대체교사 수요 대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대체교사 채용 시 구인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근무지 선호 차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구인난이 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시·도별 대체교사 지원율 격차로 이어

255) 현행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고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체교사에 대한 어린이집의 수요(신청 인원)는 매년 대폭 증가(연평균 9.9%)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규모(3,923명)가 동결되어('23년～) 대체교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율의 편차도 대체교사 인력풀 확충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따라서, 교육부는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휴가권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①대체교사 지원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② 지역별 인력풀 구축을 지원하는 등 대체교사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특수 대체교사 확충 및 교사 간 대체교사 지원 격차 해소 필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256]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서는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내에 1,224명의 특수교사가 근무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특수교사 현황 >

(단위: 명)

구분	특수교사* 수	어린이집 종사 특수교사 수 (A)	장애영유아수 (B)	특수교사 1인당 장애영유아수 (B/A)
2023	2,289	1,387	13,606	9.8
2024	2,430	1,303	13,657	10.5
2025	2,508	1,224	13,175	10.8

자료: 교육부

*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유아특수교사

❑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수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교사 지원율이 지속적

256)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파견되는 비율은 2025년 기준 46.7%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일반 보육교사의 대체교사 지원율(66.7%)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특수 대체교사 신청 및 자격 소지자 지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일반 보육교사 지원율
2023	3,765	1,366	36.3	68.9
2024	4,242	1,633	38.5	67.9
2025	5,526	2,579	46.7	66.7

자료: 교육부

❑ 또한, 시·도별로 지원율을 비교해 살펴보면, 2025년 기준 3.8%(경북)부터 100%(강원, 전남)까지 시·도별 격차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2025년) >

(단위 : 명, 건)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일반 보육교사 지원율
전체	5,526	2,579	46.7	66.7
서울	933	240	25.7	61.7
부산	22	17	77.3	77.1
대구	95	67	70.5	72.1
인천	381	93	24.4	64.1
광주	-	-	-	85.1
대전	191	84	44	60.2
울산	553	131	23.7	64.2
세종	50	2	4	62.5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일반 보육교사 지원율
경기	1,906	957	50.2	65.9
강원	22	22	**100**	73.7
충북	128	20	15.6	70.0
충남	-	-	-	70.8
전북	57	36	63.2	67.9
전남	829	829	**100**	73.4
경북	79	3	**3.8**	65.9
경남	207	31	15	65.9
제주	73	47	64.4	78.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은 문제는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 대체교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임.

- 참고로, 최근 3년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미충족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사 배치 기준 미충족 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44.4%,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2.2% 수준으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특수교사 배치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현황 >

(단위: 개소수)

구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어린이집 수	미충족 수	미충족률	어린이집 수	미충족 수	미충족률
2023	173	90	52.0%	1,464	365	26.3%
2024	178	89	50.0%	1,718	424	24.7%
2025	178	79	44.4%	1,830	407	22.2%

자료: 교육부

❑ 특수교사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자격 요건)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보육교사에 비해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부담이 큰바, 이를 고려하면 대체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교육부는 특수 대체교사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특수 대체교사 확충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특수 대체교사를 확충하고 교사 및 시·도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인 특수교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

(4)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집행률 제고 및 지역별 신청 편차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운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제도 개요(2025년) >

가. 대상 시설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일부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나. 지원 규모
○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다. 지원 방법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마.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단계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업 대상자격을 추가(집단급식소, 50인 이상 등)할 예정이니, 기능개선 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액을 전액 환수

자료: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 동 사업은 2025년도에 본 예산으로 1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억 2,6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감)하여, 예산현액은 81억 7,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73억 2,800만원(89.6%)임.

❑ 그런데,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의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시설,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등 객관적 요건에만 해당하면 대상시설로서 지원이 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2025년 기준 예산 집행률(89.6%)은 저조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시·도별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78%(충남)부터 97%(인천)까지 시·도별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시 · 도별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전체	**8,178**	**7,328**	**850**	**90**
서울	377	304	73	**81**
부산	468	423	45	90
대구	291	249	42	86
인천	661	638	23	**97**
광주	254	232	22	91
대전	166	140	26	84
울산	315	285	30	90
세종	50	44	6	88
경기	3,035	2,746	288	90
강원	218	196	22	90
충북	325	291	34	90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충남	402	312	91	**78**
전북	259	239	20	92
전남	224	186	38	83
경북	394	366	28	93
경남	603	548	55	91
제주	136	129	7	95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집행률 부진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①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예산 편성된 시설(5,789개소)보다 지원 대상 시설 수(약 4천개소)가 적다는 점, ②사업 신설 초기 제도 미인지로 인해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지원 대상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 모두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257]

○ 교육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편성된 사업의 집행 부진 시 이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양육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지급 및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641-300)은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24~86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57)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77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67억 5,100만원을 전용(감)하여, 예산현액은 705억 4,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2025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7,292	△6,751	70,541	70,541	-	-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7,292	△6,751	70,541	70,541	-	-	10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전용 지양 필요

❑ 동 사업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사업의 예산 부족액 지원을 위해 연례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가정양육수당 사업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A)	이·전용 금액 (B)	이·전용률 (B/A)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2	482,907	1,689	0.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330-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2023	175,854	10,668	6.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330-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2024	108,075	21,294	2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330-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321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3135-354)	354-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2025	77,292	6,751	8.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330-0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예산 부족

* 자료: 교육부

❑ 예산의 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258]에 따라 예산의 목적

25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임.

이에 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할 보충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가정양육수당’ 및 전용하여 사용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경직성 경비로 지급대상, 지급단가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을 과소 계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매년 전용한 것은 ①“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②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연도 중에 정부 재량으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육수당의 경우 매월 실제 출생아 수와 (전년도)월령별 수급률을 적용하여 마련하는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예산으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로서 시설이용(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등에 대한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바[259], 이를 종합적으로 예상 반영하여 추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이에 일정 수준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운영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잔액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향후에도 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동 사업의 전체 예산 대비 이·전용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20%)이 과거 2022년(0.3%) 및 2023년(6.1%)보다 지나치게 높아 2025년(8.7%)에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과거 3년 간 수치를 비교하면 여전히 그 비율이 높은 수준인바,

잔액 규모가 단순히 예년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59) 시설 입소율은 부모의 복직, 이사, 시설 대기 해소, 집안사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교육부 설명임.

❑ 또한,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시설(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변동이 지난 3년 간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및 시설 이용 현황 >

구분	양육수당 지급건수		시설 이용 영유아수	
	전체	월 평균	유치원	어린이집
2023	1,834,420	152,868	521,794	393,396
2024	1,168,958 (△36.3%)	97,413 (△36.3%)	498,604 (△4.4%)	344,099 (△12.5%)
2025	1,023,621 (△12.4%)	85,301 (△12.4%)	481,563 (△3.4%)	302,761 (△12.0%)

자료: 교육부
* 3~5세 (유치원:교육통계 4.1자, 어린이집:보육통계 4월 기준)
**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

❑ 따라서, 교육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편성된 사업의 집행 저조 시 이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가정양육수당 부정수급 및 오지급액 환수 철저

❑ 가정양육수당의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0조의2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260]에 근거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양육수당 환수 개요 >

□ **환수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환수 대상(오지급 및 부정수급)**

① 수급권 상실(국적상실,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수급 등)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260)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 ⑦ (생 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생 략)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 절차: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금액 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자료: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환수율이 감소하여 2025년에는 전체 환수율이 24%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임.

또한, 환수 대상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으로 특히 '장기해외체류' 및 '보장 및 자격변동'의 경우에는 각각 환수율이 16%, 19% 수준으로 환수 실적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가정양육수당 부정수급·오지급 현황 >

(단위: 건, 천원, %, 12월말 기준)

구분	환수사유	환수결정		환수실적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환수율 (B/A)
2023	**합계**	**143**	**81,321**	**108**	**51,321**	**63**
	장기해외체류	72	67,450	51	40,150	60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	-	-	-
	거짓·부정 수급	1	1,000	1	1,000	100
	보장 및 자격변동	48	6,294	38	5,144	82
	기타	22	6,577	18	5,027	76
2024	**합계**	**126**	**107,350**	**75**	**36,600**	**34**
	장기해외체류	94	97,500	50	30,150	31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	-	-	-
	거짓·부정 수급	-	-	-	-	-
	보장 및 자격변동	25	7,750	19	5,250	68
	기타	7	2,100	6	1,200	57

구분	환수사유	환수결정		환수실적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환수율 (B/A)
2025	**합계**	**70**	**46,850**	**33**	**11,300**	**24**
	장기해외체류	55	37,250	21	5,800	**16**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	-	-	-
	거짓·부정 수급	1	1,300	1	1,300	100
	보장 및 자격변동	9	4,700	7	900	**19**
	기타	5	3,600	4	3,300	92

자료: 교육부

❑ 이는 오지급 및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관리에 대한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전적으로 '장기해외체류' 및 '보장 및 자격변동' 등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 제도인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법」[261]에서 오지

261)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 및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를 위한 사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 아동수당의 오지급 및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 수단 >

구분	법적 근거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아동수당법」 제7조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제26조제2항

❑ 이와 같은 오지급 및 부정수급액의 환수 실적 저조 문제는 국고 손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지급 및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하는 데 그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외 소재자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소재확인, 반환명령 송달 및 체납처분 등 환수집행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단순히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해외 소재자에 대한 환수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체납처분이라는 법적 강제수단이 부여된 상황 속에서 해외 소재자를 포함한 전체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따라서, 교육부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지급 및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①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신고 의무 부과, ②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등 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 및 자료 열람 근거 마련 등 법적·제도적 수단 마련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또한, 장기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부적정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확인·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요건 변동을 사전에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1) 어린이집 확충(1634-300)[262]

○ 교육부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확충목표의 수립,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산정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확충(1634-300)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및 기자재 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운영 및 관리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62) 문의: 02-6788-5187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액은 26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18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100만원을 불용함.

< 2025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비목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어린이집 확충 사업	26,684	-	26,684	18,583	-	8,101	69.6
○ 어린이집 확충	26,664	-	26,664	18,583	-	8,081	69.7
-자치단체자본보조 (320-01)	26,664	-	26,664	18,583	-	8,081	69.7
○ 운영 및 관리	20	-	20	-	-	20	100
-일반수용비(210-01)	20	-	20	-	-	20	100

나) 검토의견: 어린이집 확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

❑ 내역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263]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66억 8,400만원으로 이 중 185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어린이집 경영악화 및 폐원 가속화로 인한 보육 인프라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2025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50%[264]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

2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라 5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264) 공공보육이용률(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어린이집이용아동)

보면, 2025년 기준 46.8% 수준으로 전년 대비 실집행률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4년 간 모두 40% 안팎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참고로, 동 사업은 20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실집행 부진을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요구액을 각각 전년 대비 삭감한 바 있음[265]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집행률 저조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본예산	추경(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2025	26,684	26,684	18,583	12,493	69.6	**46.8**
2024	41,654	41,654	25,498	14,838	61.2	**35.6**
2023	49,170	32,427	32,178	11,517	99.2	**35.5**
2022	60,903	49,678	49,520	19,131	99.7	**38.5**

자료: 교육부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선정 개소 수 측면에서 살펴 보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p. 71)
1-③-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ㅇ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현황과 이용률(현원기준)을 고려, 지역균형 공급을 위해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지역* 우선 공급
* 공보육 이용률('19.12) : 전국 28.2%, 서울 46.6%(최고), 울산19.2%(최저), 경기 19.6%, 인천 20.3%, 경남 22.4%, 충남 23.1%, 경북 23.8%, 대전 24.8%
- (국공립 유치원)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및 학급 증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통학차량 단계적 확대
* 신·증설,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265) <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
(2022년도) 세부사업 기준 24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3년 예산(492억) 대비 5.9%를 삭감한 463억으로 편성
(2023년도) 세부사업 기준 '25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실집행률을 감안하여 '24년 예산(416억) 대비 10%를 삭감한 375억원으로 편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충사업 선정 개소 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에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418개소에 38.3% 미달하는 258개소에 그침.

<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출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목표	22.0	25.3	27.2	29.2	32.5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증감 추이 등을 고려	국공립어린이집 현원/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 100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실적	22.7	25.3	28.3	31.5	33.8			
	달성도	103.2	100.0	104.0	107.9	10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단위: 개소)	목표	550	550	500	500	418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선정 개소 수	복지부 자료
	실적	515	493	414	368	258			
	달성도	93.6	89.6	82.8	73.6	61.7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동 사업의 실집행 저조에 대해 교육부는 ①확충 물량 과다 추계 및 ②확충방식 중 사업단가가 높은 신축 및 장기임차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 그러나, 해당 원인은 이미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언급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어린이집 확충 수요 파악의 정확

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자체의 동 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수요 감소에 따른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확충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266], 보육통계를 작성한 1999년도 이후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수가 모두 증가하다가 2013년도를 정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 보육아동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

또한, 향후 유보통합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 현황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참고로, 「2025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순위에서 국공립어

266) 202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참고

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는 29.2% 수준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음[267].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먼저, 확충방식 별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적인 신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신축사업 대상 지원 강화가 필요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에 있어 공동주택리모델링과 장기임차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유지되는 반면, 신축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23년(19개소) → '24년(6개소) → '25년(5개소)]이고, 실집행률 또한 타 방식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주로 낮은 공사단가와 절차 등에 장기화가 소요되는 신축사업의 특징에 기인된다고 보임.

---

267) 「2025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용역, p. 101·102

□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은 1+2+3순위 기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시 소득보장이 4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 비용 인상 48.4%, 야간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47.7% 순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공공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1순위 응답 비중이 16.9%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확충방식 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및 실적 >

(단위: 개소)

구분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장기임차		합계
	계획	지원	(매입)	계획	지원	계획	지원	(지원개소)
2020년	100	78 (78.0%)	(21)	350	466 (133.1%)	100	37 (37.7%)	581
2021년	80	62 (77.5%)	(7)	420	427 (101.7%)	100	26 (26.0%)	515
2022년	60	34 (56.7%)	(9)	390	408 (104.6%)	100	53 (53.0%)	495
2023년	45	19 (42.2%)	(4)	435	358 (82.3%)	60	37 (61.7%)	414
2024년	45	6 (13.3%)	(3)	435	324 (74.5%)	60	38 (63.3%)	368
2025년	**-**	**5**	**(0)**	**418**	**232 (55.5%)**	**-**	**21**	**258**

자료: 교육부

따라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 지역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에는 불가피하게 신축사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축사업 면적당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268].

268) 교육부에 따르면,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기준, 노유자 시설 평균 공사 단가는 '21년 2,546천원에서 '23년 4,20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단가는 '21년도 이후 현재까지 1,676천원으로 동일함.**

< 어린이집 확충사업 확충방식별 단가(국비 · 지방비 포함) 기준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공립신축 (매입방식포함)	면적당 : 1,676천원/m2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장애아 전문 신축	면적당 : 1,676천원/m2	면적당 : 1,800천원/m2	전년동	전년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소당 : 100백만원/개소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 : 200백만원/개소 가정 : 150백만원/개소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기자재비	개소당 : 10백만원/개소	전년동	전년동	전년동

자료: 교육부

다음으로,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도 있음.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사업별 용도와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 비율이 보조율에 따라 정해지는 정률보조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있음.[269]

26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따르면[270], 차등보조율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사용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방식(「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②해당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사용하는 방식(기초연금), ③재정자립도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차등적인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식(고용 및 주택부문의 일부 사업)이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국고보조율 50%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사업에 대한 수요에 차등이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업 수요가 시급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0)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2월, p.15.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영유아정책국 소관의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 등 다른 사업의 경우 서울·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에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271].

27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마. (생 략)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7. 소속기관

가.국립국제교육원

<일반회계>

1) 학생교육 교류 지원[272]

○ 교육부는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금 면제 등 예외적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함으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에서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연수 대상에게 필요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학생교육 교류 지원(4531-301) 사업은 학생의 단기, 학부 1년, 석·박사 학위 과정 등의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여 교류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한일교육교류협력, 한국유학홍보, 청소년교류지원 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72) 문의: 02-6788-5189

❑ 이 중 ‘한일교육교류협력’ 내역사업은 한·일 학생 교육교류를 통해 청년세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학생을 초청하여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일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 한일청년인재양성사업 등 2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교류지원’ 내역사업은 한·일, 한·중 청소년 간 교육교류를 통해 양국의 교육환경 및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고교생 교류,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 한·중 고교생 교류 등 3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44억 1,800만원으로, 124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6.1%임.

< 2025년도 학생교육 교류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학생교육 교류 지원	14,054	364	14,418	12,407	104	1,906	86.1
○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6,545	-	6,545	6,449	-	96	98.5
○ 한일교육교류협력	5,235	-	5,235	3,564	-	1,671	68.1
○ 한국유학홍보	1,643	228	1,871	1,673	104	94	89.4
○ 청소년교류지원	631	135	766	720	-	46	94.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선발과정 보완 등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학생교육 교류 지원 세부사업에서는 19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87.7%인 16억 7,100만원이 한일교육교류협력 내역사업에서 발생함.

불용액은 주로 한일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사업 중 ①~④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등 4개 과정 지원과 한일청년인재양성사업 중 ⑥ 전문학사, 학사 과정 지원에서 발생하였음.

< 2025년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 결산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 한일교육교류협력		5,235	3,564	1,671	68.1
・한일공동 고등교육 유학생교류 사업	①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569	334	235	58.7
	② 석・박사 학위	1,084	751	333	69.3
	③ 학부 1년	726	376	350	51.8
	④ 학부 단기	900	659	241	73.2
	⑤ 사업 운영	242	242	-	100.0
	소계	3,521	2,362	1,159	67.1
・한일청년인재 양성사업	⑥ 전문학사, 학사	1,064	622	442	58.5
	⑦ 직업계고 학생교류	250	191	59	76.4
	⑧ 한일교환학생 프로그램	400	389	11	97.3
	소계	1,714	1,202	512	70.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지원은 첨단 과학기술 선도 인재 양성 및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학과 학부과정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를 파견하고, 수업료, 생활비, 항공료 등 경비 일체를 양국이 50%씩 부담하는 것임. 동 지원대상은 2018년까지만 신규로 선발되었고 2019년부터는 기존 파견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②~④, ⑥ 그 외 석·박사 학위 등의 과정 지원은 한일 고등교육 학생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를 선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양국의 학부 및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수학할 학생을 초청국에서 선발하고 항공료,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임.

<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 지원 과정 개요 >

<table>
<tr><th>구분</th><th>석·박사 학위</th><th>학부 1년</th><th>학부 단기</th><th>학사</th><th>전문학사</th></tr>
<tr><td>기간</td><td>석사: 한국어연수 1년+2년
박사: 한국어연수 1년+3년</td><td>1년</td><td>2주~5주</td><td>한국어 연수 1년
+ 4~6년</td><td>한국어 연수 1년
+ 2~3년</td></tr>
<tr><td rowspan="3">자격</td><td>석사: 대학졸업(예정)자
박사: 석사졸업(예정)자</td><td>일본 정규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td><td>일본 정규 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포함)</td><td colspan="2">고등학교 졸업(예정)자</td></tr>
<tr><td>만 40세 미만</td><td colspan="2">만 18~30세 미만</td><td colspan="2">만 25세 미만</td></tr>
<tr><td colspan="5">일본 국적자</td></tr>
<tr><td>장학금</td><td>왕복항공료, 등록금,
한국어연수 수업료,
학업장려금</td><td>왕복항공료, 등록금,
학업장려금</td><td>교육경비 일체
*1인당 500만원 이내</td><td colspan="2">왕복항공료, 등록금,
한국어연수 수업료,
학업장려금</td></tr>
</table>

※ 장학금 지원 내용

구분	입·출국 항공료	등록금	한국어연수 수업료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	공통	석·박사·(전문)학사 학위과정, 학부 1년	석·박사·(전문)학사 학위과정	석·박사		(전문)학사		학부1년
				학위 과정	한국어 연수	학위 과정	한국어 연수	
지급액	실비 (항공권)	500만원 이내 (학기)	520만원 이내 (연)	월140만원	월120만원	월110만원		월110만원
지급 시기	입·귀국 시 각 1회	학기 초 (연 2회)	학기 초 (연 2회)	매월				

주: 입학금은 대학부담(면제), 수업료 및 등록금의 초과분은 대학이 지원함
자료: 교육부

❑ 이상의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로는, 입학 포기로 인한 장학금 전액, 대학 간 협정 등에 의한 등록금 전액, 전공에 필요한 등록금이 예산에 편성된 기준 등록금(500만원) 보다 적어서 발생한 잔액, 조기귀국 또는 일시출국으로 인한 학업장려금 잔액 등임.

< 2025년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사유
•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235	235	• 2025년 3월 졸업생 및 휴학생(33명)의 장학금 잔액
• 석박사 학위과정	333	30	• 입학 전 포기자(1명) 장학금 전액
		120	• 등록금 잔액 * 지원인원의 95%를 차지하는 인문학부의 1인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320만원
		183	• 재학생 학업 장려금, 항공권(실비) 잔액 - 학업종료 후 조기귀국,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일시출국 시 학업장려금(생활비) 반납 - 환율 하락, 근거리 등으로 잔액 발생
• 학부 1년	350	150	• 등록금 잔액 - 장학생 9명 등록금 전액(대학 간 협정) - 1학기 평균 320만원 소요
		100	• 미선발자 4명 장학금 전액
		100	• 학업 장려금, 항공권(실비) 잔액 - 학업종료 후 조기귀국,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일시출국 시 학업장려금(생활비) 반납
• 학부 단기	241	241	• 학교별 실소요액 정산 및 반납

구분	불용액		사유
・전문학사, 학사 학위과정	442	110	・입학 전 포기자 및 중도포기자(4명) 장학금 전액
		120	・등록금 잔액
		212	・재학생 학업 장려금, 항공권(실비) 잔액 - 학업종료 후 조기귀국,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일시출국 시 학업장려금(생활비) 반납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예산 편성 기준 중, 등록금은 500만원으로 지원대상 1명이 지원받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만으로 연간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생이 지원대상으로 선발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이 계획된 과정을 이수하고 조기귀국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출국하는 경우 등에 따른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입학 전에 지원 과정을 포기하거나 대학에서 등록금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불용액은 선발과정을 보완하거나 대학의 제도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간 협정 등으로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필요

❑ 2025년 학생교육 교류 지원 세부사업에는 국가 간 교육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한일 또는 한중 간 학생 등을 교류하는 사업(이하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이라 함)으로,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한・일 고교생 교류, 한・일 상대국 어선택 고교생 교류, 한・중 고교생 교류’ 등 4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4503-250) 세부사업에도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사업이 편성되었음.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은 방일 또는 방한의 경우 대상자 선발, 사전 교육, 현지 연수, 결과 보고 등의 과정으로 수행되고, 방한의 경우 연수 위탁기관 선정, 상대국 학생 방한 연수, 결과 보고 등의 과정으로 수행됨.

<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개요 >

구분	주요 흐름
방일 또는 방중	・선발 → 사전교육 → 방일 또는 방중 연수 → 결과 보고
방한	・방한 연수 위탁기관 선정 → 방한 연수 → 결과 보고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의 사업은 모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단가와 대상에 차이(학생교육교류지원 세부사업은 고등학생 대상,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세부사업은 대학생 및 교원 대상)가 있음.

<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현황 >

구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한·일 고교생 교류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	한·중 고교생 교류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세부사업	학생교육 교류 지원(4531-301)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4503-250)
내역사업	한일교육교류협력	청소년교류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	250백만원 : 50명×5백만원	262백만원 : 220명×1.19백만원	117백만원 : 120명×0.98백만원	252백만원 : 200명×1.26백만원	400백만원
사업대상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상대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전문)대학교 재학생, 교직 경력 5년 이상 교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사업에서 이루어진 연수의 기간과 내용은 유사한데, 해당 연수는 4박 5일 또는 6박 7일 등 총 1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양국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발표 수업을 하는 등의 학교 방문 교류 함께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특강 등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됨.

<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중 방한 연수 세부 내용 >

구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한·일 고교생 교류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	한·중 고교생 교류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세부 사업	학생교육 교류 지원(4531-301)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4503-250)	
내역 사업	한일교육교류협력	청소년교류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대상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상대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등학교2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전문)대학교 재학생	교직 경력 5년 이상 교원
연수 기간	6박 7일 (11.19.~11.25.)	6박 7일 (11.2.~11.8.)	4박 5일 (9.8.~9.12.)	6박 7일 (9.27.~10.3.)	6박 7일 (3.9.~3.15.)	6박 7일 (8.20.~8.26.)
1일차	• 입국 •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 입국	• 입국 • 오리엔테이션	• 입국	• 입국 • 오리엔테이션	• 입국
2일차	• 학교 방문 교류 • 수원행궁 • OO대형마트	•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 경복궁, 광화문 • OO대형마트 • 한식2(C식당) • 한식3(D식당)	• 환영식 • 학교 방문 교류 • O대형마트	• 아쿠아플래닛 • 여수해양 기상과학관 • 고소동천사 벽화마을 • 하멜등대	• 환영식 • 학교 방문 교류 • 명동 문화 거리	• 환영식 • 학교 방문 교류
3일차	• 학교 방문 교류	• 국립중앙박물관 • K-POP 댄스 및 숏폼 촬영 • 서울 N 타워 • 양식(A식당) • 중식(E식당)	• K-POP 댄스 및 숏폼 촬영 • 학교 방문 교류 • 명동 문화 거리 • 양식(A식당)	• 환영식 • 학교 방문 교류 • OO대형마트	• 전쟁기념관 • 통일전망대 • K-POP 댄스 배우기 • OO대형마트	• 학교 방문 교류
4일차	• 서울농업박물관 • K-POP 댄스 배우기 • 서울 N 타워 • 양식(A식당)	• 학교 방문 교류	• 한국민속촌 • 한글 캘리그래피 • 성과보고회	• 학교 방문 교류 • 예울마루 공연장	• OO모터스튜디오 • 서울시청 • 경복궁	• 홈스테이 • 명동 문화 거리
5일차	• DMZ • OO모터스튜디오 • 명동 문화 거리 • 한식1(B식당)	• DMZ • OO모터스튜디오 • 명동 문화 거리 • 한식1(B식당)	• 출국	• 학교 방문 교류 • 명동 문화 거리	• 전주한옥마을 • 전통 한지만들기 및 공예 • 경기전	• DMZ • OO모터스튜디오 • 서울 N 타워 • 한식1(B식당) • 양식(A식당)
6일차	• 경복궁 • 한글 캘리그래피 • 성과보고회 • 한식2(C식당)	• 한국민속촌 • 한글 캘리그래피 • 성과보고회		• 경복궁 • 국립중앙박물관 • 중식(E식당)	• 학교 방문 교류 • 성과보고회	• 국립중앙박물관 • 한글 캘리그래피 • 성과보고회 • 한식3(D식당)
7일차	• 출국	• 출국		• 국립과천과학관 • 인스파이어 엔터테이먼트 • 출국	• 출국	• 출국

주: 식사는 식당이 중복된 일정만 표기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체험 등의 내용 중, 명동 문화 거리 체험은 모든 연수에 포함되어 있고, 경복궁, OO모터스튜디오, OO대형마트 등 5개소 체험은 4개 연수, DMZ, 국립중앙박물관 등 3개소 체험은 3개 연수, 한국민속촌 체험은 2개 연수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식사의 경우에도 1개 식당이 4개 연수, 3개 연수에 각각 포함되고, 3개 식당이 2개 연수에 포함되는 등 서로 다른 연수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음.

<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중 방한 연수에 중복 포함된 체험 또는 방문 현황 >

구분	6개 연수	4개 연수	3개 연수	2개 연수
체험	・명동 문화 거리	・경복궁 ・OO모터스튜디오 ・OO대형마트 ・K-POP 댄스 ・한글 캘리그래피	・DMZ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N 타워	・한국민속촌
식사	-	・양식(A식당)	・한식1(B식당)	・한식2(C식당) ・한식3(D식당) ・중식(E식당)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에서 방한 연수를 수행한 위탁기관 선정은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273](제한경쟁입찰)으로 계획되었고, 한・중 고교생 교류 등 2개 계약은 이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등 3개 계약은 1개

27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업체 단독응찰로 재공고 후 수의계약[274]으로 이루어졌으며, 입찰 결과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었음.

< 2025년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 중 방한 연수 위탁업체 계약 현황 >

구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한・일 고교생 교류	한・일 상대국어선택 고교생 교류	한・중 고교생 교류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세부사업	학생교육 교류 지원(4531-301)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4503-250)	
내역사업	한일교육교류협력	청소년교류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대상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상대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전문)대학교 재학생	교직 경력 5년 이상 교원
연수인원	46명 (학생 40명, 인솔 6명)	109명 (학생 87명, 인솔 12명)	42명 (학생 37명, 인솔 5명)	98명 (학생 79명, 인솔 19명)	89명 (대학생 85명, 인솔 4명)	65명 (교원 63명, 인솔 2명)
연수기간	6박 7일 (11.19.~11.25.)	6박 7일 (11.2.~11.8.)	4박 5일 (9.8.~9.12.)	6박 7일 (9.27.~10.3.)	6박 7일 (3.9.~3.15.)	6박 7일 (8.20.~8.26.)
계약기간	'25.11.7. ~'25.12.30.	'25.8.21.~'25.12.13.		'25.7.8. ~'25.10.28.	'24.12.20. ~'25.4.18.	'25.7.2. ~'25.10.18.
계약금액	190,800	219,375		234,318	136,000	114,300
용역기관	주식회사A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비고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동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계약은 필요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명소가 있고,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어 체험 또는 식사 장소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8월, 9월, 11월에 수행된 사업에서, 대상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일한 업체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수의 연수를 수행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

❑ 연수 프로그램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를 반영하여 구성되고 있으나, 한국의 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학생 등 단기 교류 사업에서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연수 대상에게 필요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국립특수교육원

<일반회계>

1)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275]

○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개선 사업에 대하여 적정 비목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1234-500)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정보화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275) 문의: 02-6788-5186

(2) 결산개요

❑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억 2,400만원으로, 10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97.8%임.

< 2025년도 장애학생 정보화 지원(정보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장애학생 정보화 지원(정보화)	1,124	-	1,124	1,099	-	25	97.8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320	-	320	299	-	21	93.4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274	-	274	272	-	2	99.3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530	-	530	528	-	2	99.6

나) 검토의견: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개선 사업에 대한 적정 비목 편성·집행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사업”은 장애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수업 지원 클립형 동영상, 학습자료 등 특수교육 교육자료 지원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사이트 개선” 사업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메뉴 재구조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등 기능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는바, 예산현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이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집행률은 84.6%였음.

< 2025년도 사이트 개선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 장애학생 정보화 지원 (정보화)	1,124	-	1,124	1,099	-	25	97.8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320	-	320	299	-	21	93.4
- 사이트 개선	136	-	136	115	-	21	84.6

자료 : 교육부 제출 자료 편집

❑ 한편, “사이트 개선” 사업의 경우 비목 중 일반용역비(210-14목)로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국립특수교육원은 동 사업을 위하여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음.

❑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전산개발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276].

❑ 그러나, 동 사업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277]에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278],

27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예산처, 231p,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161p

277) 국립특수교육원은 별도의 과업지시서는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동 제안요청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가 포함되어 있음.

27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대상사업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79][280]

❑ 또한, 동 사업을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281],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28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의 경

27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 (일부발췌)

공통사항 1)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80) 또한,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기능 및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속성들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활동의 경우 대개 소프트웨어의 기능개선, 추가개발 등 기능 변경이 일어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함(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개정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175p, 238p).

281) 제안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참조

28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에는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283],

동 사업은 기존 사이트의 단순 유지관리가 아닌 기능개선 및 개발이 수반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립특수교육원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음.

❑ 따라서, 동 “사이트 개선” 사업은 일반용역비(210-14목) 비목 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전산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연구비(260-01목)[284]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보임.

---

28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28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187p~188p

6-1. 일반연구비(260-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이와 관련 국립특수교육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유지관리로 정의하고 있는바[285], 이에 따라 예산 비목(일반용역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은 동 사업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반용역비 비목과 관련한 대가산정 등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립특수교육원은 일반연구비 비목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적용하였음.[286][287]

---

28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28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116p, 188p

287)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동 가이드의 법적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개정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443p

SW사업대가 가이드의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 3항 4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 -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

❑ 또한 일반용역비의 경우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을 위한 용역비인바, 유지보수관리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288][289]인 것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에 대한 예산 비목은 일반용역비보다 연구개발비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은 향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용역비가 아닌 적정 비목(일반연구비)을 편성 및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규율하는 규정의 소관 부처가 다른데[290], 국립특수교육원은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에 대한 부처 간 분류 기준이 불일치하다고 설명하는바[291], 국립특수교육원은

---

28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예산처, 386p,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270p

> 210-14 일반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89) 일반적인 전산 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계약의 경우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되고 있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예산처, 271p).

2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9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의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유지관리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체계는 기능 개선 업무가 개발사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계 부처 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